

2020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
카자흐스탄 종합보고서

CONTENTS

조사요약

일러두기

01 조사 개요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011
1. 조사의 필요성	011
2. 조사 목적	012
3. 기대 효과	013
제2절. 조사내용 및 방법	013
1. 조사대상 선정 및 설계	013
2. 가공식품 교역 현황 및 수입식품 관리제도	014
3.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법규 정보 수집	014
4. 기타 식품안전 및 수입식품 관련 이슈	015
제3절. 조사대상 가공식품	015

02 조사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카자흐스탄 개요	021	제4절. 식품 표시	071
1. 국가 개요	021	1. 식품 표시 및 포장 개요	071
2. 한국과의 관계	027	2. 표시사항	073
3. 식품 관련 기관 및 규정	028	3. 식품 표시 예시	081
제2절. 가공식품 교역 현황	033	제5절.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규정	085
1. 카자흐스탄 식품시장 현황	033	1.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	085
2. 한국 식품 수출 동향 및 전망	045	2. 유해물질 관련 규정	093
		3.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유해물질 분류	096
		4. 식품첨가물/유해물질 기준 데이터베이스 활용	188
제3절. 수입식품 관리제도	053	제6절. 기타식품안전및수입식품관련이슈	191
1. 식품수입 관리제도	053	1. 식품 관련 주요 비관세 장벽	191
2. 수입 절차	055	2. 기타 식품 관련 이슈	194
3. 인증 제도	063	3. 카자흐스탄 수출 관련 Q & A	198
4. 관세제도	067		

참고문헌

주요 수출대상국(카자흐스탄)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종합보고서

부 록

1. 대한민국 신식품공전 식품 분류	209
2. 카자흐스탄 주요 정부 기관 연락처	219
3. 원산지 증명서	221
4. EAC 인증서 샘플	227
5. 품목별 식품수입관세	229
6. 주요 국가 통관 거부 현황	233

표

[표 1-1]	우리나라 식품공전에서 분류하는 가공식품 분류	016
[표 2-1]	최근 5개년 간 對 카자흐스탄 수출입 현황	049
[표 2-2]	對 카자흐스탄 주요 부류별 가공식품 수출 동향	050
[표 2-3]	최근 2년 간 對 카자흐스탄 식품 수출 Top5 품목 목록	051
[표 2-4]	주요 품목별 수입관세율	070
[표 2-5]	식품유형의 이름으로 대체될 수 있는 식품 성분	079
[표 2-6]	라벨링 규정 추가 요건	080
[표 2-7]	한국 식품공전 분류에 따른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규정 식품유형 분류	097
[표 2-8]	한국 식품공전 분류에 따른 카자흐스탄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 식품유형 분류	119
[표 2-9]	한국 식품공전 분류에 따른 카자흐스탄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 “영아용 식품” 식품유형 분류	140
[표 2-10]	한국 식품공전 분류에 따른 카자흐스탄 유해물질규정(미생물) 식품유형 분류	147
[표 2-11]	한국 식품공전 분류에 따른 카자흐스탄 유해물질규정(미생물) “영유아/영아용 특수용도식품” 식품유형 분류	171
[표 2-12]	한국 식품공전 분류에 따른 카자흐스탄 유해물질규정(병원성미생물, 방사성물질) 식품유형 분류	175
[표 2-13]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검색 결과 예시	189
[표 2-14]	유해물질 허용기준 검색 결과 예시	189

그 림

[그림 1-1]	조사 목적 및 개요	012
[그림 2-1]	카자흐스탄 식품관련 법·규정 및 관련 기관	030
[그림 2-2]	카자흐스탄 식품유통 경로 개요도	038
[그림 2-3]	카자흐스탄 수입 통관 절차	056
[그림 2-4]	카자흐스탄 수입식품 통관 절차	058
[그림 2-5]	카자흐스탄 통관 시 제출 및 필요 서류	059
[그림 2-6]	카자흐스탄 수입통관 절차	060
[그림 2-7]	위생·전염병 검역대상 식품	061
[그림 2-8]	규정에 따른 국가등록 대상품목	062
[그림 2-9]	EAC 인증절차	066
[그림 2-10]	EAC 인증 제출 서류	066
[그림 2-11]	EAEU 세관법 주요 변경사항	069
[그림 2-12]	식품첨가물/유해물질 기준 DB 수출지원정보 사이트(aT KATI)	188

조사요약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북부에 위치한 국가이며, 영토는 272만 4,900km²로 남한 면적의 약 27배, 영토 크기로 세계 9위이다. 인구는 2020년 기준 약 1,863만 명이며, 민족은 카자흐인, 러시아인, 우즈베크인 및 기타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국가이다. 언어는 카자흐어를 사용하여 러시아어 또한 공용어이다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농지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향후 중앙아시아의 중요한 물류 중심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중산층이 거의 없고 빈부격차가 심하여 서민들의 구매력은 높지 않은 편이나, 전체 소비액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식품시장 규모는 지속해서 성장하는 추세인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3.2%씩 성장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다양한 종류의 고기와 낙농제품, 특히 발효성 유제품을 즐기며 주식은 쌀과 빵이므로, 식품제조업 중 곡물 분쇄 및 가공산업이 1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수산가공산업이 7.4%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식품 관련 규정은 유라시아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EEC)가 2012년 6월 제정한 기술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식품첨가물규정은 '식품첨가물, 향료 및 가공보조제 안전 규정'(TR CU 029/2012) 내에 제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식품첨가물 범위, 목적, 개념 및 정의, 취급시장 등과 식품 가공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목록, 식품첨가물별 규정이 적용되는 식품유형 및 해당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이 제공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규정 내 식품유형과 우리나라 신식품공전의 식품유형을 매칭한 매칭일람표를 제공한다. 매칭일람표는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이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규정 내 어떤 식품유형에 매칭되는지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해물질규정은 EEC의 기술규정인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On Food Safety)(TR CU 021/2011)에 따라 관리된다. 유해물질규정은 유해물질 관련 총칙과 식품안전 요건 및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1) 식품안전 위생요건, 2) 병원성 미생물, 3) 미생물, 4) 방사성물질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규정별 기준 적용 식품유형이 다르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식품첨가물과 마찬가지로 유해물질 네 가지 분류 내 식품유형과 우리나라 식품공전 내 식품유형을 매칭한 매칭일람표를 제공한다

식품첨가물과 유해물질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품유형 분류 매칭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매칭일람표를 참고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규정의 원문 내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의 사용기준 등을 보고자 한다면 본 과제에서 제공한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규정 원문과 이를 번역한 번역본 참고가 필요하다

카자흐스탄 식품수입은 유라시아경제연합법, 카자흐스탄 법률, 카자흐스탄 행정부령, 카자흐스탄 행정기관 규칙에 따라 규제되므로 이에 대한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수입통관은 카자흐스탄 등록 수입업체 및 관련 자격증을 가진 통관중개사가 대리할 수 있다. 내륙국가이므로 해상운송 경로가 없어 수출국에서 해상운송으로 이동 후 내륙운송 및 항공운송으로 이동하는 복합운송이 이루어진다

모든 세관 절차는 유라시아경제연합법에 의거, 브로커의 개입 없이 관세청 및 소속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나,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정보에 대한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단일 통관시스템에 따르므로 이에 대한 정보 확인 또한 필요하다

본 과제의 수행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수출진흥정책 및 수출전략 수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향후 조사 기간을 확대하고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러두기

1. 조사 진행 단계

조사 진행 단계	내용
1. 조사계획 및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기본 방향 설정 ▪ 조사대상 항목 설정 및 조사계획 수립 ▪ 전문가 자문을 통한 조사대상 및 항목 선정
2. 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현황조사, 면접조사 등 ▪ 전문가 인터뷰, 자문 등을 통한 자료 조사 ▪ 전문가, 유관기관 협조 요청 및 방문조사
3. 자료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된 자료 정리 및 분류 ▪ 자료에 대한 분석 ▪ 분석결과 해석 및 활용을 위한 전문가, 기업 등 관계자 인터뷰와 자문
4.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내용과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에 관한 보고서 작성

2. 조사 내용

- 카자흐스탄 식품 관련 법률 및 기관
- 카자흐스탄 가공식품에 관한 일반현황
- 카자흐스탄 수입식품 관리제도
- 카자흐스탄 식품표시제도
-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규정
- 기타 식품안전 및 수입식품 관련 이슈

3. 조사 방법

3.1. 온라인 검색을 통한 문헌, 홈페이지 및 각종 자료 조사

- 온라인 사이트 및 정보 검색
- 관련 문헌, 연구, 정보 검색 및 수집
- 수입식품 관련 법규 및 규정집 정보 수집
- 카자흐스탄 및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기관 홈페이지 자료 수집

3.2. 전문가 및 관계자 인터뷰 조사

- 식품 제조, 유통 관련 업계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 협조
- 관련업체 방문 및 현장 견학

3.3 자료 취합 및 보고서 작성

- 수집된 자료 취합 및 내용 분류
- 분류된 자료를 토대로 장별, 절별 내용 구성 및 보고서 작성
- 추가적인 자료 보완과 보고서 본문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 및 자료 부록으로 취합
- 정부 자료 및 관련 법규나 규정 정보 번역 추가

3.4 검토 및 수정·보완

- 작성된 보고서 내용 검토 및 관련 전문가 검토를 통해 오류 및 수정·보완사항 도출
- 지적된 내용과 실제 자료 비교·검토 후 필요시 수정 보완
- 번역 자료 및 내용 검토·확인
- 최종 검토

1

조사 개요

Chapter 0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Chapter 02

조사내용 및 방법

Chapter 03

조사대상 가공식품

제1절.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조사의 필요성

- 주요 수출국의 식품 관련 규정이 상이하고 수시로 변경되어 다양한 식품원료와 식품첨가물의 사용이 수출과정에서 부적합 등 수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더불어, 식품 관련제도 및 절차 등의 미숙지로 인한 통관 억류 및 부적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산업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저하되어 중장기적으로 식품 수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정보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함
-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규정에 대한 정보를 통해 제품개발단계에서 정보 활용을 독려하고 예상되는 통관 상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국제무역 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다양화,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주요 수출국의 식품 수입 규정에 대한 정보, 특히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업데이트가 시급한 실정임
- 현재 수행되고 있는 주요 수출국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규정 변동사항 업데이트와는 별개로 새롭게 추가되는 국가의 경우 국가사항, 식품안전 기관 및 주요법규,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 주요 규정, 식품안전 관련 기타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한 권의 보고서로 수집할 필요성이 제기됨

□ 2. 조사 목적

- 카자흐스탄의 수입 관련 법규·정보 수집 및 식품첨가물과 유해물질 주요 규정 정보를 제공하여, 가공식품 수출 시 상이한 식품 제도 및 규제로 인한 통관상의 문제를 사전에 대비하는 데 활용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또한, 수출기업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수출 법규 위반 방지와 신속한 대응 및 개별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중복 노력을 최소화하며, 수출 정책 및 수출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도출하는 것이 그 목적임



[그림 1-1] 조사 목적 및 개요

□ 3. 기대 효과

- 카자흐스탄의 관련 제도 및 정보 제공으로 수출 시 신속 대응
- 가공식품 품목에 대한 카자흐스탄 관련규정 준수
- 식품첨가물 DB 구축 등 정보 제공으로 개별기업의 정보 수집 중복 노력 최소화
-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및 수출 효율화로 국내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
- 수출 정책 및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수출 진흥에 기여
- 기업 및 국가의 대외 신뢰도 증대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제2절. 조사내용 및 방법

□ 1. 조사대상 선정 및 설계

- 선정방법
 -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수입 관련 법규 정보와 식품첨가물과 유해물질규정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식품 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을 선정함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식품 수출 순위를 보면 카자흐스탄은 수출량 9.2천 톤, 수출금액 29.9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28위를 차지함
 - 식품업체의 요구사항에 따라 조사대상 가공식품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여 조사 진행함

- 조사 설계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보고서의 구조 및 내용 확정
 - 식품 가공기업 및 수출회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 2. 가공식품 교역 현황 및 수입식품 관리제도

- 조사내용
 - 카자흐스탄 수·출입 개요 및 양국 간의 교역상황
 - 수입검사제도(사전준비사항, 수입허가사항, 검역 및 통관절차 등)
 - 수입관세 및 식품표시제도
 - 식품 관련 정부기관 내역(기관명, 홈페이지 등)

□ 3.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법규 정보 수집

- 조사내용
 -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for Customs Union, TRCU) 중 가공식품 관련 기준·규격(정의 및 분류, 식품기준·규격 등)
 - 한국과 TRCU 규정의 가공식품 품목별 첨가물 규정현황(사용기준, 금지첨가물 종류 및 비교 등)

□ 4. 기타 식품안전 및 수입식품 관련 이슈

- 조사내용
 - 식품안전 이슈
 - 수입식품 부적합 사례
 - 카자흐스탄 수출 관련 기타 사항
- 조사방법
 - 문헌조사, 전문정보사이트 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제3절. 조사대상 가공식품

- 한국의 (신)식품공전을 기준으로 TRCU에서 규정하는 가공식품에 대해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규정 등을 조사
 - [부록 1]에 우리나라 식품공전 식품 분류가 제시되어 있음
 - TRCU 가공식품 분류체계는 한국의 가공식품 분류기준과 상이하므로, 국내 분류 유형을 기준으로 이에 매칭되는 TRCU 가공식품별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관련 기준 등을 작성함
- 수출기업에 필요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출 시 애로사항 등 작성

[표 1-1] 우리나라 식품공전에서 분류하는 가공식품 분류

대분류	중분류	식품유형 개수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	5
2. 빙과류	2-1. 아이스크림류	5
	2-2. 아이스크림믹스류	5
	2-3. 빙과	1
	2-4. 얼음류	2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3-1. 코코아가공품류	4
	3-2. 초콜릿류	5
4. 당류	4-1. 설탕류	2
	4-2. 당시럽류	1
	4-3. 올리고당류	2
	4-4. 포도당	1
	4-5. 과당류	2
	4-6. 엿류	3
	4-7. 당류가공품류	1
5. 잼류	-	2
6. 두부류 또는 묵류	-	4
7. 식용유지류	7-1. 식물성유지류	20
	7-2. 동물성유지류	5
	7-3. 식용유지가공품	8
8. 면류	-	4
9. 음료류	9-1. 다류	3
	9-2. 커피	1
	9-3. 과일·채소류음료	3
	9-4. 탄산음료류	2
	9-5. 두유류	2
	9-6. 발효음료류	3
	9-7. 인삼, 홍삼음료	1
	9-8. 기타음료	2
10. 특수용도식품	10-1. 조제유류	2
	10-2. 영아용 조제식	1
	10-3. 성장기용 조제식	1
	10-4.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1
	10-5. 기타영·유아식	1
	10-6.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3
	10-7.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
	10-8. 임신·수유부용식품	1

대분류	중분류	식품유형 개수
11. 장류	-	14
12. 조미식품	12-1. 식초	2
	12-2. 소스류	4
	12-3. 카레(커리)	2
	12-4.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2
	12-5. 향신료가공품	2
	12-6. 식염	6
13. 절임류 또는 조림류	13-1. 김치류	2
	13-2. 절임류	2
	13-3. 조림류	1
14. 주류	-	12
15. 농산가공식품류	15-1. 전분류	2
	15-2. 밀가루류	2
	15-3.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2
	15-4. 시리얼류	1
	15-5. 찌쌀	1
	15-6. 효소식품	1
	15-7. 기타 농산가공품	5
16. 식육가공품	16-1. 햄류	3
	16-2. 소시지류	3
	16-3. 베이컨류	1
	16-4. 건조저장육류	1
	16-5. 양념육류	4
	16-6. 식육추출가공품	1
	16-7. 식육함유가공품	1
	16-8. 포장육	1
17. 알가공품류	17-1. 알가공품	7
	17-2. 알함유가공품	1
18. 유가공품	18-1. 우유류	2
	18-2. 가공유류	4
	18-3. 산양유	1
	18-4. 발효유류	6
	18-5. 버터유	1
	18-6. 농축유류	5
	18-7. 유크림류	2
	18-8. 버터류	3
	18-9. 치즈류	2

대분류	중분류	식품유형 개수
	18-10. 분유류	4
	18-11. 유청류	3
	18-12. 유당	1
	18-13. 유단백 가수분해식품	1
19. 수산가공식품류	19-1. 어육가공품류	6
	19-2. 젓갈류	4
	19-3. 건포류	3
	19-4. 조미김	1
	19-5. 한천	1
	19-6. 기타 수산물가공품	1
20. 동물성가공식품류	20-1.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2
	20-2. 곤충가공식품	1
	20-3. 자라가공식품	3
	20-4. 추출가공식품	1
21. 벌꿀 및 화분가공품	21-1. 벌꿀류	4
	21-2. 로얄젤리류	2
	21-3. 화분식품	2
22. 즉석식품류	22-1. 생식류	2
	22-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3
	22-3. 만두류	2
23. 기타식품류	23-1. 효모식품	1
	23-2. 기타가공품	1
24. 그 외 분류	장기보존식품	3
	식품원료	2
	그 외 분류	1
총 가공식품유형 수		277

2

조사수행 내용 및 결과

Chapter 01

카자흐스탄 개요

Chapter 02

가공식품 교역 현황

Chapter 03

수입식품 관리제도

Chapter 04

식품 표시

Chapter 05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규정

Chapter 06

기타 식품안전 및 수입식품 관련 이슈



제 1 절. 카자흐스탄 개요

□ 1. 국가 개요

□ 가. 일반현황¹⁾²⁾

- 카자흐스탄(Republic of Kazakhstan)은 중앙아시아 북부에 위치한 국가로 면적은 2,724,900km²임
- 면적규모로 세계 9위, 남한 면적의 약 27배, 한반도의 약 12배로 연교차와 일교차가 크고, 연간 총강수량이 적고, 낮은 상대습도를 보이는 대륙성 기후임

1) 출처 : 카자흐스탄 통계청, 2020 기준 코트라 해외시장 정보, 국가개황 재인용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1048&commltemSn=404#area1>

2) 대한민국 외교부(2019), 카자흐스탄 개황, 대한민국정책브리핑→정책DB→전문자료→카자흐스탄 개황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512>

- 북부 지역의 경우 1월 평균기온은 -18°C 인데 반해 남부는 -8°C , 북부의 7월 평균 기온은 $+20^{\circ}\text{C}$, 남부는 $+28\sim 30^{\circ}\text{C}$ 이고, 평균 강우량은 250mm(남부의 경우 200mm) 정도임
- 수도는 누르술탄(Nur-Sultan-舊 아스타나)이고, 3개의 특별시(누르술탄-舊 아스타나, 알마티, 쉘켄트)와 14개 주(州)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2020년 4월 기준 18,631,779명임
- 2020년 기준으로 카자흐인(68.51%), 러시아인(18.85%), 우즈베크인(3.25%), 우크라이나인(1.42%), 위구르인(1.47%), 타타르인(1.08%), 독일인(0.95%), 기타 민족(1.04%) 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국가이며, 그중 한민족(고려인)은 약 11만 명으로 0.58%(9번째) 정도임
- 종교는 이슬람교, 러시아정교 등이 있으며, 특정 국교는 없음
- 언어는 카자흐어를 사용하고, 러시아어 또한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 화폐는 텡게(Tenge)를 사용하고, 2020년 9월 기준 1텡게(Tenge)는 우리나라 2.75원(2020년 9월 기준), 1USD=423.05텡게(Tenge)(2020년 9월 기준)에 해당함
- 주요 자원으로는 원유(세계 12위, 확인매장량 300억 배럴), 가스(세계 25위, 매장량 1.1조 m^3), 크롬(세계 1위), 우라늄·연(세계 2위), 은(세계 4위), 금(세계 16위) 등 다종·다량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국가형태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입법부는 임기 6년의 상원(Senate) 49석과 임기 5년의 하원(Majilis) 107석으로 구성됨

□ 나. 경제지표³⁾

- 경제성장률은 2019년 기준 4.5%이고, 1인당 GDP는 2019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26,638달러임. 1인당 명목 GDP는 약 9,139달러로 CIS 국가 중 러시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 실업률은 2019년 기준 4.8%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년 기준 6.03%임
- 교역 규모
 - 2019년 기준: (수출) 57,822 백만 달러 / (수입) 38,704 백만 달러
 - 2018년 기준: (수출) 59,826 백만 달러 / (수입) 34,247 백만 달러
 - 2017년 기준: (수출) 47,310 백만 달러 / (수입) 30,573 백만 달러
- 국가별 수출입⁴⁾
 - 주요 교역국가 중 2018년 기준으로 수출 상위 10개국은 1위 이탈리아 (11,748,326,124\$), 2위 중화인민공화국(6,318,644,127\$), 3위 네덜란드 (6,202,214,832\$), 4위 러시아(5,484,855,122\$), 5위 프랑스(3,921,950,081\$), 6위 대한민국(2,981,876,963\$), 7위 스위스(2,901,946,990\$), 8위 스페인(1,961,553,645 \$), 9위 우즈베키스탄(1,639,663,259\$), 10위 일본(1,516,141,495\$)임
 - 2018년 기준으로 수입 상위 10개 국가는 1위 러시아(13,240,167,577\$), 2위 중화인민공화국 (5,497,851,440\$), 3위 독일(1,715,779,417\$), 4위 이탈리아(1,529,033,529\$), 5위 미국 (1,301,033,913\$), 6위 우즈베키스탄(1,155,325,228\$), 7위 대한민국(938,949,913\$), 8위 터키(686,517,713\$), 9위 프랑스(677,224,248\$), 10위 벨라루스(608,006,367\$)임

3) 코트라 해외시장 정보, 주요경제지표,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104&commltemSn=406&area=1#area1>

4) 코트라 해외시장정보, 국가지역정보, 수출입,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104&commltemSn=408&area=1#area1>

▪ 주요 교역품

- 2018년 기준으로 주요 수출품은 석유와 역청유(원유로 한정), 음극과 음극의 형재⁵⁾, 천연가스, 천연 우라늄과 그 화합물, 합금·부산물, 도자 제품과 이들의 혼합물, 구리광과 그 정광,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프로판 등임
- 2018년 기준으로 주요 수입 품목은 천연가스,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경질유와 조제품,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자체중량이 15,000kg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등임

□ 다. 경제동향

- 미 중앙정보국 CIA의 'The World Factbook' : 2018년 기준 카자흐스탄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12위, 확인매장량이 300억 배럴이며,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15위, 확인매장량이 2,407조 큐빅미터(cu m, 1큐빅미터=1,000리터)임
 - 광물자원의 경우 우라늄, 크롬, 구리, 연·아연, 은, 중석, 망간 등이 매장량 기준 세계 10위 내인 상황이며, 희토류, 철, 몰리브덴, 티타늄, 니켈 등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매장량을 보유한 상황임
- 풍부한 자원에 의해 높은 성장률을 이루어 왔으며,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경제성장률이 저조했으나 2010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섬. 2017년에는 GDP 성장률 4%를 기록함
 - 카자흐스탄의 성장률을 뒷받침하는 주요 수출 품목은 산업용 금속, 우라늄 및 곡물이며, 석유 생산으로 자국 내수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음
 - 단,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과 유가 하락으로 전반적인 GDP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브렌트유 가격이 전년 대비 37.5% 감소(배럴당 평균 40달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산업이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카자흐스탄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세계은행은 2020년 카자흐스탄의 GDP 성장률이 3% 하락할 것으로 분석함

5) 화학전지의 소재 및 이를 활용해 만든 이차전지나 배터리 내장 소재를 의미함

- 카자흐스탄의 2019년 물가상승률은 6% 수준으로 중앙은행 물가상승률 목표인 4-6% 선이었으나, 2020년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6.4%였음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2020년 말까지 물가 상승률이 8-8.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라. 농업 동향

1) 농업규모

- 카자흐스탄은 광활한 국토를 가진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가로서, 영토가 방대하고 대륙성 기후가 뚜렷하여 대규모 밀 생산이 가능함
- 카자흐스탄의 농경지는 전체 국토의 80% 이상인 2억 1,700만 ha임
 - 전체 농경지 중 경작 적합지는 13.5%이며, 영구경작지는 0.1%, 초지면적은 86.4%임
 - 아크몰라주, 코스타나이주, 북카자흐스탄주 등 북부지역에서는 주로 밀이 생산되며, 목초지와 사막이 대부분인 중부지역에서는 축산업이 발달함

2) 농업특성

- 주요 농산물 생산품목으로는 밀, 보리, 옥수수, 쌀 등의 곡물류와 감자, 채유종자 등이 있으며, 2019년 17,428,000톤의 곡물 생산량 중에서 밀 생산량이 11,451,000톤을 기록하여 전체 약 65.7%를 차지함⁶⁾
 -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밀에 편중된 농업 생산을 다변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
-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와 같은 축산물 생산량 중에는 우유 및 달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6) 출처: 카자흐스탄 통계청_농업 데이터, <https://stat.gov.kz/search/item/WC16200023636>

3) 주요 농업정책

- 카자흐스탄 정부는 식량 자급률 확대와 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 및 식품제조업 육성 정책을 추진 중임
 - 주요 식재료 8개 분야(육류, 우유, 유지작물, 곡물, 양모용, 가금류, 원예, 설탕) 자급률 80% 달성, 생산성 향상, 수출 증진을 목표로 함
 - 곡물 수출 인프라 개발, 가축사육센터 건설, 순중 혈통 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 국영기업인 KAZAGRO를 통해 터키계 회사인 Agrobest Group와 합작으로 농약 회사를 설립하여 2019년부터 농약을 생산
- 해외투자 유치를 통한 식품 생산 기반의 강화 정책 추진
 - 구소련 시절 농산물 원료의 공급국가였던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농식품 가공을 위한 기반시설이 미흡하여 자체 공급 부족으로 높은 수입의존도를 보이지만 지속적인 해외투자유치를 통해 국내 식품 생산 기반을 강화해 가고 있음
- 국영기업인 KAZAGRO를 통해 총 435개 프로젝트에 2,360억 텡게(KZT) (약 723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농식품 산업 육성
 - 라면, 식용유, 마유, 과자 등 자국산 농산물을 활용하는 식품 가공공장 등 설립
-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국산 식품에 'KZ'로고를 부착하여 "Made in Kazakhstan" 제품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자국산 제품의 소비를 권장 중

□ 2. 한국과의 관계

국교수립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년 01월 28일 (출처 :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계결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협정(1992.07.01.) : 무역활성화에 대한 협정 ▪ 과학·기술협정, 문화협정(1995.05.01.) ▪ 투자보장협정(1996.03.01.) ▪ 이종과세방지협정(1999.04.01.) ▪ 형사사법공조조약, 범죄인 인도조약(2003.11.01.) ▪ 원자력협력협정(2004.09.01.) ▪ 항공협정(2007.04.01.) ▪ 외교관·관용 여권 사증면제협정(2007.06.01.) ▪ 한-카 관광협력 협정(2011.05.01.) ▪ 한-카 관세청 간 협력 협정(2012.05.01.) ▪ 한-카 해운물류·항만개발 협정(2012.06.01.) ▪ 한-카 사증면제협정(2014.11.01.) ▪ 한-카 수형자 이송협력협정(2019.04.23.)

- 교역규모(2020년 6월 기준)
 - 2020년 : 對 카자흐스탄 (수출) 1,655 백만 달러, (수입) 393 백만 달러
 - 2019년 : 對 카자흐스탄 (수출) 2,657 백만 달러, (수입) 1,562 백만 달러
 - 2018년 : 對 카자흐스탄 (수출) 798 백만 달러, (수입) 1,362 백만 달러
 - 2017년 : 對 카자흐스탄 (수출) 533 백만 달러, (수입) 998 백만 달러
 - 對 카자흐스탄 교역은 2018년까지 적자(-)였으나, 2019년을 기점으로 흑자(+)로 전환됨

- 주요 교역품(2020년 9월 기준)
 - 對 카자흐스탄 수출품(2019-2020년-최근 2년) : 화학기계, 기타기계요소, 승용차, 철도차량, 화장품, 철구조물, 밸브,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자동차부품 등
 - 對 카자흐스탄 수입품(2019-2020년-최근 2년) : 원유, 합금철, 우라늄, 기타비철금속 제품, 동물성한약재, 연고 및 스크랩, 기타금속광물, 기타요업제품, 동괴 및 스크랩 등
- 교민
 - 2,500명 (2020년 기준, 출처 : 주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한-EAEU FTA 협력
 - 2016년 9월 이후 한-EAEU FTA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한-EAEU FTA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를 진행
 - 이 중 카자흐스탄 유망 분야는 스마트 그리드·재생에너지, 석유화학제품, 식품가공, 섬유기계, 전자정부(이상 한국 측 제안), 광물 개발, 건설, 농업, 헬스케어, 통신 서비스(이상 EAEU 측 제안) 등임

□ 3. 식품 관련 기관 및 규정

□ 가. 식품 관련 정부기관

- 식품과 관련된 카자흐스탄 관련 기관은 다음과 같음
-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산하 '수의 통제 및 감시위원회'(Committee of the Veterinary Control and Surveillance)
 - 카자흐스탄 내 가축 및 반려동물, 야생동물 상태 추적 및 관리, 동물 건강을 위한 법적 조치 및 규제 담당

-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산하 '농업검역위원회'(Agricultural State Inspection Committee)
 - 카자흐스탄 내 농산물 위생 추적 및 관리, 식물 건강을 위한 법적 조치 및 규제 담당
-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공공보건위원회'(Committee for Public Health)
 - 식품안전 담당,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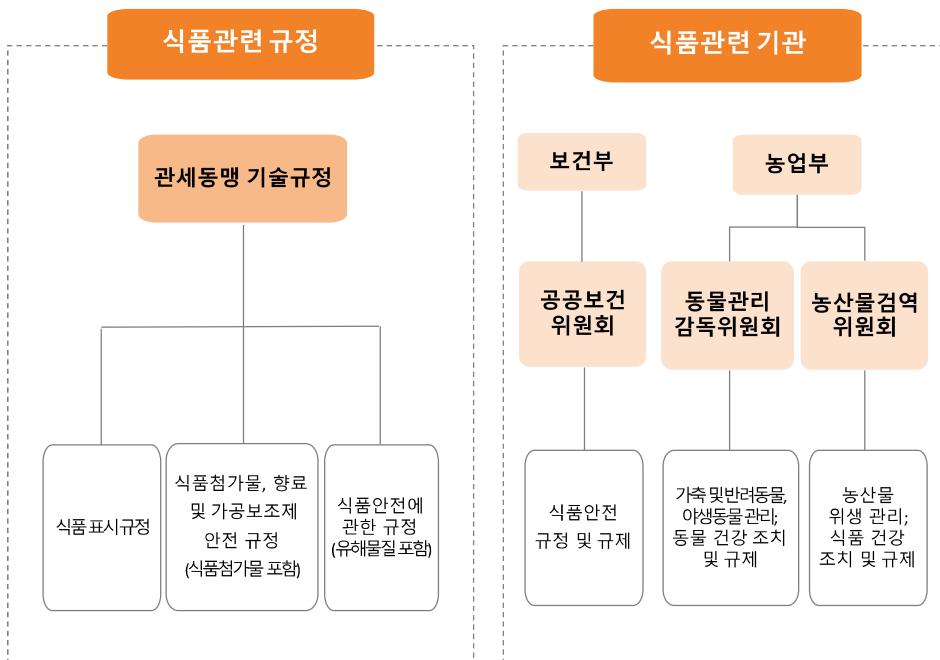
□ 나. 식품 관련 규정

■ 카자흐스탄의 식품 관련 정책

- 카자흐스탄 식품 및 무역 규정은 현재 변화를 겪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키르기스탄, 러시아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을 형성해 이 국가들과 함께 정책을 공유하거나 연합 정책을 만들고 있음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대체해 2015년 1월에 만들어짐
- 2015년에 카자흐스탄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가입하고, 무역 관련 정책을 국제 표준에 맞추기 시작함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EAEU)

- 2010년 이후 카자흐스탄은 러시아, 벨라루스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일원이 됨
 - 2010년 초기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으로 시작되었으며, 2012년에 단일경제영역(Single Economic Space, SES)으로 바꿈. 그 후 2015년 1월에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으로 재결성함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이 세 국가 이외에도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이 참여함
 - 이 경제연합의 의사결정기구는 2012년에 만들어진 유라시아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EEC)인데, 이는 초창기 관세동맹위원회(Customs Union Commission)를 대체함



[그림 2-1] 카자흐스탄 식품 관련 법규정 및 관련 기관

관세동맹의 식품 관련 기술규정

-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은 국제식품규격(Codex)을 바탕으로 관세동맹을 위한 식품 관련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for Customs Union)을 만들
- 다음과 같은 관세동맹의 식품 관련 기술규정이 2013년 7월에 발효됨
 -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On food safety» (TR CU 021/2011)
 - 식품 표시 규정 «Labeling of food products» (TR CU 022/2011)
 - 과일 및 야채주스 기술규정 «Technical regulation for fruit & vegetables juices» (TR CU 023/2011)
 - 유지제품에 대한 기술규정 «Technical regulation for oil and fat products» (TR CU 024/2011)
 - 영양 건강 및 예방을 위한 식품과 같은 특수용도식품의 안전 규정 «On safety of certain types of specialized food products, including dietary health and dietary preventive food » (TR CU 027/2012)
 - 식품첨가물, 향료 및 가공보조제 안전 규정 «Safety requirements for food additives, flavorings, and processing aids » (TR CU 029/2012)
 - 곡물 안전 규정 «Grain safety» (TR CU 015/2012)
- 추가로 아래와 같은 관세동맹의 식품 관련 기술규정이 2014년 5월에 발효됨
 - 낙농 제품 안전 규정 «Dairy safety» (TR CU 033/2013)
 - 육류 및 육류가공품 안전 규정 «Meat and meat products safety» (TR CU 034/2013)

- 2018년 11월 말 기준, 총 40개의 관세동맹 기술규정이 발효되어 시행 중
 - 식품 관련 기술규정으로는 곡물 안전, 식품안전, 식품 라벨링, 과일류와 채소류로 만든 주스제품 기술규정, 유지제품 기술규정, 전문화된 식품(식이치료용 및 식이예방식품 포함) 안전, 식품첨가물과 향미증진제 안전요건, 우유 및 유제품 안전, 육류 및 육류제품 안전, 담배제품에 관한 기술규정, 어류 및 어류제품 안전, 생수에 관한 기술규정 등이 있음
 - 그 외에도 현재 개발 중인 식품 관련 기술규정으로는 알코올제품, 가금육 및 그 가공제품에 관한 기술규정이 있음

□ 다.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규정

■ 식품첨가물규정

- 2012년 6월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는 기술규정인 '식품첨가물, 향료 및 가공 보조제 안전 규정'(Safety Requirements for Food Additives, Flavorings, and Technological Aids)(TR CU 029/2012)을 만들
 - 여기에 식품가공에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목록이 제시됨

■ 유해물질규정

- 농약 및 다른 유해물질의 카자흐스탄 규정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식품 및 농산물 안전 기술규정에 기반을 두고 있음
- 특히 유해물질은 2011년 9월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의 기술규정인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On Food Safety)(TR CU 021/2011)에 제시되어 있음



제 2 절. 가공식품 교역 현황

□ 1. 카자흐스탄 식품시장 현황

□ 가. 식품 소비 환경

■ 기본 식문화

- 카자흐스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고기(말, 닭, 소, 양)와 낙농 제품(치즈, 양젖, 발효성 유제품)을 즐겨 먹으며, 그중 발효성 유제품을 가장 좋아하는 편임
- 주식은 쌀과 빵인데, 말고기로 만든 요리가 인기 있음

- 남부지역에는 과일과 야채가 풍족하여 주로 포도, 메론, 가지, 토마토 등 과일과 야채를 즐겨 먹는 편임
- 이슬람교에서 술과 돼지고기를 금기로 하지만, 적지 않은 카자흐스탄인들이 술을 마시거나 돼지고기를 먹기도 함
- 상당수의 카자흐스탄 가정은 집과 함께 밭을 가지고 있어서 과일이나 야채를 자급자족하거나 먹거리로 충당하며, 일부는 이를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함
- 야채, 과일을 활용한 저장음식(각종 과일잼, 오이지류)을 여름철에 만들어 야채와 과일이 비싼 겨울에 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임
- 부유층은 유럽제품, 중상류층은 한국 및 터키제품, 서민층은 러시아, 중국, 자국제품을 소비하는 모습을 보임

■ 식문화 변화

- 최근 식품분류가 끊임없이 세분화(레저식품, 기능식품, 곡물식품 등)되면서 소비자들의 수요도 다양화되는 추세임
 - 식품소비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단순히 '기능' 만이 아니라 체험, 감정효과를 비롯한 효용을 두루 추구하는 현상이 나타남
-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건강기능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건강중시 풍조로 인해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제품 추구
 -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다양한 곡물식품 및 영양보충식품이 등장함
 - 식품 중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등과 관련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임

- 관련해서 '녹색식품', '안전식품' 또는 녹색, 건강, 환경보호 등의 요구에 부합되는 '유기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과거에는 제품의 질보다는 가격 중심의 소비 행태였는데, 점차 품질 중심 소비로 전환됨
 - 단, 아직 중산층이 거의 없고, 빈부격차가 심한 편임.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낮아 가격경쟁력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임
- 경제 발전 및 여성의 지위 향상에 따라 여성의 소비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식품 소비에서는 여성이 중요한 고객으로 부상함
 - 이에 따라 여성을 겨냥한 음료, 미용식품, 다이어트식품, 산후조리식품 등 다양한 계열의 식품이 등장함
- 웰빙식단 배달서비스의 성장
 -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트렌드가 생기면서 칼로리와 영양을 고려한 웰빙식단 배달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50개 이상 기업 활동 중임

□ 나. 식품시장 동향

■ 식품시장규모⁷⁾⁸⁾

- 전반적인 식품시장규모의 성장
 - 식품시장규모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3.2%씩 성장
 - 2018년 식품 소매유통액 약 1,155억 3,980만 텡게(약 2억 7100만 달러)

7) Market Research.com, 카자흐스탄 식품 및 식료품 소매 보고서
<https://www.marketresearch.com/MarketLine-v3883/Food-Grocery-Retail-Kazakhstan-13512893/>

8) 카자흐스탄 통계청, <https://stat.gov.kz/search/item/ESTAT130990>

-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도
 - 카자흐스탄은 자원의존적 경제로 석유, 가스 등 채굴산업이 전체 88.4%를 차지하며, 식품산업은 2019년 기준 전체 산업의 2.7%, 제조업의 30%를 차지함
 - 2019년 기준 음료와 담배를 제외한 식품제조업 중 곡물분쇄 및 가공산업(18.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가공산업(7.4%) 비중이 가장 작음
- 카자흐스탄의 식품제조업체 수는 1,841개, 음료 제조업체 수는 198개로 전반적인 숫자의 변동은 크지 않음

■ 식품시장 특성

- 세계 9위의 영토 대국, 풍부한 농지와 자원 보유국
 - 한반도 면적의 12배, 남한의 27배, 세계 9위에 해당하는 넓은 영토를 보유, 세계의 주요 밀 수출국이자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
 - 향후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영향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철도건설 투자가 이어진다면, 중앙아시아의 중요한 물류중심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 중산층이 거의 없고,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 구조로 인해 서민들의 구매력이 높지 않음
 - 전체 소비액에서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중 우유 및 유제품이 가장 많고, 어류 및 수산가공품이 가장 적게 소비됨
- 상대적으로 낮은 할랄식품 비중
 - 무슬림 인구가 전체 70%임에도 불구하고, 할랄식품 비중은 2018년 기준 전체 13% 수준임
 -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은 할랄 인증 여부보다 가격을 더 중요한 요소로 고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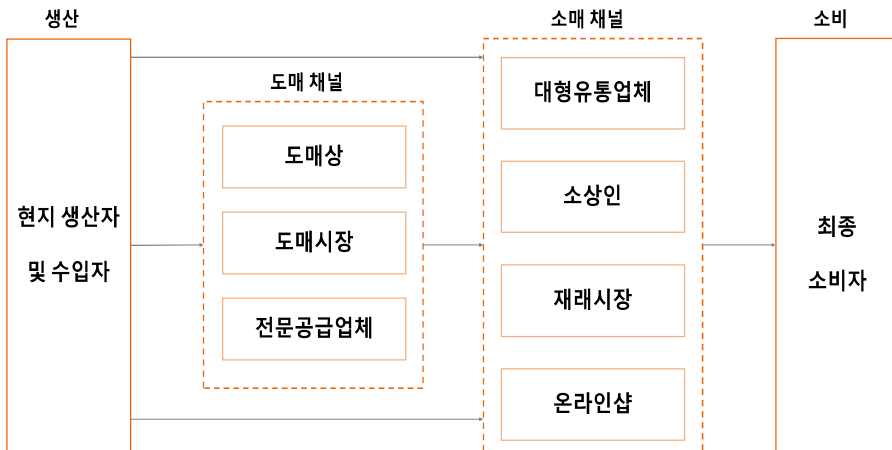
식품시장 주요 이슈

- 카자흐스탄은 염분 섭취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불규칙한 식사 등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으로 질병과 사망률이 높음
 - 질병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식습관을 가진 국가 9위로 전 세계에서 염분 섭취량이 가장 높음. 이는 WHO 하루 섭취 권고량의 약 4배에 해당함
 - 이러한 식습관은 육류 및 소시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소금에 절여 음식을 만들었던 과거 유목 생활 방식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시됨
 - 평균 21%의 비만율을 보이며, 14세 미만 어린이들의 20%가 과체중 그리고 10%가 비만에 해당함
- 정부가 국민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독려를 위한 프로그램(2011년부터 “Salamatty Kazakhstan”, 2016년부터 “Densaulyk” 등)을 시행 중임
 -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소아 비만율을 낮추고자 2018년 말부터 학교 내 탄산음료 및 초콜릿, 사탕류 제품 판매를 금지하였음
 - 당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무설탕 식품과 같은 무첨가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2018년 기준 당뇨병 환자가 30만 9,000명으로 5년 사이 10만 명 이상 증가하였음. 그중 대략 6,000명이 백내장 질환, 3,000명이 심근 경색 증세로 이어짐. 이로 인해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초콜릿, 젤리 등이 관심을 끌고 있음
- 전통적으로 차를 많이 마시는 문화를 가졌으며, 건강에 대한 인식 증가로 차 소비는 지속해서 확대되는 추세임
 - 유목민족이었던 과거 기름진 고기를 즐겨 먹는 식습관으로 식후 소화작용을 돕는 차를 마시는 문화가 발달하였으며, 이로 인해 1인당 차 소비량이 세계 3위임
 - 여기에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음료를 찾는 성향이 강해져서 차 소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웰빙 트렌드에 따라 건강하면서도 간편한 조리 식단에 대한 선호 추세가 나타남
- 식품에 대한 구매자들의 품질 중시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구매 전에 SNS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관련 영양 정보, 구매후기 등을 살펴보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음
- 배달플랫폼이나 개별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식업체가 증가하면서 음식 배달 시장은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음
- 해외 프랜차이즈의 유입 비율이 높고, 새로운 사업 컨셉으로 등장하면서 유통 분야에서 프랜차이즈화가 급격히 진행됨

□ 다. 식품 유통구조

■ 전체 유통시장



[그림 2-2] 카자흐스탄 식품유통 경로 개요도

- 카자흐스탄 유통경로는 생산자(또는 수입자)→도매상(또는 도매시장이나 전문 공급업체) 등의 도매채널→대형유통업체·소상인/재래시장·온라인샵 등의 소매채널 등을 거쳐 최종소비자로 이어지는 구조임
- 유통시장의 지속적 성장 및 대형 유통기업 성장
 - 국민 전반의 구매력이 상승하면서 기존 재래시장 및 소규모 소매상 중심에서 외국계 및 국내자본 대형 유통매장이 등장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소매시장규모는 4.9조 텡게(Tenge) KZT (약 142억 달러)로 나타남. 전통적인 소매점이 6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기존 소규모 소매업 및 재래시장으로 이루어진 소매시장에 외국계 대형 유통매장이 진출하며 유통채널이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음. 최근에는 단독 유통매장보다는 영화관, 오락쇼핑센터가 있는 대형쇼핑몰 내에 입점하여 복합 유통채널로 변화되는 추세임
 - MEGA, Dostyk plaza, Esentai mall이 대표적인 대형 쇼핑몰임
 - 편의점은 일본 이온그룹(AEON Group)의 미니스톱이 2013년에 진출하여 점포를 늘려가고 있음
 - 현지 대형마트는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서민층을 타겟으로 마케팅하며, 외국계 대형매장은 고품질 상품으로 부유층을 타겟으로 함
- 근거리 소규모 식료품점에 대한 높은 이용률
 - 전체 추세로는 전통적인 소규모 식료품점이 점차 쇠퇴하고 있으나, 구매력이 낮은 소도시 거주 소비자들은 가격이 더 저렴하고 방문이 편리한 주거지 근처 소규모 식료품점을 선호함
 - 주요 구매 품목으로는 빵, 우유, 음료, 라면, 과자 등 일반 가공식품과 과일, 채소 등 소량구매가 필요한 신선농산물이 주를 이룸

-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 카자흐스탄 전자상거래 시장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시장규모는 3,730억 텡게(약 10억 달러)로 이는 전년 대비 29% 성장한 수치임
 - 16~74세까지 카자흐스탄 인구의 80%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
 - 온라인상 등록된 쇼핑몰 수가 2000개를 넘었고, 소비자는 320만 명에 육박함
 - 거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야는 의류와 전자제품으로 각 분야의 시장규모는 각각 전자상거래 시장의 24%(897억 텡게, 약 2억 3,000만 달러), 26%(956억 텡게, 약 2억 5,000만 달러)를 차지함
 - 모바일 이용의 급증으로 2019년 모바일 소매 전자상거래 시장은 520억 텡게 (약 1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39% 성장함
 - 주요 온라인 쇼핑몰로는 Satu와 OLX가 있음

전통 유통채널

- 카자흐스탄의 소비자들은 대체로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강함. 특히 과일·채소류 등의 신선식품을 도매시장, 재래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을 선호함
- 도매시장 및 재래시장에서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저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가격 대비 품질이 떨어짐
- 카자흐스탄의 전통시장인 바자르(Bazaar)는 소매단계에서 비중이 가장 큰 유통 채널이었으나 현재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전통 유통채널인 재래시장(Bazaar)은 카자흐스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전체 782개로 도매시장 38개, 소매시장 74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16개 지역 중 남카자흐스탄주에 138개로 가장 많음
- 다른 소매채널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 장점임
- 대표적인 3대 바자르는 질노니(Zelenyy), 예브라지아(Yevraziya), 콕(Kok) 바자르가 있으며, 알마티, 아스타나 등 대도시에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최근 식료품 소비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재래식 식료품점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하는 반면 현대식 식료품점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재래식 식료품점의 시장규모는 총 3조 4560억 텡게(약 90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성장률은 전년 대비 2.1%에 그침
 - 한편, 2019년 현대식 식료품점의 시장규모는 2조 80억 텡게(약 52억 달러)로 액수는 재래식 식료품점보다 낮은 수준이나 성장률은 전년 대비 31.2%로 훨씬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재래식 식료품점의 성장 감소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소비자가 소규모 상점 및 전통시장(Bazaar)에 느끼는 연대감이 지역별로 다름. 특정 지역에서 전통시장은 그 지역 문화의 일부를 형성하며, 지역 주민들은 전통시장을 식료품 구매의 전형적 장소로 여기는 경향이 있음
 - 이런 지역에서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에 기반해 판매자는 각각의 소비자에게 맞춤형 상품을 판매함. 소비자들은 관계가 형성된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며, 판매자에 대한 신뢰는 곧 제품에 대한 신뢰로 이어짐
 - 이러한 '개별 관계 맺기 마케팅'(Individual connection and targeted marketing) 방식은 재래식 식료품점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재래식 식료품점은 이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함
- 전통시장 현대화 프로그램
 - 전통시장은 의심스러운 식품 원산지, 위생 관리 부족, 열악한 신선 보관시설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상품의 저장, 식료품점의 운영 및 쇼핑 환경을 개선하는 '전통시장 현대화 프로그램'이 시작됨
 - 알마티는 이 프로그램의 시범도시로서 시장 현대화를 위해 총 160억 텡게(2018년 환율 기준 약 46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프로그램이 시작된 2018년 첫 해에 17개 시장의 현대화 작업을 완료함
 - 현대화의 일환으로 컨테이너로 지어져 있던 식료품점이 편리한 신식 매장으로 바뀌었고, 전자 계산대도 도입됨

현대적 유통채널

- 현대적 식품 소매채널은 도시를 중심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국민의 소득 수준 상승에 따라 대형 유통채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임
 - 중산층을 중심으로 현대적 소매채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은 수입식품을 다루는 원스톱 아울렛에서 쇼핑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임
 - 전통적 소매채널보다 제품의 범위가 넓고, 좋은 품질과 높은 위생수준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카자흐스탄에는 향상된 서비스를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음. 소비자들은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쾌적한 쇼핑 환경과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식 식료품점을 더 매력적으로 느낌
-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현대식 식료품점은 시장 트렌드 및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상품을 대규모로 구매함으로써 공급 기업과 가격 협상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나은 가격의 식료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됨
- 현대적인 유통채널은 슈퍼마켓, 하이퍼마켓, 할인점 및 편의점으로 나뉨
 -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슈퍼마켓이고, 이어서 하이퍼마켓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최근 건강한 생활양식이 확대되며 친환경 식품을 중점적으로 판매하는 슈퍼마켓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 현재 주요 도시에 진출해있는 슈퍼마켓 체인은 다음과 같음
 - * Magnum : 슈퍼마켓 체인 중 판매액 기준으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 카자흐스탄의 주요 도시에 진출해있으며, 편의점에서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까지 다양한 형태의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음. 64개의 슈퍼마켓 운영 중
 - * Small : 슈퍼마켓 체인 중 판매액 기준으로 두 번째로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며, 점포 숫자로는 가장 많음. 현재 12개 도시에 85개의 슈퍼마켓을 운영 중

- * Ramstore : 터키계 회사인 Migros에 의해 운영됨. 판매액 기준으로 세 번째로 점유율이 높은 슈퍼마켓 체인임. 알마티에 15개 그리고 누르술탄에 3개를 운영 중임. 터키계 회사답게 다양한 터키 상품과 터키산 원료로 만든 제품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음. 이 슈퍼체인은 Magnum이나 Small보다 점포 규모면에서 좀 더 큰 것이 특징임
- * Metro Cash & Carry: 독일계 회사인 Metro그룹에 의해 운영되며, 대도시 중심으로 창고형 점포를 7개 운영중임
- 위에 언급된 회사들 이외에도 Anvar, Firkan, Ayan 같은 다른 슈퍼마켓 체인이 존재함
- * 일부 체인은 전통적인 소매점과 유사한 소규모 형태의 점포를 운영하기도 함
- 일부 슈퍼마켓체인은 식품을 직접 수입하기도 하며, 일부 체인은 지역 배급자와 거래를 하기도 함. 한편 Ramstore와 같은 회사는 모기업의 수입과 유통망을 이용하기도 함
- 소규모 식료품 중심의 슈퍼마켓 체인이나 개별 점포는 다양한 종류의 수입식품을 판매하기도 하는데, 비교적 가격이 높고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입고시키는 지점으로 활용이 가능함
- 대형유통업체는 편리한 시설과 서비스로 이용객이 늘고 있으며, 규모를 확장해 나가고 있음
 - 외국계 대형 유통채널들이 진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공간까지 갖추며 복합 유통채널로 변화되고 있음
 - 대표적인 대형 쇼핑몰에는 MEGA, Dostyk plaza, Esentai mall 등이 있음
- 대형 유통채널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서민층을 타겟으로 하며, 최근에는 할인점이 늘어나면서 저소득층을 끌어들이고 있음
- 현대식 식료품점 확대의 한계
 - 카자흐스탄 시장은 체인형 대형마트 등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현대식 식료품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는 까다로운 시장조건을 지니고 있음. 인구 밀도가 낮고 도시 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물류·유통환경이 다소 원활치 못하다는 특징이 있음
 - 이는 신선도 유지가 관건인 식료품의 유통에 악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체인형 대형마트 등의 현대식 식료품 기업은 카자흐스탄의 전국 지역으로 쉽게 확장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현대식 식료품 기업이 일부 지역, 도시에 집중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좋은 상권에는 매장을 지을 만한 충분한 공간이 부족하므로, 현대식 식료품 기업은 더 작은 매장 형식으로 전환하고 있음
 - 소비자들은 식료품 쇼핑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주거지 근처의 더 작은 매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더 작은 매장 트렌드는 이러한 소비자의 니즈와 부합되고 있음
- 이에 편의점과 슈퍼마켓이 가까운 위치를 강점으로 성장하고 있음
 - 편의점은 2019년 기준 시장규모 238억 텡게(약 6000만 달러)로 액수는 적지만 전년 대비 60% 성장해 현대식 식료품점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슈퍼마켓은 2019년 기준 현대식 식료품점 전체 시장규모의 약 65%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32%의 성장률을 기록함

온라인 채널⁹⁾

- 온라인 유통시장은 전체 소매시장 매출액의 5%로 아직 낮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채널로 2018년에 2017년 대비 2배 성장함
- 인터넷 소매업은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률 증가와 함께 소비자들의 바쁜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은 식료품을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음
 - 2020년 기준 식품 및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전체 전자상거래 규모의 약 4%를 기록하였으며, 전자상거래 규모 확대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식료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9) aT KATI 지구촌 리포트 103호,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면역력 강화를 위한 마유 및 발효유 선호 증가, pp. 11
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licationView.do?board_seq=92137&menu_dept2=49&menu_dept3=52%20&dateSearch=all

- 또한, 옴니채널¹⁰⁾을 형성하는 것이 산업 내 트렌드로 소매업체는 자체적으로 온라인 상점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내 주요 지불방식은 현금이며, 뒤이어 카드, 전자지갑, 은행송금으로 나타남
- 아직 식료품 인터넷 주문과 배송에 어려움이 있고 거대한 영토 대비 낮은 인구밀도와 도시 간 인프라 부족으로 물류 측면의 혁신이 필요함
-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운영되는 주요 현지 식품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SATU, Anuha-Aipo, Fine food, Arbuz 등이 있음

□ 2. 한국 식품 수출 동향 및 전망

□ 가. 가공식품 수입 시장

■ 가공식품 시장

- 식품가공업이 발달하지 않은 카자흐스탄에서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을 수입함
- 카자흐스탄 정부와 민간기업은 식품가공부문 육성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는 육류가공부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예를 들면, 2019년 12월 카자흐스탄은 Tyson Foods 및 Kusto Group과 2,000마리의 소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 설립을 추진함. 이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중동국가에 소고기 및 제품을 수출할 계획이 있음
- 다이어트, 건강식품은 섹션이 따로 있을 정도로 최근 판매량이 많아지는 추세이며, 할랄식품의 비중은 30% 수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별도 섹션은 두고 있지 않음

10) 옴니채널이란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각 유통채널의 특성을 결합하여 어느 채널에서든지 같은 매장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만든 쇼핑 환경을 의미함

개별 식품시장

- 주식으로 활용하는 베이커리 제품
 - 베이커리 제품은 카자흐스탄 식품시장에서 약 10% 비중을 차지하며, 소비자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요가 전망됨
 - 현지 밀가루 공급이 원활하여 빵 제조 수급에는 무리가 없지만, 밀 가격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빵 가격 변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최근 패스추리, 저칼로리 빵, 케이크 등 다양한 종류의 빵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자들 역시 품질과 디자인을 개선한 빵을 생산하는 추세임
- 유아용 음료와 우유의 높은 관심도
 - 유아용 식품 수요와 판매량이 많아 유아용 식품 섹션을 매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마련해 두고 있음
 - 유아용 식품은 특수식품에 해당되어 인증이 까다로운 편임
 - 신선 우유의 품질이 좋지 않아 최근 Danone 등 다국적기업이 현지에 진출하고 있고, 독일 등으로부터 가공 우유를 많이 수입함
- 차 문화 발달에 따른 크림의 매출 성장
 - 차 문화가 발달하여 홍차, 커피 등의 수요가 높은 편임. 또한 크림(커피조제품)을 첨가하여 차와 함께 마시므로 크림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함
 - 한국산 크림(커피조제품)은 약 71%의 판매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1인당 커피소비량은 한국의 4배 수준임
- 간장, 케첩 등의 소스류 수입 증가
 - 마요네즈 및 소스 대부분은 러시아에서 수입함. 러시아의 경우 소스류 제품이 잘 발달되어 있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으며 같은 경제연합 국가이기 때문에 무관세로 카자흐스탄에 들여올 수 있어서 가격경쟁력이 높기 때문임
 - 간장은 중국산 제품의 판매량이 가장 높음

- 주류 중 맥주 판매량이 가장 많고, 뒤이어 위스키임
 - 카자흐스탄은 이슬람 국가로서 원칙적으로 음주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아 시민들이 간헐적으로 술을 소비하고 있으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주요 수출국가

- IMF의 Trade Data Monitor에 의하면 2018년 기준으로 25억 달러 정도의 식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수입품은 1) 계란 및 가공품, 2) 신선 과일, 3) 가공 채소, 4) 향신료, 5) 커피, 6) 비알콜음료, 7) 펫푸드, 8) 과일 및 야채주스, 9) 견과류, 10) 초콜릿 및 코코아제품임
-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입대상 국가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중국 및 주변국가임
 -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으로 무관세 협약, 러시아어권, 동일 인증제도, 가격경쟁력 확보 등 유리한 입장으로 시장을 선점함
 - 오리온, 롯데제과, 한국야쿠르트 등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은 러시아 현지 생산품을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대상, CJ 등도 현지 생산을 준비 중임
 - 중국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타국 대비 물류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여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나. 한국 식품 현황

한국과 한국 상품 인지도

- 2005년 이후로 10-20대를 중심으로 한류열풍이 확산되면서 한국 의류, 패션, 음식문화 등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음
 - K-pop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로 한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고려인들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구축되고 있음

- 소득수준 상승에 따라 식품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식문화교류협약을 통해 한국식품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카자흐스탄 농무부와 한식문화교류협회가 한식문화교류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카자흐스탄에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핵심 식품 구매자인 주부 및 젊은 여성들의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식품 소비로 이어지고 있음
 - 20-30대 여성은 온라인 이용률이 높고, 비교적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주요 구매층으로 부상함

■ 한국 식품 판매 동향

- 현지 한국식품점에서는 라면, 음료, 과자류, 간장 등 소스류, 유자차 등 차류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식품을 판매함
 - 쌀과자가 인기 있고, 떡볶이, 만두 등과 즉석조리식품이 시식판촉 시 잘 팔리는 경향이 있음
 - 커피크리머와 라면은 다양한 유통점포 곳곳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소스, 과자, 음료, 김 등은 주로 고급 슈퍼마켓이나 한국식품 전문점을 중심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됨
 - 현지 대형유통업체에는 한국라면 코너가 있을 정도로 한국제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으나 타국 제품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며, 대기업 제품을 중심으로 봉지라면과 컵라면 모두가 주로 판매되고 있음
-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식품은 높은 물류비로 인해 대체로 가격이 높은 편임
 - 주로 고급 식료품점 및 대형마트에서 많이 판매되며,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의 구매빈도가 높은 편임
 - 한국식품점은 알마티에 약 30여 개소가 있는데, 한국 교민이 약 10개, 고려인이 약 20여 개를 운영 중이며, 구매고객의 80% 정도는 현지인이고 나머지 20% 정도가 교민으로 이루어져 있음

- 유통기한과 물류비용의 문제로 한국산 신선식품은 거의 없고, 주로 가공식품 위주로 판매됨

한국 식품 수출 동향

- [표 2-1]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對 카자흐스탄 식품 수출입 현황이 제시되어 있음
 - 2019년에는 2,990만 달러 정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0년 10월 기준 1,170만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에 수출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추세로는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도 있음을 제시함
 - 중량 기준으로는 수출과 수입 모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함
 - 금액 기준으로 보면 수출은 2017년에는 2016년보다 하락했다가 2018년에 증가했던 것이 2019년에 다시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2018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다가 2019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은 10월까지의 통계이며, 추후 추이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2-1] 최근 5개년 간 對 카자흐스탄 수출입 현황

단위 : 톤, 천 달러

년도	수출		수입	
	중량	금액	중량	금액
2020	5,606	16,558	99	14,925
2019	9,230	29,909	236	17,212
2018	9,188	35,812	226	21,919
2017	8,563	33,706	241	10,749
2016	7,599	34,383	170	6,286

출처 : www.kati.net (<https://www.kati.net/nation/basisInfo.do?lcdCode=MD193>)

기준 : 2020. 10

- [표 2-2]에 對 카자흐스탄 주요 부류별 가공식품 수출 동향이 제시되어 있음
 - 과자류, 면류, 음료, 소스류는 증가하였으나 연초류와 주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이 증가한 가공식품 중에서도 면류의 증가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2] 對 카자흐스탄 주요 부류별 가공식품 수출 동향

단위 : 톤, 천 달러, %

구분	2018 (A)		2019 (B)		증감률 (B-A)/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연초류	30.4	397.5	0	0	△100	△100
과자류	280.9	2,915.9	318.8	3,273.5	13.5	12.3
면 류	953.5	4,219.6	1,245.2	4,808.7	30.6	14
주 류	65.8	101.5	35.0	45.3	△46.8	△55.3
음 료	258.4	690.8	366.9	717.0	42	3.8
소스류	352.0	1,248.6	434.7	1,360.3	23.5	8.9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statistics/monthlyPerformanceByNation.do>)

기준 : 2020. 11

- [표 2-3]를 보면, 최근 2년간 수출된 품목 중에서 금액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커피조제품과 라면으로 2019년에는 커피조제품이 가장 많았으며, 2020년 10월 현재는 라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20년에는 2019년과 다르게 채소종자와 김을 밀어내고 기타베이커리제품과 비스킷류가 각각 수출 4위와 5위를 차지하였음

[표 2-3] 최근 2년 간 對 카자흐스탄 식품 수출 Top5 품목 목록

단위 : 톤, 천 달러

순위	2019년			2020년		
	품목	중량	금액	품목	중량	금액
1	커피조제품	2,696	5,853	라면	973	3,437
2	라면	1,127	3,839	커피조제품	1,511	3,192
3	혼합조제식료품	2,247	3,131	혼합조제식료품	1,437	2,532
4	채소종자	4	2,810	기타베이커리제품	98	1,130
5	김	89	1,668	비스킷	104	895

출처 : www.kati.net (<https://www.kati.net/nation/basisInfo.do?lcdCode=MD193>)

기준 : 2020. 10



제 3 절. 수입식품 관리제도

□ 1. 식품수입 관리제도

□ 가. 개요

- 카자흐스탄의 식품수입은 유라시아경제연합법, 카자흐스탄 법률, 카자흐스탄 행정부령, 카자흐스탄 행정기관 규칙에 따라 규제됨
 - 카자흐스탄은 식품무역규정을 개혁하여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과 정책 통합을 이루어가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2015년 말 WTO에 가입한 이후 국제 기준에 따라 무역정책 변화를 추진 중임

□ 나. 관련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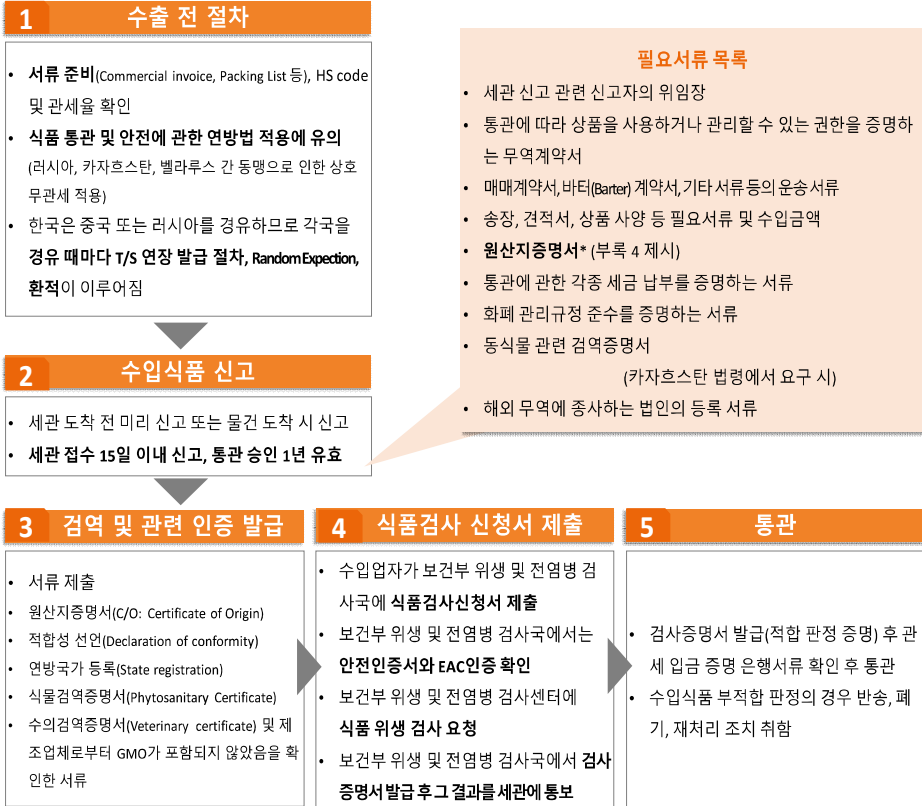
- 수입 식품과 관련된 카자흐스탄 관련 기관은 다음과 같음¹¹⁾
-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산하 '수의 통제 및 감시위원회'(Committee of the Veterinary Control and Surveillance)
 - 카자흐스탄 내 가축 및 반려동물, 야생동물 상태 추적 및 관리, 동물 건강을 위한 법적 조치 및 규제
 - 수입쿼터제를 적용받는 육류 및 가금류를 수입할 경우 수입업체는 수의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산하 '농산물검역위원회'(Agricultural State Inspection Committee)
 - 카자흐스탄 내의 식물 위생 현황을 감독하고 식물 건강상태와 관련된 법적 조치 및 규제
 - 카자흐스탄은 수출국의 수출 식물 검역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며, 수입된 식품은 카자흐스탄 식물위생검역소 또는 차량 국경교차점에서 검역 시행
-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공공보건위원회'(Committee for Public Health)
 - 식품안전 담당, 규정 부적합 식품의 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산업·기반개발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rastructural Development) 산하 '기술규정·계량위원회'(Committee on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
 - 제품의 평가 담당, 제품이 국내 표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 판정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국가세무위원회'(Committee of State Revenue)
 - 관세 규정을 통해 대외경제활동 규제, 세무관련 규정 및 절차 관리
- 국가경제부(Ministry of National Economy)
 - 대외경제활동 중 관세 외 규정 담당, 특허 및 쿼터 담당

11) 카자흐스탄의 관련된 주요 정부 기관 주소 및 연락처가 [부록 2]에 제시되어 있음

□ 2. 수입 절차

□ 가. 전제 절차 개요

- 2018년 1월 1일부로 유라시아경제연합 신관세법이 발효되었는데, 이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되던 통관 과정이 2018년 4월 1일부터 전자통관 시스템 'ASTANA-1'에 의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시작함
 - 세관에 수입상품이 도착하면, 품목 등록과 통관허가가 자동으로 이루어짐
 - 통관 관련 필요서류를 'ASTANA-1'에 등록해야 함
- 카자흐스탄 재무부 산하 국가세무위원회 홈페이지(<http://kgd.gov.kz>)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서류를 발급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전반적인 통관절차가 간소화됨
- 카자흐스탄에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인 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2-3] 카자흐스탄 수입통관 절차

나. 단계별 절차

수출 전 절차

- 수출 전 절차에서는 'HS코드 및 관세율 확인', '수출업체 필요서류 확인', '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 '생산시설 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위생검역'(Veterinary-sanitary examination), '대상품목 여부 사전 확인 및 수입업자와의 협의를 통한 사전준비' 등이 필요함

-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경제연합 대외 경제 상품코드를 사용하여, 코드별 관세율은 eurasiancommission.org/en/Pages/default.aspx에서 확인 가능함
- 수출업체가 갖추어야 할 필수서류는 C/L, P/L, Price List, 원산지증명서(C/O), Non-GMO 증명서류 등이며, 품목별로 식물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ion), 수의검역증(Veterinary certificate),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등임

선적·운송·환적 절차

- 선적·운송·환적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화물 노선이 해운으로 출발해서 철도 (TCR-중국 경유, TSR-러시아 경유) 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계별 유의사항이 존재함
- 선적된 품목은 중국 또는 러시아 국경 경유 때마다 T/S면장, 검역, 환적이 필요하고, B/L 건당 통관비가 증가함
- 인코텀스(INCOTERMS) 2010 조건에 따라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포워딩업체를 지정하고, 운송을 의뢰받은 포워딩업체는 해상운송 및 내륙운송을 통해 선하증권상 목적지까지 운송 전 과정, 혹은 일부 과정을 책임짐
-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수출 시 2번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되며, TCR 이용 시 철도의 레일 폭이 표준궤(중국)와 광궤(CIS)로 달라 환적이 반드시 필요함

수입식품 신고 및 통관 절차

- 2004년부터 세관신고 검사기간을 3일로 줄이고, 사전 세관 신고 후 나중에 물품을 들여올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전반적인 통관절차를 간소화시킴
- 2012년 6월 17일자로 관세동맹 관세영역 반입상품에 대한 '의무적인 사전통지' 제도 도입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 158호(2015.12)에 따라, 2017년 4월 1일부터 항공운송 반입 상품에 대한 사전통지가 의무화되어 상품 반입을 이행하는 운송인, 혹은 운송인의 대리인이 상품 도착지 관할세관에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함

1

서류준비

(필수)

- C/L, P/L, 계약서
- 제품설명서
- 원산지증명서
- Non-GMO증명서류
- 보험증서
- 수출신고필증
- 운송장(B/L, RWB, AWB)
- 통관계약서
- 외환거래허가증(Passport deal)
- 위임장(통관업무 위임)
- Packing detail list
- 적합성증명서(Certificate / Declaration of conformity)
- DTS(Declaration of customs price)
- 예치금송금확인서

(필요시) Price List, 식물검역증, 수의검역증, 위생증명서 등

- HS code 확정을 위해 사진자료를 포함 제품설명서 준비 필수 (Certificate 발급여부 판단)

2

수입신고

- 준비서류 제출
-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에 식품검사신청서 제출
- 적합성인증서는 물건 도착 시 발급받거나 사전에 발급받아 제출
- 세관 기준보다 신고단가가 낮을 경우 가격 증빙서류 제출 필요 (Price List 등)

3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
제출서류가 HS code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적합성 인증 확인/ 물품이 서류 내용과 일치하는지/ 샘플 추출 검사
- 화물검사
Packing List와 실무계 간 차이가 나는 경우 화물 검사 신규 화물 혹은 서류 문제 발생 시 화물검사가 필히 진행
검사비용 발생 및 통관 일수 2일 이상 추가

4

통관

- 검사증명서 발급(적합 판정 증명) 후 관세 입금 증명 은행서류 확인 후 통관
- 수입식품 부적합 판정의 경우 반송, 폐기, 재처리 조치 취함

[그림 2-4] 카자흐스탄 수입식품 통관 절차¹²⁾

- 세관신고 절차에 대한 전산화를 지향하지만,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 여전히 세관원을 직접 접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뇌물 발생비율이 높음

12)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설명이 [부록 3]에 제시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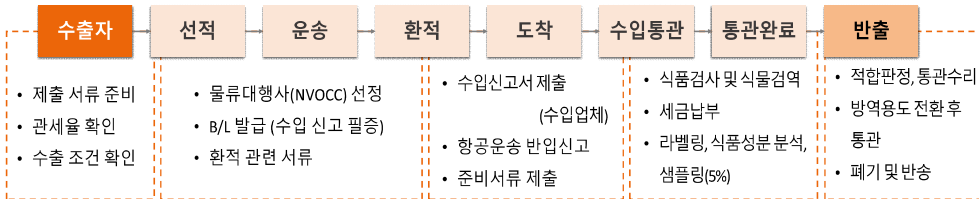
- 통관 시 필수증명서(적합성증명서, 일반적으로 Certificate로 표현) 발급기간이 약 20일가량 소요되어 창고료 발생 및 분실 위험이 있음
 - 선 통관 및 화물픽업이 가능하지만, 30일 이내 해당 증명서 발급 및 세관 제출이 이루어져야 함. 그 전에는 제품의 사용과 판매가 불가능하며, 사전 발급 필요
- ① 관세, ② 부가가치세(12%), ③ 소비세, ④ 세관수속비의 통관 관련 비용 발생
- 수입신고 검역절차, 세금납부 완료 후 모든 서류사본은 카자흐스탄 관세청으로 송부되고 최종 승인이 되면 물품반출이 가능하며 통관절차는 완료됨
- 각 주체별 필요서류 및 제출서류 목록

수출자				수입자			
서류명	작성/발급자	제출사유	표기언어	서류명	작성/발급자	제출사유	표기언어
C/(Commercial Invoice)	수출자	견적서 확인	영어	Bank Slip (관세, 부가세, 수입인지세 예치금 송금장 확인서)	은행	세관과 연결된 은행계좌로 통관자금 송금증명서, 통관과 함께 통관된 금액이 차감됨	러시아어
P/L(Packing List)	수출자	물량 확인	러시아어/ 영어	외환거래허가증	은행	50,000불 이상 송금시 필요	러시아어
제품설명서	수출자	HS code 및 Certificate 발급여부 결정	러시아어	증명서(Certificate)	수입자, 발급기관	역내 유통, 판매 허가	러시아어
Price List	수출자	제품단가 확인 (요구 시)	영어	계약서(Contract)	수출자 수입자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서	러시아어/영 어
Non-GMO 증명서류	수출자	수출자 양식으로 작성	러시아어/ 영어	위임장	수입자	통관업무 위임 증명	러시아어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수출국 발급기관	원산지 및 관세율 확인	러시아어/ 영어	관세사			
수출신고필증	수출국 발급기관	수출입 정보 확인	러시아어/ 영어	서류명	작성/발급자	제출사유	표기언어
식물검역증 (Phytosanitary certificate)	수출국 발급기관	신선농산물	영어	통관신고서	관세사	통관 서류	러시아어
위생검역증 (Health certificate)	수출국 발급기관	경우에 따라 요구	영어	DTS (Declaration of customs price)	관세사	관세율 산출 근거, GTD 첨부서류	러시아어
				운송장(B/L)	선사	.	러시아어/ 영어

[그림 2-5] 카자흐스탄 통관 시 제출 및 필요 서류

다. 통관 절차

- 카자흐스탄은 내륙국가이므로 해상운송 경로가 없음. 이에 한국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까지는 해상운송으로 이동한 후 내륙운송 또는 항공운송으로 이동하는 복합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상품이나 차량은 검사가 필수, 통관업무는 카자흐스탄에 등록된 수입업체나 관련 자격증을 가진 통관중개사가 통관을 대리할 수 있음
- 수입신고서와 수입신고 시 필요한 각종 서류는 수입업체가 국경 도착 전에 관련 세관에 제출해야 함
- 통관의 전반적인 절차는 수출업자가 수출품을 선적시킨 후 '운송-환적-도착-수입통관-통관완료-반출'로 이루어짐



[그림 2-6] 카자흐스탄 수입통관 절차

- 카자흐스탄의 전반적인 통관절차는 위 [그림 2-6]에 제시된 바와 같음
- 2010년에 러시아, 벨라루스와 관세동맹 체결 후 단일통관시스템 구축

- 과거 모든 세관 절차가 브로커(중개인)을 통해 진행되었으나, EAEU법에 의거 브로커 개입 없이 관세청 및 소속기관을 통해 세관신고서 작성 가능
 - 다만, 신고서에 기재된 정보에 대한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으며, 통관은 도착지에서 이루어짐
 - 통상 통관에는 2~4일이 소요되고, 수입물품은 세관신고 신청일로부터 1영업일 이후에 반출됨

□ 라. 검역

■ 검역 개요

- 위생·전염병 검역(Sanitary-Epidemiological Control)
 - 위생·전염병 검역대상 제품들은 수입 전 신고의무가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품질 및 안전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연방 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 등을 제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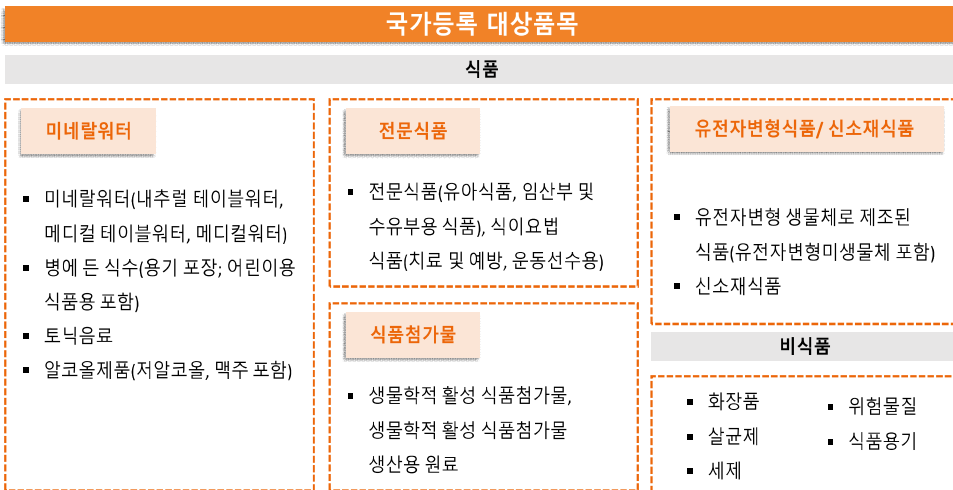
위생·전염병 검역대상 식품	
미네랄 워터 (일반, 치료용)	어린이용 식품 (모유 대체품, 시리얼, 우유, 채소, 과일, 육류, 생선 제조 식품, 영유아용 식품, 영유아용 허브차, 임산부 및 수유부용 식품)
식이요법 식품	
유제품	육류 및 육류가공품 (영양 첨가 제품 포함)
유전자 변형 제품 제조 식품	신기술 제조 식품 (식품 원자재 포함)
생물학적 활성식품 첨가물	

[그림 2-7] 위생·전염병 검역대상 식품

- 수의검역(Veterinary Control)
 - 수의검역 대상 품목으로는 모든 종류의 동물, 고기 통조림, 소시지 등 가공육류, 우유 및 유제품, 동물이 원료인 기타 제품, 동물 사료 및 의약품 등임
- 식물검역(Phytosanitary Control)
 - 카자흐스탄은 신선농산물의 경우 수출국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

가공식품 국가등록(State Registration)

- 국가등록증명서(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는 제품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위생규정을 따른다는 확인서로 2010년 6월 1일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국가별 위생증명서(Hygienic Certificate)를 통합·대체함
-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는 EAEU 결정 299호(2010.5.28)의 위생기준 및 TRCU 021/2011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2011.12)에 따라 국가등록 대상품목을 규정함



[그림 2-8] 규정에 따른 국가등록 대상품목

□ 3. 인증 제도

□ 가. 인증제도 개요

■ TRCU의 EAC 인증(Eurasian Conformity) 인증

- 카자흐스탄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공동기술규정(TRCU) 적용
 - 유라시아경제연합 영토 내로 제품이 반입, 유통, 판매되기 위해서는 공동기술규정에 따라 모든 신선 및 가공식품은 생산, 저장, 운송, 판매, 처리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함
 - 관세동맹 회원국 공동의 기술규정으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은 국가별로 적용하던 개별인증인 GOST-R(러시아), GOST-K(카자흐스탄), STB(벨라루스)를 TRCU의 EAC(Eurasian Conformity)인증으로 통합함
 - 이로 인해 일부 특수 규격을 제외한 식품, 화장품, 장난감, 자동차 등의 다양한 품목에 의무적으로 EAC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EAC 인증마크 없이는 통관 및 판매 불가능함
 - 식품의 경우 모든 품목의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이 EAC 인증 대상임
 - 적합성이 인증된 제품은 유라시아경제연합 공동인증마크인 EAC를 표기함
 - 해당 인증은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한 모든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에서 사용 가능함

■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인증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제도

- 카자흐스탄 정부는 통관 시스템 개선을 위해 AEO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임
-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2017년 4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인증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여 2019년 4월에 협정을 체결함
- 카자흐스탄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 AEO인증기업은 카자흐스탄 세관 통관과정에서 검사를 축소, 우선 통관, 세관 연락관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게 됨

□ 나. 인증제도 세부 설명

■ EAC 인증¹³⁾

- 적합성 인증의 종류는 제품의 용도, 환경, 사양, 위험성에 따라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과 적합성 인증(Certification of Conformity)으로 분류되며, 모든 식품 및 비식품에 적용
- 식품은 일반적으로 적합성 선언에 해당
- EAC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은 제품이 유라시아경제연합 기술 규정의 요구사항을 최소한으로 충족하고 사람과 환경에 안전하다는 증명임¹⁴⁾
- 품목에 따라 적합성 인증 시 국가등록, 수의위생검역 등이 포함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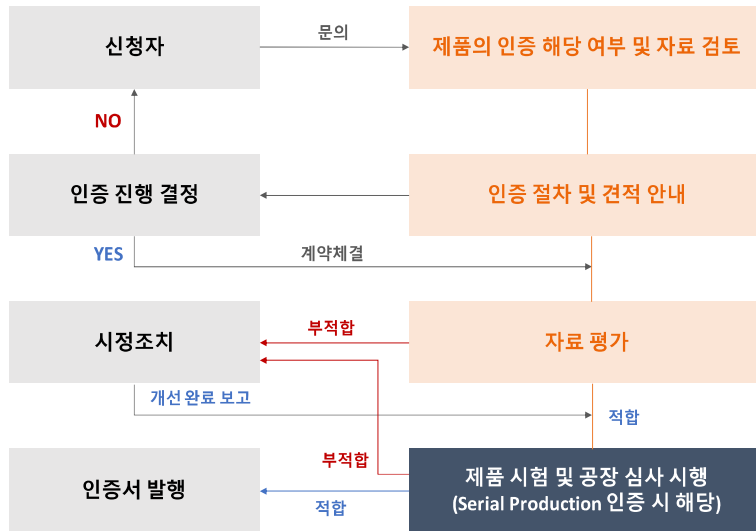
1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EAC 인증제도
<http://ktr.or.kr/certification/overseas/contentsid/476/index.do>

14) 인증서 샘플이 [부록 4]에 제시되어 있음

- 인증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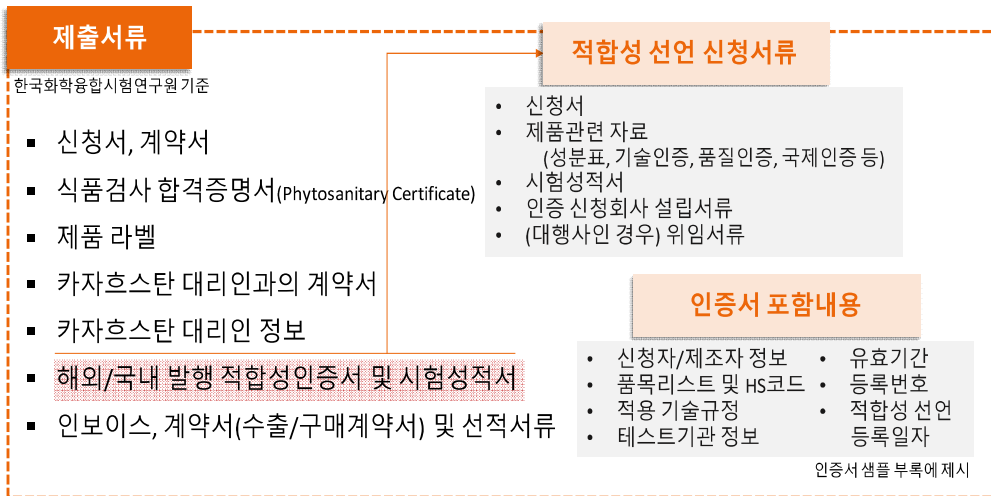


- 발행기관 : 산업·기반개발부 산하 기술규정·계량위원회
- 신청자 : 제조자, 수입자, 권한대표, EAEU 내 법인(수입자)이 역내에서 신청
- 소요기간 : 20일 내외
- 비용 : 품목 및 평가절차, 유효기간 등에 따라 상이
 - 유효기간 1년 기준 한 품목당 50\$~
- 유효기간
 - 일회 / 1년 / 3년 / 5년
- 인증절차
 1. 적용 기술규정 확인
 2. 적합성 평가절차 선택
 3. 제품 테스트 및 분석(자체 실험실 또는 EAEU 공인 시험기관)
 4. 신청서류 준비(테스트 결과가 기준에 적합할 경우)
 5. 적합성 선언서 작성(신청자가 작성)
 6. EAEU 내 공인된 인증기관에 적합성 선언서 및 신청 서류 발송
 7. 인증기관 신청내용 검토 및 EAEU 적합성 선언서 등록



[그림 2-9] EAC 인증절차

자료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EAC 인증제도, <http://ktr.or.kr/certification/overseas/contentsid/476/index.do>



[그림 2-10] EAC 인증 제출 서류

□ 4. 관세제도

□ 가. 관세 개요

- 카자흐스탄의 수입통관에 적용되는 세금은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통관비용 등이 있음
 - 관세는 HS 품목별로 0%, 5%, 10%, 15% 등으로 일반화되어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며, 평균 수입관세는 약 9% 정도임
 - 부가가치세는 품목별로 동일하게 12%가 적용됨
 - 소비세 및 통관비용은 통관서류에 기재되는 품목 및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됨
- 카자흐스탄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러시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과는 관세동맹이 체결되어 무관세로 교역이 이루어짐
- 수입세관
 - 국경세관은 러시아, 중국,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접한 13개 국제세관의 38개의 관할세관, 카스피해에 2개의 항구세관, 11개의 공항세관이 있음

□ 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단일 통관시스템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역내 시장통합을 진행하고 역외 시장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음
-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들은 2017.4.11. “EAEU 세관법에 관한 협정 (Treaty on the Customs Code of EAEU)”에 서명하였으며, 유라시아경제연합 영토 내에 통합 통관규정이 2018.1.1.부터 발효

□ 다. 관리체계

- 카자흐스탄은 세계 경제에 편입을 위해 관세법을 개정하고, 대외경제 상품코드를 세계표준인 HS코드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맞추고 모든 상품이 97개 카테고리 중 하나에 포함되도록 함
 - 2010년 1월 1일자로 관세동맹 대외경제 상품코드(CU HS코드) 및 공통 관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2015년 1월부터 유라시아경제연합 대외경제 상품코드(EAEU HS코드) 및 공통 관세율을 적용해왔음
 - 현재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간 무관세, 제3국에서의 수입에 동일 관세 적용됨
 - 2015년 7월 15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에서 WTO 양허세율 범위 내 일부 품목에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관세율 및 통합 대외경제 상품코드(EAEU HS코드)가 개정됨
 - 2015년 9월 1일부터 HS코드 10자리로 이루어져 있는 세부품목 4,061개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함(평균관세율 5%~5.3%, 식품 13.28%)
- 식품수입관세
 - 수입관세는 종가세, 종량세, 종가-종량 혼합형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품목별 관세율 정보는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commission.org/en/Pages/default.aspx)', '카자흐스탄 재정부 국가수입위원회(kgd.gov.kz/tnved)'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세관법 주요 변경사항	
세관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 세관규제 최대한 축소 ▪ EEC(유라시아경제위원회) 규정 우선시함
세관신고 전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화 세관신고서 제출을 기본양식으로 변경 ▪ 서면 세관신고는 경우에 따라 허용
물품정보증명서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신고 물품 정보에 관한 증명 없이 세관신고서 제출 가능
제품반출,세관신고등록자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 제품반출 및 자동 세관신고등록 가능
통관단일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단일창구 도입으로 제품반출을 위한 필수정보 제공 용이
화물정보사전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 사전신고를 강제신고와 자진신고로 세부 분류
제품반출 시간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반출은 세관신고 이후 기존 1 근무일에서 4시간으로 단축
세관법규정통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14개 통관절차에 추가로 국제협약에 따라 규정되던 보세구역, 무료 창고와 회원국별로 규정되던 특별통관절차 규정 3가지가 EAEU 세관법에 통합됨
AE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당국에 등록된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관세지연지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지연지불이 허용되는 경우와 기간, 과세가격결정 명시

[그림 2-11] EAEU 세관법 주요 변경사항

[표 2-4] 주요 품목별 수입관세율

품목		증량	금액
감귤류	Mandarin(Tangerine, Satsuma 포함), 신선, 건조한 것	080521 0000	기본 5% 또는 kg당 0.015유로 이상
	Wilking, Hybrid citrus, 신선, 건조한 것	080529 0000	5%, 또는 kg당 0.015유로 이상
유자차	과실가공품 기타 : Citrus : 당분 첨가 열가공된 잼, 젤리, 페이스트 등	200791 9000	기본: 10%
라면	기타 마카로니 제품, 건조된 것	190230 1000	기본: 13% 또는 kg당 0.05유로 이상
과자류	기타 과자류	190531 9900	기본: 12%, 또는 kg당 0.1유로 이상
김	해조류	121221 0000	주요: 3%
			WTO 세율 5% CIS국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입관세 0%
			CIS국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입관세 6.8%
			CIS국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입관세 0%
			CIS국가 관세 면제 베트남 CCT 비율
			CIS국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입관세 0%



제 4 절. 식품 표시

□ 1. 식품 표시 및 포장 개요

□ 가. 카자흐스탄 식품 표시제도

- 카자흐스탄의 식품 라벨링은 관세동맹 회원국인 러시아, 벨라루스와 동일한 식품표시규정 «Labeling of food products» (TR CU 022/2011)을 따름
- 카자흐스탄 포장식품의 경우 아래 사항이 라벨에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

- 제품명,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에 관한 정보(업체명, 국가, 주소 포함), 보관 및 취급 방법에 관한 설명, 제품 용량, 제품 성분(일부 과일제품 제외), 유전자 조작 성분(GMO) 유무에 관한 정보, 제품의 영양 정보, EAEU 기술규정에 따른 보관 방법, 유통기한, 제조일자, 기타 필요한 정보, EAC 인증마크
- 라벨은 러시아어와 카자흐스탄어 두 가지 언어로 모두 표기되어야 하고, 반드시 제품명, 원산지, 생산자를 포함해야 함

□ 나. 품목별 포장요건

- 사전포장된 '가공식품' 필수 표기사항은 제품명/식품성분/제조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제조자-전권대표-수입자/권고사항-제한사항/영양정보/EAC 마크 등이 있음
- 비가공, 비포장으로 판매되는 '신선 농식품'은 라벨링 규제 범위에서 제외됨
- '축산물'의 경우에는 TR CU 22/2011에 따라 축산물 라벨링을 적용함
- 식품표시규정 «Labeling of food products» (TR CU 022/2011) 이외에 식품별 기술규정에 식품별로 자세한 표시규정을 제시함
 - 유지제품, 주스, 육류가공품, 알코올음료, 우유 및 유제품, 특수영양식품, 생선, 음용수 등

□ 2. 표시사항

□ 가. 표기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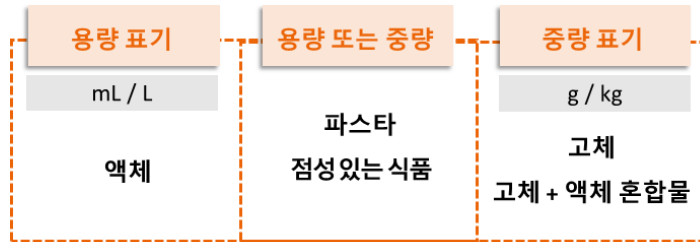
■ 제품명

- 제품원료와 제품특성이 명확히 드러나며, 다른 식품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함
- 특수가공(훈제, 절임, 분쇄, 동결건조 등)식품의 경우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제품명에 해당 정보를 포함하거나 유사 용어를 사용해야 함
- 식품에 향미증진제가 포함된 경우 '~맛(with the flavor of)', '~향(with the aroma of)'과 같은 방식으로 향미증진제가 포함되었음을 표시해야 함

■ 식품 성분

- 식품 성분 기재 시 질량의 비율에 따라 가장 많은 양부터 순서대로 기재
- 복합성분이 포함된 경우, 모든 복합성분은 괄호 안에 기재해야 하지만 복합성분이 2% 이하인 경우, 식품첨가물, 향미증진제, 생물학적활성첨가물, 약초, GMO 원료에서 나온 성분 외에는 명시하지 않아도 됨
- 식품에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경우 기능(산도조절, 유화제 등)과 명칭을 기재해야 함
- '딸기를 포함한 신선 과일과 감자를 포함한 채소', '다른 재료 첨가 없이 하나의 식품에서 얻은 식초', '단일 성분으로 구성된 식품'의 경우 식품 성분 목록을 표기할 필요 없음
-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 정보를 표기할 필요는 없지만, 아스파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페닐알라닌의 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표기해야 함

식품용량



- 단위는 약어로 표기 가능
- 개수 단위 판매 제품 제외 (계란, 과일, 채소 등)
- 두 가지 용량표기 동시에 사용 가능

제조일자



- 설탕은 제조년도만 표기
- 제조일자는 생산일자(Production date) 및 유사 단어로 대체 가능

유통기한



- Best before / Best before the end of / Shelf life / Consume before 및 유사단어 대체 가능
-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함께 표기되어야 함

보관방법

- 모든 특수한 보관조건 또는 사용조건을 표기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사용 설명서를 제공해야 함

제조자 / 전권대표 / 수입자 정보

- 제조업체의 공식 상호와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제3국에서 제공되는 식품의 경우 수입업체 상호와 주소를 기재해야 함

권고사항 / 제한사항

- 섭취가 어렵거나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식품의 성분이 손상될 수 있는 경우 권고사항이나 제한사항을 표기해야 함

- 150mg/L를 초과하는 양의 카페인을 함유한 무알코올음료나 약용식물 및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양에 해당하는 성분은 “1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권장하지 않으며 임신 및 수유중인 사람에게는 권장하지 않음”이라고 표기해야 함

GMO 정보

- GMO 함유량이 0.9% 이상인 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products)’, ‘유전자변형물질에서 나온 식품(Products obtained from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변형물질을 포함하고 있음(The product contains components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함
 - 라벨의 정보는 다음과 같아야 함
 - 생존 가능한 GE 미생물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 “제품에 유전자 변형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다”
 - 생존 불가능한 GE 미생물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 “제품은 유전자 변형 미생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 2017년 EEC는 GMO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의 경우 통일된 마크 옆에 “GMO”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식품표시규정(TR TS 022/2011)을 수정함
 -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의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 비문은 형태와 크기가 통일된 마크와 같아야 함

영양정보

100g / 100mL / 1인분 기준 표기

	1인분 (30g)	100g	100mL
에너지 (kJ)	1767	530	512
단백질 (g)	13	3.9	2.3
지방 (g)	11	3.3	1.9
탄수화물 (g)	30	9	5.5
식이섬유 (g)	67	20	13
설탕 (g)	10.4	3.1	1.8
염분 (g)	2	0.6	0.4
비타민			
비타민 A (IU)	400	120	71
비타민 B1 (mg)	8	2.4	1.4
비타민 B2 (mg)	5	1.5	0.9
비타민 B6 (mg)	0.7	0.2	0.1
비타민 B12 (mg)	0.4	0.1	0.07
비타민 PP (mg)	5	1.5	0.9
비타민 C (mg)	55	17	10
판토텐산 (mg)	40	12	7
비오틴 (mg)	5	1.5	0.9
나이아신 (mg)	1.5	0.5	0.3
미네랄			
칼슘 (mg)	500	150	89
철 (mg)	9	3	1.6
인 (mg)	4	1.2	0.7
나트륨 (mg)	135	41	24

표기 정보

- 열량(칼로리)
- 단백질
- 지방
- 탄수화물
- 비타민
- 미네랄 양

표기 제외 품목

관세동맹 품목별 규정에서 별도 규제 없으면 표기하지 않아도 됨


- 향미증진제
- 신선 농수산물
- 껌
- 맛소금
- 커피
- 향료
- 천연
- 양념
- 미네랄워터
- 식초
- 병포장 생수
- 차
- 식품첨가물

유기농식품 정보

- 카자흐스탄은 2015년 11월 27일 유기농생산법¹⁵⁾ No 423-V를 승인함
 - 이 법은 건강식품, 환경보호 및 합리적 토양 사용의 증진을 목표로 하며, 유기농 생산은 유기농 생산 적합성의 국가 마크로 표시되어야 함. 또한, 유기농 생산은 유기농 생산규칙을 준수해야 함
- 2016년 5월 23일 농무부 명령 번호 230은 카자흐스탄 생산자를 위한 작물, 가축, 가공품, 어업 및 양봉에 대한 유기농 생산 요건 표준을 지정함

15) <http://adilet.zan.kz/rus/docs/Z1500000423>

EAC 인증마크

EAC 인증마크	내용 및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형의 형태로 밝거나 대조가 뚜렷한 배경에 3개의 철자 'E', 'A', 'C'를 합하여 'EAC'로 표시(필수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라시아 적합성(Eurasian Conformity)'을 의미 - 제품이 관세동맹국 기술규정의 안전요건에 적합하다는 검증 절차를 통과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 3~4주 정도(시험기간 별도) 기간이 소요되며, 1200-1600달러(시험비용 별도)의 비용 발생

나. 유의사항

- 라벨은 러시아어와 카자흐스탄어로 표기하여야 하는데, 유라시아경제연합 다른 회원국가와 유통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 언어도 표기하여야 함
- 식품유형의 이름으로 대체될 수 있는 식품성분은 다음 [표 2-5]와 같음

[표 2-5] 식품유형의 이름으로 대체될 수 있는 식품 성분

성분유형	식품유형의 이름
Refined oils of fats	원산지 표시된 유지 ; 식물성 및 동물성
Compressed, extracted or refined cacao butter	카카오버터
Fruit mixture whose mass fraction constitutes not more than 10% of food products	과일
Berries mixture constituting not more than 10% of the mass fraction of food products	베리류
Candied fruits constituting not more than 10% of the mass fraction of food products	수카데(succade: 설탕절임과일)
Vegetables mixture constituting nor more than 10% of the mass fraction of food products	채소
Natural honey of any kind	꿀
Flour mixture of two or more grain types	생산 곡물 유형 표시된 가루 (질량 분율이 가장 높은 것에서 가장 낮은 것까지)
Starch and starch modified by physical aids or ferments	전분*
Fish of any type	생선
Edible cooking salt(sodium chloride)	소금
Cheese or cheese mixture	치즈
Milk protein, caseins, caseinates, whey protein and their mixtures	우유단백질
Vegetable herbs constituting nor more than 2% of the mass fraction of food products	허브 식물
Spices constituting not more than 2% of the mass fraction of food products	향신료 및 향신료 혼합물
Source substances used for the production of chewing gum	고무(Rubber) 기준
Sucrose of any type	설탕
Anhydrous glucose or glucose monohydrate	포도당
Treacle of any type	당밀 및 포도당 시럽
Grape wines	와인
Cereal of any type	시리얼
Soya protein(isolate, concentrates)	대두단백질
Egg products of any type	알가공품

* 성분의 특별한 출처를 추가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문구를 이용 - example, - from potato

- 식품첨가물, 향료, 가공보조제 및 이들이 함유된 식품에는 반드시 관세동맹의 “식품표시규정”에 명시된 정보가 있어야 하고, [표 2-6]의 내용과 같은 추가 요건이 적용됨

[표 2-6] 라벨링 규정 추가 요건

번호	내용
1	기술규정의 부록2에 의거하여 식품첨가제 명칭에 “식품보조제”(복합식품보조제) 단어, 식품보조제, 또는 첨가물 등급, 식품과 첨가물 명칭, 또는 국제디지털시스템(INS)이나 유럽디지털시스템(EAN)에 의거한 식품첨가제 색인이 들어가야 함
2	향료의 명칭에는 “향료”(또는 “향”이나 “착향 전처리”, 또는 훈제향, 또는 Thermal Technology 착향, 또는 “예비향”) 단어가 들어가야 함
3	향료에 천연원료에서 추출된 착향제 및(또는) 천연향료만 함유된 경우 “천연” 단어를 향료에 부가할 수 있음. 천연향료의 명칭을 식품 및 향미료에 사용하는 것은 해당 천연향료에 천연착향료만 함유되어 있고, 특정 식품과 구별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4	본 기술규정의 부록 21-27에 의거하여 보조수단의 기술적 명칭에는 “가공보조제”라는 단어와 보조공정의 명칭이 들어갈 수 있음
5	효소 전처리 라벨에는 미생물 활동 유형, 원료 등에 대한 추가 표식이 들어가야 함
6	효소 전처리 과정이 개입된 식품의 경우 미생물 활동, 종류 및 이러한 약제 생산자를 생략할 수 있음
7	소매용이 아닌 식품첨가물, 향료, 가공보조제의 경우 라벨에 반드시 “소매용이 아님” 단어가 들어가야 함
8	식탁용 감미료의 경우 일일 안전 소비량을 명시해야 함
9	착색제가 함유된 식품의 경우 라벨에 약물의 종류(액기스, 에센셜 오일, maslosmoly 등) 또는 “천연향료” 단어를 명시해야 함
10	착향제가 함유된 식품의 경우 향료를 구성하는 착향물질, 또는 착향제를 생략할 수 있음
11	이산화황 함유량이 10mg/kg 미만인 식품의 경우 이산화황 보존제 표기를 생략할 수 있음
12	소매용이 아닌 식품첨가물, 향료, 가공보조제의 라벨 전달 방법은 반드시 납품용기에 부착되는 식품 라벨링과 관련한 관세동맹의 식품표시규정 요건을 준수해야 함

출처 : Eurasian Commission(www.eurasiancommission.org)

3. 식품 표시 예시

1 제품명

2 제조사

3 재료
(여러가지 언어)

4 영양성분표시

5 취식방법

1 «КАЗАХСТАНСКИЙ» МЕЛОДИЯ СТЕПЕЙ

2 (KZ) Құрамы: қант ұнтақталған какао, какао майы, құрғақ сүт сарысуы, қанғаюу алынбаған, құрғақ сүт, эмульгатор – сәлм лецитин иәс пән дағы күшәтлән – табиғи ваниль сығардым. (RU) Состав: сахар, какао тертое, какао масло, сливочное молоко сухое, молоко цельное сухое, эмульгатор – лецитин пищевой, уксусная кислота и др. вещества – экстракт натуральной ванили. (UZ) Таркиби: шакар, қиғиған какао, какао yağы, құрғақ сүт зардобы, қаймағи олинмаған қунағ сүт, эмульгатор – сәлм лецитин, ваниль әрәсәтлән.

3

Энергетикалық құрамы (қорғасынсыз) кДж/ккал	
Энергетикалық өлшемсіздік (қалыптылық) кДж/ккал	2229/532
Белок/ Белок/ Белоктің/ Proteins/ Eiweiß/ Ogiil	6.3 r/g
Май/ Жир/ Майның/ Fats/ Fett/ Yog'lar	33.4 r/g
Көмірсу/ Углеводтар/ Углеводдар/ Carbohydrates/ Kohlenhydrate/ Ugljevodlar	52.7 r/g

4 (23)°C температурда, шүнім 75%-дан аспайтын салып нормалы ылғалдылықта сақтау керек. Хранить при температуре (8-23)°C, относительной влажности воздуха не более 75%. (8-23)°C температурада 75%-дан аспайтын ылғалдылық қатысында сақталат. Storage temperature: (8-23)°C, relative air humidity should not exceed 75%. Lagerung bei Temperatur (8-23)°C, Luftfeuchtigkeit nicht mehr als 75%. (8-23)°C haroratda saqlash lozim, havoning nıstıy bosa 75%-dan ko p bo'lmashi kerak.

5

«RAXAT» АҚ, Қазақстан, Алматы қ., Зенков кө-сі, 2а
АО «RAXAT», Казахстан, Алматы, ул. Зенкова, 2а
«RAXAT» JSC, Kazakhstan, Almaty, Zhenkov str. Da AG «RAXAT»,
Kazakhstan, Almaty, Zhenkov Str. 2a «RAXAT» AJ, Qozog'iston,
Almaty sh. Zhenkov k., 2a-uy. www.raxat.kz, e-mail: raxat@raxat.kz

Таза салмағы / Масса нетто:
Таза салмағы / Net weight:
Неттоgewicht / Og'irig, netto:

107 g/g

CT 4462-1910-AQ-007-2007
CT 4462-1910-AQ-007-2007

6 08 09 2017
08 09 2018

Жасалған, қапталған / Девін пайдаланылсын
Изготовлено, упаковано / Употребить до:
Дардалған, таңқалталған / Чейін қолдану зарыл
Manufactured, packed / Best before:
Herstellen, verpackt / Mindestens haltbar bis:

1 ① 제품명 2 ② 재료 (여러가지 언어) 3 ③ 영양성분표시
4 ④ 보관방법 (온도 등) 5 ⑤ 제조사 6 ⑥ 유통기한



제 5 절.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규정

□ 1.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

□ 가. 규정 개요 및 주요 내용

■ 규정 개요

- 카자흐스탄의 식품첨가물규정은 2012년 6월 관세동맹의 기술규정에 의해 만들어진 '식품첨가물, 향료 및 가공보조제 안전 규정'(Safety Requirements for Food Additives, Flavorings, and Technological Aids)(TR CU 029/2012)을 따르고 있음

- 본 기술규정 요건과 부합하는 식품첨가물, 향료 및 가공보조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품에 마크를 부착할 수 없고, 관세동맹 회원국은 해당 제품을 시장에 유통할 수 없음
- 관세동맹의 단일 관세영역에서 유통되는 식품첨가물, 향료 및 가공보조제에는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서류와 출처 추적 가능 정보, 그리고 보관조건과 유통기한에 관한 정보가 첨부되어야 함
- 다른 관세동맹기술규정에서 발췌된 식품첨가물, 향료 및 가공보조제의 경우, 해당 식품첨가물, 향료 및 가공보조제 역시 관세동맹기술규정 요건을 준수해야 함
- 관세동맹의 공통관세영역에서의 유통 의향 없이 순수하게 개인의 소비를 목적으로 가정이나 사설농장에서 식품첨가물, 향료 및 가공보조제를 생산, 운반, 판매 및 폐기하는 경우 본 기술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규정 내용

- 이 TRCU 규정은 식품첨가물 관련 범위, 목적, 개념 정의, 취급시장, 식품 식별, 안전 요건 및 사용기준, 생산(제조), 보관·운반·마케팅 및 활용 요건, 표시 요건, 평가(확인), 라벨링, 세이프가드 조항 및 부록, 그리고 식품가공에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목록으로 구성됨
- 본 기술규정은 다음의 식품 및 관련 규제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음
 - 1) 식품보조제, 영양강화제
 - 2) 향료
 - 3) 가공보조제
 - 4) 식품 중 식품보조제 함량, 생물학적활성물질, 가공보조제 잔류량
 - 5) 식품첨가물, 향료 및 가공보조제의 생산, 운반, 판매 및 폐기과정

□ 나. 식품첨가물 정의

■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 정의

- 식품첨가물규정에 다음과 같이 제시됨
 - 그 자체로는 일반적으로 영양가가 식품으로 직접 소비되지 않고 생산(제조), 운반 및 저장 과정에서 기술적 목적(기능)으로 식품생산에 사용되며, 그 물질의 변환이 식품의 한 요소가 되는 모든 물질(또는 물질혼합물)을 의미함. 식품첨가물은 가공기능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식품첨가물규정에 다음과 같은 식품첨가물이 정의되어 있음
 - (1) 산화방지제- 산화과정을 늦추고 식품(식품원료) 유통기간을 늘리도록 설계된 식품첨가물
 - (2) 고결방지제- 잘게 분쇄된 분말입자의 점착(응집)을 방지하고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식품첨가물
 - (3) 향료- 향미 속성으로 화학적으로 정의된(화학적으로 구분된) 물질로 향 및 (또는) 맛 특성을 갖추고 있는 물질 (단맛, 신맛, 짠맛 제외)
 - (4) 천연향료- 재래식 식품 생산방법으로 가공된 식재료를 포함하여 물리적, 효소 또는 미생물공정을 통해 채소, 동물, 미생물원료로부터 분리된 향료
 - (5) 밀가루개량제- 베이킹 품질이나 가루(반죽)의 색상을 향상하도록 설계된 식품첨가물 (유화제 제외)
 - (6) 습윤제- 습기를 보존하고 식품이 마르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설계된 식품첨가물
 - (7) 피막제- 식제품을 윤기 있게 만들거나 보호막을 형성하기 위해 제품표면에 적용하도록 설계된 식품첨가물
 - (8) 젤화제- 젤과 유사한 식품 겔을 형성하도록 설계된 식품첨가물

- (9) 증점제- 식품의 점도를 높이도록 설계된 식품첨가물
- (10) 촉매- 화학반응을 가속하도록 설계된 가공보조제
- (11) 산- 식품의 산도를 높이거나 신맛을 가미하도록 설계된 식품첨가물
- (12) 보존료- 미생물 부패 및/또는 병원성미생물을 방지함으로써 식품의 유통기간을 연장하도록 설계된 식품첨가물
- (13) 식용색소- 식품의 색상을 부여하거나, 보강하거나, 복원하도록 설계된 식품첨가물. 보조착색효과가 있는 식재료 및 식품 중 먹을 수 없는 부분(예; 치즈와 소시지 겉피, 전시용고기, 치즈와 달걀표식)을 착색하는데 사용되는 색소는 식용색소에 포함되지 않음
- (14) 혼합제제-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식품첨가물, 혼합제제 일부가 궁극적인 기능 혹은 효과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유통 가능한 식품첨가물 및 (또는) 식재료 및 향료혼합물
- (15) 증량제(filler) - 에너지 값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고 식품의 양을 증가시키는 식품첨가물
- (16) 희석제- 효율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 향료, 효소, 영양소 및/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질의 용해, 희석, 분산, 또는 기타 물리적 변형목적의 식품첨가물
- (17) 거품방지제(소포제)- 식품의 발포현상을 방지하거나 억제하도록 설계된 식품첨가물
- (18) 기포제- 액상 및 고형식품의 기체상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설계된 식품첨가물
- (19) 감미료- 음식의 단맛을 내기 위해 고안되거나 식탁용 감미료의 일부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 (20) 전구 향료- 조리과정의 다른 구성 요소들과의 반응으로 풍미를 확보하거나 풍미 저하를 얻는 유일한 목표로 식품에 의도적으로 가해지지 않은 조미 속성을 반드시 가지지 않아도 되는 음식, 또는 그의 생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성분 또는 혼합물
- (21) 분사제- 용기에서 식품이 배출되도록 설계된 가스(공기 제외) 식품첨가물

- (22) 베이킹파우더- 가스 생성으로 인해 테스트 부피를 증가하도록 설계된 식품첨가물
- (23) 산도조절제- 식품의 pH(산도 또는 알칼리성)를 변경하거나 조절하기 위해 고안된 식품첨가물
- (24) 안정제- 두 개 이상의 불분산을 균일한 분산을 유지하거나 전체 안정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식품첨가물
- (25) 가스포장제- 식품을 용기에 담기 전이나 담는 중, 또는 담은 후 용기에 주입되는 가스(공기제외) 맛(향) 증폭제. 먹거리의 풍미를 변형시켜 천연풍미를 증강하도록 설계된 식품첨가물
- (26) 향미증진제- 맛 향상(또는) 천연 맛을 변경 또는 식품의 맛을 개선하도록 설계된 식품첨가물
- (27) 밀폐제- 과일 및 채소의 조직 밀도 및 식품의 경화젤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식품첨가물
- (28) 발색제- 식품색상을 안정화 내지는 보존하기 위한 식품첨가물
- (29) 효소 전처리제품- 제품생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생화학공정의 실행에 필요한 특정 효소나 복합 효소, 동식물 및 미생물원료가 함유된 정화농축제품
- (30) 응집제(청징제, 흡착제)- 적층(흡착) 공정의 효율 향상을 위하여 설계된 가공보조제
- (31) 유화제- 둘 이상의 섞이지 않는 식품상의 균일한 혼합을 유도하거나 유지하도록 설계된 식품첨가물
- (32) 유화염류-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분포시키고 가공된 치즈 및 그것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연성을 높이도록 설계된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첨가물 정의

- 한국 식품첨가물의 정의는 식품위생법 제 2조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함. 이 경우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이전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함
 - 한국의 식품첨가물 정의와 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제시되어 있음¹⁶⁾
-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첨가물의 “용도”란 식품의 제조·가공 시 식품에 발휘되는 식품첨가물의 기술적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각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 (1) “감미료”란 식품에 단맛을 부여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2) “고결방지제”란 식품의 입자 등이 서로 부착되어 고형화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3) “거품제거제”란 식품의 거품 생성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4) “껌기초제”란 적당한 점성과 탄력성을 갖는 비영양성의 씹는 물질로서 껌 제조의 기초 원료가 되는 첨가물을 의미함
 - (5) “밀가루개량제”란 밀가루나 반죽에 첨가되어 제빵 품질이나 색을 증진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6) “발색제”란 식품의 색을 안정화시키거나, 유지 또는 강화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7) “보존료”란 미생물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여 식품의 보존기간을 연장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8) “분사제”란 용기에서 식품을 방출시키는 가스 첨가물을 의미함
 - (9) “산도조절제”란 식품의 산도 또는 알칼리도를 조절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16) https://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04_01.jsp

- (10) "산화방지제"란 산화에 의한 식품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11) "살균제"란 식품 표면의 미생물을 단시간 내에 사멸시키는 작용을 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12) "습윤제"란 식품이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13) "안정제"란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을 일정한 분산 형태로 유지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14) "여과보조제"란 불순물 또는 미세한 입자를 흡착하여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을 의미함
- (15) "영양강화제"란 식품의 영양학적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제조과정 중 손실된 영양소를 복원하거나, 영양소를 강화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16) "유화제"란 물과 기름 등 섞이지 않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상(phases)을 균질하게 섞어주거나 유지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17) "이형제"란 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원료가 용기에 붙는 것을 방지하여 분리하기 쉽도록 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18) "응고제"란 식품 성분을 결합 또는 응고시키거나, 과일 및 채소류의 조직을 단단하거나 바삭하게 유지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19) "제조용제"란 식품의 제조·가공 시 촉매, 침전, 분해, 청징 등의 역할을 하는 가공보조제를 의미함
- (20) "젤형성제"란 젤을 형성하여 식품에 물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21) "증점제"란 식품의 점도를 증가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22) "착색료"란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복원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23) "청관제"란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스팀을 생산하는 보일러 내부의 결석, 물때 형성,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24) "추출용제"란 유용한 성분 등을 추출하거나 용해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25) "충전제"란 산화나 부패로부터 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의 제조 시 포장 용기에 의도적으로 주입시키는 가스 첨가물을 의미함
- (26) "팽창제"란 가스를 방출하여 반죽의 부피를 증가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27) "표백제"란 식품의 색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을 의미함
- (28) "표면처리제"란 식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거나 정돈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물을 의미함
- (29) "피막제"란 식품의 표면에 광택을 내거나 보호막을 형성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30) "향미증진제"란 식품의 맛 또는 향미를 증진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31) "향료"란 식품에 특유한 향을 부여하거나 제조과정 중 손실된 식품 본래의 향을 보강시키는 첨가물을 의미함
- (32) "효소제"란 특정한 생화학 반응의 촉매 작용을 하는 첨가물을 의미함

□ 다. 식품첨가물 범례

■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 범례

- ① 최대허용수준(허용한도) :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최대허용 수준
- ② TD(Technical Documentation) 적용 : 특정 식품에 대해 해당 식품첨가물의 사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제조업체의 기술사양을 따른다는 의미로 제조업체에서 정한 식품유형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냄. 즉, 제조업체에서 정한 식품 첨가물, 향료, 가공보조제 규정 등의 사용기준을 포함하며, 기술적 효과를 충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양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임
- ③ 식품첨가물 기술적 작용 : 원래 의도되었던 식품첨가물의 기능
- ④ 식품생산에서 가공보조제는 본 기술규정 부록 2에 따라 승인된 식품첨가물로 사용될 수 있음
- ⑤ 허용수준(mg/kg 이하) : 유해물질이 특정 식품의 특정 무게 이하에서 검출되면 안 된다는 의미임

■ 한국 식품첨가물의 범례

- ① 일반사용기준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있어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함에 있어 사용량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는 경우로 식품첨가물 일반 사용기준에 따라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최소 적정량을 사용하여야 함
- ② 사용금지 : 식품첨가물 공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없음

□ 2. 유해물질 관련 규정

□ 가. 규정 개요 및 주요 내용

■ 규정 개요

- 카자흐스탄의 유해물질규정은 관세동맹의 기술규정인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On Food Safety)(TR CU 021/2011)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
 - 식물성 원료에는 재배 및 방역을 하거나 유해성분으로부터 해당 원료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 및 농약에 대한 정보(혹은 살충제 및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정보) 필요
 - 동물성 원료에는 가축 및 조류의 체외 기생충이나 질병 퇴치, 가축 및 조류 사육 공간, 물고기를 양식하는 공간에 사용되는 살충제 및 농약과 가축, 조류의 질병 예방, 치료 및 동물성 의약품으로 기재된 조류의 먹이, 양식장 내의 물고기의 질병 예방,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
 - 살충제 및 농약, 혹은 동물용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보(혹은 미사용에 대해 기재된 정보)가 없는 식물성 및 동물성 원료의 수입 및 유통 금지

- 유통되는 식품에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유해한 전염성, 기생충 질병의 병원균, 독소는 허용되지 않음
- 식품의 유통기한 및 저장 조건은 제조업체가 설정함
-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관세동맹의 해당 기술규정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 식물, 동물 및 미생물 기원의 GMO에서 파생된 식품원료로 식품을 생산(제조)할 때, 국가등록을 통과한 GMO를 사용해야 함
- 생후 1년 이내의 유아를 위한 식품의 생산(제조)은 전문 생산시설, 전문 작업장 또는 전문 기술라인에서 수행되어야 함
- 기생충 알과 장내 병원성 원생동물 낭종은 신선/냉동 채소, 야채, 과일 및 열매에서 발견되면 안됨

■ 규정 내용

- 유해물질 TRCU 규정은 유해물질 관련 총칙(범위, 목적, 대상, 정의, 취급시장, 식품 식별), 식품안전 요건(일반 요건, 특수식품 안전 요건, 탄산음료 안전 요건) 및 부록으로 구성됨

□ 나. 유해물질 정의

■ 카자흐스탄 유해물질 정의

- EEC 유해물질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록된 개별 유해물질 규정에 제시된 문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 식품을 생산(농작물 재배, 동물 사육 등), 가공, 포장, 저장, 운송, 판매,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 또는 환경오염으로 반입되고 비의도적으로 첨가되는 유해물질을 의미함. 미생물, 중금속, 이성질체, DDT 및 대사물질, 젠조피렌, 질산염, 니트로사민, 다이옥신, 아플라톡신, 잔류농약, 항생물질, 잔류동물용의약품, 해충 감염 및 오염, 기생충, 패독, 버섯균, 항정신성 물질, 방사성물질 등을 포함함

■ 한국 유해물질 정의

- 한국 식품위생법에서는 '위해'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 2조에서는 '유해물질'을 원재료 또는 제조과정 중 오염 또는 잔류의 가능성이 있어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미생물,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용매 등으로 정의함
- 따라서 식품 및 기능성 식품 관련법을 기반으로 해석하자면 식품 중 유해물질이라 함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존재하여 인체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적 요인으로 간주됨
- 한국의 유해물질 정의와 기준은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 제시되어 있음¹⁷⁾

17)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pecialinfo/infoMapCodex.do?menu_grp=MENU_NEW04&menu_no=2848

3.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유해물질 분류

- EEC TRCU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규정에서 식품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① 식품첨가물 관련 식품분류체계
 - 식품첨가물규정의 식품분류체계는 EEC의 TRCU 식품첨가물규정 내 각 식품첨가물별로 사용기준이 제시된 식품유형을 기준으로 연구진이 정리한 것임
 - ② 유해물질 관련 식품분류체계
 - 유해물질규정의 식품분류체계는 EEC의 TRCU 유해물질규정 내 기준치와 함께 제시된 식품항목을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분류하여 체계화한 것임
 - 유해물질규정은 1) 식품안전 위생요건, 2) 병원성미생물, 3) 미생물, 4) 방사성물질, 이상 4가지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각각 기준에 해당되는 식품분류 체계가 상이함. 따라서 각각 다른 식품분류체계를 만들
 - 1) 식품안전위생요건은 중금속을 비롯한 오염물질의 허용수준과 이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시함
 - * 대분류 중심으로 식품을 분류하고 있으나, 아래 단계는 분류가 따로 있지 않음. 따라서 규정에 제시된 식품을 대분류에 맞게 분류하여 추출함
 - 2) 병원성미생물규정은 병원성미생물 종류별로 식품별 허용되지 않는 최소 무게를 제시함
 - * 이 식품목록에서 가공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을 추출함
 - 3) 미생물규정은 병원성미생물과 마찬가지로 미생물 종류별로 식품별 최소 허용 무게를 제시함
 - * 식품안전위생요건과 마찬가지로 미생물규정은 대분류 중심으로 식품을 분류하고 있으나 아래 단계는 분류가 따로 있지 않음. 따라서 규정에서 제시된 식품을 대분류에 맞게 분류하여 추출함
 - 4) 방사성물질(세슘, 스트론튬)규정은 식품별 두 가지 방사성물질의 허용가능 기준을 제시함
 - * 식품별로 번호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순서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유형분류번호는 아님. 이 식품목록에서 가공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을 추출함

[표 2-7] 한국 식품공전 분류에 따른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규정 식품유형 분류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규정 내 식품유형인 우측의 6가지 "모든 식품"은 모든 식품유형에 해당됨. 이에 속하는 식품은 해당 식품의 식품첨가물규정 및 기준치를 참고해야 함			모든 식품
			모든 식품: 건조, 분말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모든 식품: 오일 기반 향신료 및 액상훈연 향미료 포함
			모든 식품: 정제식품
			모든 식품: 청량음료 제외
			모든 식품: 포일 포장
		과자	베이커리 및 밀가루 과자제품
			설탕과자: 코코아, 초콜릿, 초콜릿이 코팅된
		과자	스낵: 감자, 곡물과 전분 기반 건조 양념
			애피타이저
		과자	-압출, 팽창된 양념 스낵
			-견과류 포함 기타 양념 스낵
		과자	제과류
			제과류: 건조과일 및 전분 기반 (저칼로리, 무설탕)
		과자	제과류: 무설탕
			제과류: 밀가루 과자(버터제품 또는 비스킷만)
		과자	제과류: 밀가루 과자(페이스트리)
			제과류: 버터 베이커리, 밀가루 과자
		과자	제과류: 버터 베이커리, 밀가루 과자(다이어트용)
			제과류: 버터 베이커리, 밀가루 과자(저칼로리, 무설탕)
		과자	제과류: 버터 제과류
			제과류: 비스킷
		과자	제과류: 비스킷 및 크래커
			제과류: 비스킷 및 크래커 (곡물기반제품)
		과자	제과류: 비스킷(건조)
			제과류: 전분 기반 과자류(저칼로리, 무설탕)
		과자	제과류: 정제형 (알약모양), 저칼로리
			제과류: 초콜릿 코팅된 밀가루 과자
		과자	제과류: 카라멜 포함 단과자, 무설탕 코코아제품
			제과류: 코코아 및 건조 과일 과자류(저칼로리, 무설탕)
		과자	지방 함유 곡물 기반 제품 (비스킷 및 크래커 포함)
			코코아 제품, 초콜릿을 재료로 한 제과 및 기타 제품
		캔디류	저칼로리 로젠지 캔디
			캔디, 드라제, 누가
		캔디류	캔디, 드라제, 초콜릿
			캔디, 드라제, 초콜릿, 초콜릿 아이싱된 밀가루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과자	
			캔디: 구강청결용 소형 필름형 캔디	
			캔디: 무설탕 구강청결용 소형캔디	
			캔디: 무설탕 구강청결용 소형캔디	
			캔디: 무설탕 향첨가 로렌지	
			캔디: 설탕함유 캔디 (강한 향첨가)	
			캔디류: 고포도당시럽 캔디, 설탕과자	
			설탕과자: 캔디, 속을 채운 초콜릿	
			설탕과자	
			설탕과자: 초콜릿 제외	
			설탕과자: 초콜릿(표면처리) 제외	
			디저트: 젤리류	
			젤리 마멀레이드(E493만)	
			추잉껌	추잉껌
				추잉껌(E553iii만)
				추잉껌: 무설탕
				추잉껌: 설탕 첨가
			빵류	맥아 빵
				믹스 : 건조분말제품(설탕포함)
				믹스: 머핀, 케이크 건조믹스(농축)
				믹스: 설탕함유 밀가루 건조믹스
				베이커리제품
				베이커리제품: 페이스트리 (저칼로리, 무설탕):
				-전분 기반
				-코코아 및 건조과일 기반
				베이커리제품: 페이스트리(포장된)
				빵
				빵(특별종류)
				빵: 밀, 장기보존용 포장된 이스터케이크, 크리스마스케이크용
				빵: 밀, 호밀(슬라이스, 장기보존 포장된)
				빵: 밀, 호밀(슬라이스, 장기보존 포장된)
				빵: 저칼로리(포장된)
				빵: 피타(포장된)
				와플과 쿤: 아이스크림용(크림, 유제품), 무설탕
				제과제빵
		제과류: 버터 베이커리제품		
		지방 함유 곡물 기반 제품 (비스킷 및 크래커 포함)		
			떡류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2. 빙과류	2-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디저트: 우유 기반 (아이스크림 및 유사제품, 필링, 디저트용 글레이즈 및 코팅 포함)
		저지방아이스크림	디저트: 우유 기반 아이스크림 포함
		아이스밀크	아이스크림(우유 및 크림 아이스크림 제외), 과일 아이스
		샤베트	아이스크림(우유 및 크림 아이스크림 제외), 과일 아이스(E492만)
		비유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우유, 크림 제외)
			아이스크림(우유, 크림 제외), 과일 아이스(저칼로리, 무설탕)
			아이스크림, 과일아이스크림, 막대아이스크림
			와플: 우유 기반 와플 아이스크림(E901만)
		우유 기반 아이스크림, 과일 아이스	
	2-2. 아이스크림 믹스류	아이스크림믹스	디저트: 우유 기반 (아이스크림 및 유사제품, 필링, 디저트용 글레이즈 및 코팅 포함)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디저트: 우유 기반 아이스크림 포함
		아이스밀크믹스	아이스크림(우유 및 크림 아이스크림 제외), 과일 아이스
		샤베트믹스	아이스크림(우유 및 크림 아이스크림 제외), 과일 아이스(E492만)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크림(우유, 크림 제외)
			아이스크림(우유, 크림 제외), 과일 아이스(저칼로리, 무설탕)
			아이스크림, 과일아이스크림, 막대아이스크림
			와플: 우유 기반 와플 아이스크림(E901만)
			우유 기반 아이스크림, 과일 아이스
			우유 기반 아이스크림용 파우더
	2-3. 빙과	빙과	
			아이스크림(우유 및 크림 아이스크림 제외), 과일 아이스
			아이스크림(우유 및 크림 아이스크림 제외), 과일 아이스(E492만)
			아이스크림(우유, 크림 제외), 과일 아이스(저칼로리, 무설탕)
2-4. 얼음류	식용얼음 어업용얼음		우유 기반 아이스크림, 과일 아이스
			얼음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3-1. 코코아가공품류	코코아매스	코코아 및 초콜릿제품
		코코아버터	코코아 스위트
		코코아분말 기타 코코아가공품	코코아 스위트, 초콜릿(E492만)
	3-2. 초콜릿류	초콜릿	캔디, 드라제, 초콜릿
		밀크초콜릿	캔디, 드라제, 초콜릿, 초콜릿 아이싱된 밀가루 과자
		화이트초콜릿	코코아 및 초콜릿제품
		준초콜릿	코코아 스위트, 초콜릿(E492만)
		초콜릿가공품	코코아 제품, 초콜릿을 재료로 한 제과 및 기타 제품
			코코아제품, 초콜릿제품, 모조제품과 초콜릿 대체품 포함
			설탕과자: 초콜릿(페이스트리, 케이크 등의 표면 장식 재료)
4. 당류	4-1. 설탕류	설탕	설탕: 가루설탕 설탕: 흰설탕을 포함(입자가 굵은 설탕)
		기타설탕	설탕, 포도당, 과당, 젓당
	4-2. 당시럽류	당시럽류	시럽(장식용 코팅): 밀크쉐이크 및 아이스크림 향첨가용, 팬케이크 시럽
			시럽: 밀크쉐이크, 아이스크림 향첨가용, 팬케이크 시럽
	4-3. 올리고당류	올리고당	
		올리고당가공품	
	4-4. 포도당	포도당	설탕, 포도당, 과당, 젓당
	4-5. 과당류	과당	설탕, 포도당, 과당, 젓당
		기타과당	설탕, 포도당, 과당, 젓당
	4-6. 엿류	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4-7. 당류가공품류	당류가공품류	당류: 기타 당류
당밀			
당밀: 수분제거, 고포도당			
베이커리 제품용 필링, 글레이즈, 마감재			
식탁용 감미료			
육류, 채소용 글레이즈 제품			
장식용 식품: 베이커리 제품용, 코팅용 식품(과일 제외), 스위트소스			
제과제빵, 디저트용 속, 글레이즈, 장식용 토핑			
제과제빵용 속, 글레이즈, 장식용 토핑			
제과제빵용 충전재 및 코팅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5. 잼류		잼	과일젤리(마말레이드)
			잼류: 과일 슬라이스 및 기타 과일 가공품으로 만든 잼, 젤리, 설탕절임 (저칼로리 포함)
			잼류: 아황산 처리한 과일과 베리류로 만든 잼, 젤리, 마말레이드
			잼류: 마말레이드, 젤리, 버터링을 위한 마말레이드 및 유사 과일 기반 제품 (저칼로리 포함)
			잼류: 잼, 마말레이드, 젤리, 저설탕 또는 무설탕 잼
			잼류: 잼, 마말레이드, 젤리, 저설탕과 무설탕 잼 및 유사 제품
			잼류: 잼, 젤리, 마말레이드, 기타 스프레드 제품 (저칼로리 포함)
			잼류: 잼, 프리저브, 마말레이드, 젤리제품, 글레이즈 과일, 과일제품(과일주스 생산용 제외) (저칼로리 또는 무설탕)
			잼류: 잼, 프리저브, 젤리, 마말레이드 (저칼로리)
		기타잼	스프레드: 채소스프레드 스프레드: 채소스프레드(유지방 포함)
6. 두부류 또는 목류		두부	
		유바	
		가공두부	
		목류	
7. 식용유지류	7-1. 식물성유지류	7. 식용유지류의 7-1. 식물성유지류와 7-2. 동물성유지류의 모든 세분류는 카자흐스탄의 식품첨가물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유지")에 모두 해당됨	
		콩기름 (대두유)	유지: 동물성유지, 식물성기름(압착 및 냉압) 유지: 식물성, 동물성
		옥수수기름 (옥배유)	유지: 비유화 식물성, 동물성 유지(압착올리브유 제외)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미강유 (현미유)	
		참기름 추출참깨유	
		들기름 추출들깨유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해바라기유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목화씨기름 (면실유)	
		땅콩기름 (낙화생유)	
		올리브유	올리브오일: 정제
		팜유 팜올레인유 팜스테아린유 팜핵유	
		야자유	
		고추씨기름	
		기타식물성 유지	유지: 특별용도지방, 튀김용 식물성기름
			유지: 돈지, 어류 및 해양 포유류 지방 및 녹인 동물성지방 및 식물성기름(가공식품 제조용); 시리얼, 감자 및 전분 기반 아침식사용 시리얼(스낵) 볶음용 식물성기름 (올리브오일 제외)
			유지: 고온 식품 제조용 동물성기름과 식물성기름 (특별용도지방, 식물성기름(압축올리브오일 제외), 튀김용; 돈지, 소고기 우지, 양고기, 가금육, 돼지고기, 어류와 해양 포유류)
			크림: 휘핑크림 및 식물성기름 기반 대체품
	7-2. 동물성유지류	식용우지 원료우지	
		식용돈지 원료돈지	
		기타동물성 유지	유지: 특별용도지방, 튀김용 식물성기름
			유지: 돈지, 어류 및 해양 포유류 지방 및 녹인 동물성지방 및 식물성기름(가공식품 제조용); 시리얼, 감자 및 전분 기반 아침식사용 시리얼(스낵) 볶음용 식물성기름 (올리브오일 제외)
			유지: 고온 식품 제조용 동물성기름과 식물성기름 (특별용도지방, 식물성기름(압축올리브오일 제외), 튀김용; 돈지, 소고기 우지, 양고기, 가금육, 돼지고기, 어류와 해양 포유류)
	7-3. 식용유지 가공품	혼합식용유	유지: 비유화 식물성, 동물성 유지(압착올리브유 제외)
		향미유	유지: 비유화 식물성, 동물성 유지(압착올리브유 제외)
		가공우지	
		쇼트닝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마가린류	식물성기름 기반 마가린, 스프레드, 크림(지방 함량 60% 이상)
			식물성기름 기반 마가린, 스프레드, 크림(지방 함량 60% 미만)
			스프레드와 마가린
			스프레드와 마가린: 지방함량 41% 이하
		모조치즈	우유 기반 치즈 대체품
		식물성크림	식물성기름 기반 마가린, 스프레드, 크림(지방 함량 60% 이상)
			식물성기름 기반 마가린, 스프레드, 크림(지방 함량 60% 미만)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마가린, 스프레드 및 정제 혼합물, 특별 용도 지방, 유지방 대체품, 코코아버터 대체품, SOS형 코코아 버터 개량제품, POP형 코코아버터 대체품, 비템퍼링 코코아버터 대체품, 로르산타입 코코아버터, 탈수지방
			마가린, 특수 지방, 유지방 대체품, 코코아버터 대체품, SOS형 코코아버터 개량제품, POP형 코코아 버터 대체품, 비템퍼링 코코아버터 대체품, 비템퍼링 로르산 코코아버터 대체품
			식물성기름, 특수 지방, 유지방 대체품, 지방혼합물, 코코아버터 대체품, SOS형 코코아 버터 개량제품, POP형 코코아버터 대체품, 비템퍼링 코코아 버터 대체품, 비템퍼링 로르산 타입 돈지, 어류 및 해양포유류 지방non-LTT 코코아버터 대체품, non-LTT 돈지, 사워, 어류 및 해양 포유류 지방
			식물성기름(올리브오일 제외), 특수 지방, 유지방 대체품, 지방혼합물, 코코아버터 대체품, SOS형 코코아 버터 개량제품, POP형 코코아버터 대체품, 비템퍼링 코코아버터 대체품, 비로르산 및 로르산 타입 코코아버터 대체품 (비열처리 식품 생산용, 총 지방산중 고도불포화지방산 15% 이상 함유)
			지방 에멀션: 베이커리와 밀가루 제과용
			지방 에멀션: 베이커리제품용
			지방 에멀션: 지방 에멀션 제품
			지방 에멀션: 튀김과 조리용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8. 면류		생면	파스타: 생면 파스타	
		숙면	파스타: 숙면 파스타	
		건면	쌀국수 파스타: 건면 파스타	
		유탕면		
9. 음료류	9-1. 다류	침출차	로스팅된 커피, 치커리, 차 및 이의 추출물; 우리거나 혼합을 위한 차, 채소, 과일 2차가공재료 제품 차: 향첨가 차, 허브티 조제용 인스턴트 제품 차, 허브차, 건조 또는 인스턴트	
		액상차	로스팅된 커피, 치커리, 차 및 이의 추출물; 우리거나 혼합을 위한 차, 채소, 과일 2차가공재료 제품 차(액상) 및 허브차 농축액: 차, 과일, 허브	
		고형차	로스팅된 커피, 치커리, 차 및 이의 추출물; 우리거나 혼합을 위한 차, 채소, 과일 2차가공재료 제품 차, 허브차, 건조 또는 인스턴트	
		커피	로스팅된 커피, 치커리, 차 및 이의 추출물; 우리거나 혼합을 위한 차, 채소, 과일 2차가공재료 제품 커피 커피(캔커피) 커피: 원두	
	9-3. 과일·채소류 음료	농축과채즙 과채주스 과채음료	과일 및 채소주스	과일 및 채소주스
			과일 주스 또는 과일 껍데기 기반 기타 농축물	과일 주스 또는 과일 껍데기 기반 기타 농축물
			과일주스	과일주스
			과일주스 농축액, 최소 2.5% 보리 브로스(broth) 포함	과일주스 농축액, 최소 2.5% 보리 브로스(broth) 포함
			넥타	넥타
			넥타, 주스	넥타, 주스
			무알코올음료(특수 음료 포함)	무알코올음료(특수 음료 포함)
			주스	주스
9-4. 탄산음료류	탄산음료 탄산수	무알코올음료(특수 음료 포함)	무알코올음료(특수 음료 포함)	
		물 기반 과일주스, 우유 및 유제품 향첨가	물 기반 과일주스, 우유 및 유제품 향첨가	
		청량음료(무설탕 또는 저칼로리 제품)	청량음료(무설탕 또는 저칼로리 제품)	
		청량음료: 과일주스 향첨가	청량음료: 과일주스 향첨가	
		청량음료: 와인 향첨가	청량음료: 와인 향첨가	
		청량음료: 주스 향첨가	청량음료: 주스 향첨가	
		청량음료: 진한맛 향첨가	청량음료: 진한맛 향첨가	
		청량음료: 코코넛, 아몬드, 아니스 기반	청량음료: 코코넛, 아몬드, 아니스 기반	
청량음료: 포도당시럽 함유(245g/L미만)	청량음료: 포도당시럽 함유(245g/L미만)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청량음료: 향첨가
			청량음료: 향첨가 청량음료
			청량음료: 향첨가(특수 음료 포함)
			청량음료: 향첨가, 사이다
	9-5. 두유류	원액두유 가공두유	
	9-6. 발효음료류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무알코올음료(특수 음료 포함)
			우유 및 유제품 음료(무설탕 또는 저칼로리 제품) 음료: 우유 기반 음료
	9-7. 인삼, 홍삼음료	인삼, 홍삼음료	무알코올음료(특수 음료 포함)
	9-8. 기타음료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농축액: 차, 과일, 허브
			뜨거운 음료 제조용 분말
			무알코올 향첨가 농축 음료(액상, 분말)
			물 기반 주스 향첨가 무알코올음료
			물 기반 향첨가 무알코올 음료(스포츠, 토닝, 에너지, 전해질 등)
			와인기반음료
			음료 및 디저트용 건조믹스(푸마산 함유)
음료 분말믹스(가정용)			
음료: 맥아 및 맥아음료			
음료: 식물성 단백질 기반			
음료: 우유 기반 초콜릿, 보리 음료			
음료: 전해질음료			
음료용 수용성 과일 분말 베이스			
청량음료 분말믹스(가정용)			
커피대체품 및 기타 핫시리얼 음료 (코코아제외)			
10. 특수용도식품	10. 특수용도식품의 모든 중/세분류는 카자흐스탄의 식품첨가물규정 내 식품분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특수용도식품")에 모두 해당됨		특수용도식품
	10-1.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영양강화제: 생후 1년 영아용 모유 대체
	10-2. 영아용 조제식	영아용 조제식	영아용 조제식
영양강화제: 생후 3년 미만 영유아용 특수 식사요법식품			
영양강화제: 생후 5개월 이상 영유아용			
영유아 식사요법식품: 분말			
영유아 식사요법식품: 액상			
영유아 식사요법식품: 액상 혼합물 (영아용 가수분해단백질, 펩티드, 아미노산 함유)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10-3. 성장기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 식사요법식품: 분말
			영유아 식사요법식품: 액상
			영유아 식사요법식품: 액상 혼합물 (영아용 가수분해단백질, 펩티드, 아미노산 함유)
			영양강화제: 생후 5개월 이상 영유아용
	10-4.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영유아용곡류조제식	영아용 조제식
	10-5. 기타영·유아식	기타영·유아식	영양강화제: 생후 5개월 이상 영유아용
	10-6.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환자용식품	식사요법식품: 의료용
			영유아 식사요법식품: 영아용 위식도 역류 감소 식품
			영유아 식사요법식품: 우유 과민증 및 선천적 대사장애 어린이(12개월 이상)용 특수식품
			영유아 식사요법식품: 저단백질 특수 식품
			특수용도식품: 3세 이하 영유아용 의료용도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특수용도식품: 대사장애의 4개월 이상 영유아에 튜브를 통해 공급하는 식품
			특수용도식품: 대사장애의 영아용 식품
특수용도식품: 대사장애의 유아용 위장흡수 단백질-아미노산 및 펩티드 식품			
특수용도식품: 위장장애 치료용 식품			
특수용도식품: 치료 및 예방용(아동용 제외), 체중조절용 혼합 식품			
10-7.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식사요법식품: 다이어트용 믹스 (체중감량 목적 포함)	
		식사요법식품: 어린이용 제외, 체중조절용 식이혼합물	
		식사요법식품: 체중조절용	
		식사요법식품: 체중조절용	
		식사요법식품: 체중조절용 제품 포함	
		식사요법식품: 체중조절용 포함	
		식사요법식품: 치료 및 예방용(아동용 제외), 체중조절용 혼합 식품	
10-8. 임산·수유부용 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11. 장류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12. 조미식품	12-1. 식초	발효식초	발효식초	
		희석초산	식초	
	12-2. 소스류	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식초: 와인식초
				드레싱, 조미료
				레몬주스 콘디멘트
				머스타드
				소스
				소스: 비유화
				소스: 소스 및 샐러드드레싱
				소스: 식물성 기름 기반 소스, 마요네즈 마요네즈
				소스, 식물성 크림, 양념 (건조 및 페이스트), 피클 (채소 피클) 등
				소스: 식물성기름 기반, 마요네즈 소스, 식물성기름 기반 크림
				소스: 식물성기름 기반, 마요네즈, 식물성크림, 머스타드, 고추냉이
				소스: 식물성기름 기반, 마요네즈, 식물성크림, 유화된 제품 포함
				소스: 식물성기름 기반 유화소스, 마요네즈
12-3. 카레(커리)	카레(커리)		소스: 식물성기름 기반 유화소스, 마요네즈, 드레싱, 식물성크림(지방함량 60% 미만의 식물성기름 기반)	
			소스: 식물성기름 기반 유화소스, 마요네즈, 드레싱, 식물성크림(지방함량 60% 이상의 식물성기름 기반)	
			조미료	
			토마토페이스트(건조물질 30% 함유) (주스용 제외)	
			토마토페이스트, 소스, 토마토통조림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12-4.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고춧가루 실고추	
	12-5.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향신료조제품	고추냉이 향신료 향신료와 양념
	12-6. 식염	천일염 재제소금 (재제조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소금 및 소금 대체품
13. 절임류 또는 조림류	13-1. 김치류	김치속 김치	
	13-2. 절임류	절임식품 당절임	과일 및 채소가공품: 당류 절임(당과) 과일과 채소
			과일 및 채소가공품: 당절임, 식초절임
			과일 및 채소가공품: 식초, 소금물, 오일에 절인 (올리브 제외)
과일가공품: 당류 절임(농축) 결정 및 캔디화 과일 과일가공품: 콤포트 밤절임 채소가공품: 당류 절임(농축) 결정 및 캔디화 채소 채소가공품: 식초, 소금물, 오일에 절인 채소 (올리브 제외) 채소가공품: 피클 (올리브 제외)			
13-3. 조림류	조림류		
14. 주류	14. 주류의 모든 중/세분류는 카자 흐스탄의 식품첨가물규정 내 식품분 류 중 우측의 식품유형("알코올음료 ")에 모두 해당됨		알코올음료
		탁주	알코올음료: 알코올 함량 15% 미만, 불투명 알코올음료: 와인, 맥주 제외
		약주	알코올음료: 알코올 함량 15% 미만 알코올음료: 와인, 맥주 제외
		청주	알코올음료: 알코올 함량 15% 미만 알코올음료: 와인, 맥주 제외
		맥주	맥주 맥주: 당류 또는 과일주스 및 농축액(0.5%이상) 첨가 발효(케그) 맥주: 배럴통에서 2차 발효 맥주: 비알코올(케그)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맥주: 저알코올, 무알코올
			맥주: 저칼로리
			무알코올 맥주 또는 알코올 함량 1.2% 미만 맥주; 특수 맥주
		과실주	쓴 소다음료와 쓴 와인 (승인된 조리법에 따라 제조)
			알코올음료: 향첨가 와인 및 알코올음료, 과일 와인, 사이다
			알코올음료: 향첨가 와인, 향첨가 와인 기반 알코올음료(승인된 조리법에 따라 제조)
			와인
			와인(E491만)
			와인, 사이다
			와인: 무알코올
			와인: 일반, 과일, 꿀, 사이다, 무알코올
			와인: 탄산, 사이다 포함 과일와인, 꿀와인
			와인: 포도
			와인: 포도와인류
			와인기반음료
			저알코올 와인
		소주	알코올음료: 와인, 맥주 제외
			증류주: 곡물과 와인 증류주
			증류주: 와인과 맥주 제외
		위스키	알코올음료: 와인, 맥주 제외
			위스키
			증류주: 곡물과 와인 증류주 증류주: 와인과 맥주 제외
		브랜디	브랜디
			알코올음료: 와인, 맥주 제외
			증류주: 곡물과 와인 증류주 증류주: 와인과 맥주 제외
		일반증류주	럼
			보드카
			알코올음료: 배합유(증류) 알코올음료: 와인, 맥주 제외
		리큐르	리큐어
			리큐어: 15% 미만 알코올 함유 리큐어 및 알코올 혼합 음료
			리큐어: 계란 리큐어
			리큐어: 보드카
			리큐어: 에멀션 리큐어
			리큐어: 유화된
			리큐어: 유화된, 15% 미만 알코올 함유 음료 알코올음료: 와인, 맥주 제외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15. 농산가공식품류		기타 주류	사이다: 사과 및 배 사이다
			알코올음료: 와인, 맥주 제외
	음료: 청량음료 혼합물 포함 맥주 및 사이다, 와인, 알코올음료		
	청량음료: 알코올 함유		
	와인기반음료		
		주정	
	15-1. 전분류	전분 전분가공품	전분 전분(영어용 전분 제외) 세몰리나 또는 타피오카 푸딩 및 유사제품
	15-2. 밀가루류	밀가루 영양강화 밀가루	밀가루
	15-3.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땅콩 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견과류(기술적 처리한) 견과류: 코팅된 절인 견과류 조미 및 양념된 견과류
	15-4. 시리얼류	시리얼류	곡물제품: 압출된 아침식사용 건조 곡물 스낵: 시리얼, 감자, 기타 채소 기반(아침식사용 시리얼) 시리얼 시리얼: 건조 시리얼 제품 시리얼: 견과류 기반 건조 아침식사용 시리얼: 견과류로 덮힌 곡물, 감자 기반 아침식사용 시리얼: 곡물 기반 아침식사용 과일 향첨가 시리얼, 압출 및 팽창 과정을 거친 시리얼: 곡물 및 감자 기반 아침식사용 (건조) 시리얼: 곡물 및 감자 기반 아침식사용 시리얼: 곡물, 감자 및 전분 기반 아침식사용 시리얼: 곡물가공품 기반, 아침식사용(저칼로리, 무설탕) 시리얼: 과립형 아침 시리얼 시리얼: 섬유질 함량 15% 이상 시리얼 또는 겨 함유 최소 20% 이상 (저칼로리, 무설탕) 시리얼: 아침식사용 시리얼 및 감자 (건조) 아침식사용 건조 곡물
	15-5. 찌쌀	찌쌀	쌀가공식품, 냉장, 냉동, 건조 포함(포장된)
	15-6. 효소식품	효소식품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15-7. 기타 농산가공품	과채가공품	가공용 반제품(펠프): -딸기,라즈베리
		곡류가공품	-체리 -기타베리류와과일
		두류가공품	젤화 과일추출물, 액상펙틴(판매용)
		서류가공품	곡물, 쌀 포함(통곡물, 분쇄, 플레이크)
		기타	곡물제품: 글루텐 프리 식품
		농산가공품	곡물제품: 압출된
			과일 기반 제품, 과일주스 및 채소주스 제외
			과일 기반 제품, 저설탕
			과일 및 채소: 비가공 (냉동, 즉석섭취, 냉장 포장, 껍질벗긴 포장 감자)
			과일 및 채소가공품, 주스제품 제외
			과일 및 채소가공품: 글레이즈
			과일 및 채소가공품: 보존처리 및 저온살균
			과일 및 채소가공품: 저칼로리
			과일, 채소 및 서류가공품: 채소(올리브 제외), 과일, 버섯 (신선, 건조, 통조림, 매시트포테이토와 페이스트 포함)
			과일가공품: 건조 과일
			과일가공품: 건조 코코넛
			과일가공품: 건조과일
			-살구,복숭아,포도(건포도),자두,무화과
			-바나나
			-사과,배
			-기타,건과류포함
			과일가공품: 과일 토폭
			과일가공품: 글레이즈 과일
			과일가공품: 재수화된 건조 과일, 저온살균된
			과일가공품: 2차가공재료
			디저트: 과일 기반 디저트 (E341iii만)
			레몬(슬라이스, 저온살균된)
		밀가루 과자용 과일 및 베리 충전재	
		배터(튀김반죽)	
		배터: 브레딩 포함, 가금육과 해산물용	
		버섯류: 건조 버섯	
		서류가공품: 감자 가공품(냉장, 냉동, 건조, 반조리 포함)	
		서류가공품: 감자(냉동, 냉장, 건조 포함)	
		서류가공품: 감자(냉동포함), 매시트포테이토(건조)	
		서류가공품: 감자, 껍질 벗긴(갈변방지 처리)	
		서류가공품: 건조 감자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서육가공품: 과립형 건조 감자
			서육가공품: 매시트포테이토, 로스팅용 슬라이스 감자
			스위트콘(진공포장)
			올리브 및 올리브 가공품
			올리브(산화에 의해 검게됨)
			잼류: 잼, 프리저브, 마멀레이드, 젤리제품, 글레이즈 과일, 과일제품(과일주스 생산용 제외) (저칼로리 또는 무설탕)
			채소가공품: 건조 무
			채소가공품: 건조 생강
			채소가공품: 건조 양배추
			채소가공품: 양파, 샬롯, 강판 마늘(펠프)
			채소가공품: 조리된 비트
			토마토: 건조
			토마토제품(주스용 제외)
			16. 식육가공품
16-1. 햄류	햄 생햄 프레스햄	식육가공품: 분쇄육, 햄, 보존 및 통조림 식육가공품: 열처리 육류	
16-2. 소시지류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식육가공품: 삶은소시지, 기타 삶은 식육가공품	
		소시지(표면처리, 553iii만)	
		소시지, 식육가공품(염장, 삶은, 훈연); 육류 통조림	
		소시지: 채소, 곡물 함량 4% 이상의 육류 소시지	
		식육가공품: 건조 소시지	
		식육가공품: 곡물 함량 4% 이상의 다진고기 소시지	
		식육가공품: 곡물, 콩 함량 6% 이상의 소시지	
		식육가공품: 소시지, 비엔나소시지, 삶은 소시지, 소시지 파이	
		식육가공품: 스트라스부르 소시지	
		식육가공품: 열처리 육류	
		식육가공품: 표면처리 소시지, 소시지육 및 케이싱(필름 및 코팅)	
		식육가공품: 표면처리 소시지육, 훈연 및 반훈연 소시지	
		식육가공품: 훈연 소시지와 육류(염장, 훈연, 건조)	
식육가공품: 훈제 돼지고기, 건조 소시지 (후추 포함) ("초리조", "살치촌")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16-3. 베이컨류	베이컨류	식육가공품: 열처리 육류
			식육가공품: 훈제 돼지고기, 건조 소시지 (후추 포함) ("초리조", "살치촌")
	16-4. 건조 저장육류	건조저장육류	식육가공품: 건조(표면처리)
			식육가공품: 건조육류
			식육가공품: 신선, 분쇄 육류 및 가금육(도축, 수렵 육 및 가금육, 비열처리 통조림(염장 포함) 및 건조
			식육가공품(슬라이스, 다진)
	16-5. 양념육류	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천연케이싱	식육가공품: 열처리 육류
			식육가공품: 냉동, 수렵육(전체, 슬라이스 또는 다진)
			식육가공품: 다지거나 간(포장된)
			식육가공품: 신선, 분쇄 육류 및 가금육(도축, 수렵 육 및 가금육, 비열처리 통조림(염장 포함) 및 건조
식육가공품(슬라이스, 다진)			
16-6. 식육 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16-7. 식육 함유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식육가공품: (조리, 염장, 건조된) 젤리로 덮힌 육류, 파테	
16-8. 포장육	포장육		
17. 알 가공품류	17-1. 알가공품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계란가공품
			계란가공품: 건조 난백
			계란가공품: 건조, 농축, 냉동
			계란가공품: 계란, 계란제품(기술규정 11에 명시된 염료로 염색한 부활절 계란용)
			계란가공품: 난백
			계란가공품: 액상전란(멜란지, 단백질, 난황)
			계란가공품: 액상전란(흰자, 난황, 전체)
			계란가공품: 저온살균 액상전란(흰자, 난황, 전체)
	17-2. 알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계란가공품
18. 유가공품	18-1. 우유류	우유 환원유	우유, 크림통조림, 농축, 응축, 향무첨가
			우유: 살균우유
	18-2. 가공유류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우유, 크림 대체품
			저온살균 또는 살균우유, 향무첨가 초콜릿우유
			우유 음료
18-3. 산양유	산양유	초고온처리 산양유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18-4. 발효유류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발효유, 플레인 버터밀크
			발효유제품: 플레인 외, 스타터생균미생물 포함/
	18-5. 버터유	버터유	
	18-6. 농축유류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농축우유, 건조물질 함량 28% 미만
			농축우유, 건조물질 함량 28% 이상
			우유, 크림통조림, 농축, 응축, 향무첨가
	18-7. 유크림류	유크림 가공유크림	우유, 크림 대체품
			우유, 크림통조림, 농축, 응축, 향무첨가
			음료 화이트너
			크림 대체품
			크림: 농축크림
			크림: 살균크림
			크림: 생효모를 포함한 플레인 발효크림 또는 지방 함량 20% 미만의 대체품
	18-8. 버터류	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크림: 저온살균크림
			크림: 휘핑크림 및 식물성기름 기반 대체품
			버터, 저지방버터, 기(버터)
	18-9. 치즈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사워크림버터
			사워버터
숙성 치즈 껍질			
숙성, 비숙성 플레인 치즈			
치즈			
치즈 대체품: 단백질 기반			
치즈 및 치즈 대체품(경질, 반경질, 가공), 슬라이스 및 제스터			
치즈 및 치즈 대체품(표면처리)			
치즈: 가공치즈			
치즈: 가공치즈 및 대체품			
치즈: 경질, 반경질, 연질치즈			
치즈: 녹은 치즈			
치즈: 비숙성(모짜렐라 제외)			
치즈: 숙성 및 가공			
치즈: 숙성치즈(슬라이스, 제스터)			
치즈: 승인된 조리법에 따라 제조된 치즈류			
치즈: 신선 필러 치즈; 슬라이스치즈(포장)			
치즈: 유청치즈			
치즈: 코티지치즈			
치즈: 코팅된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19. 수산 가공식품류	18-10. 분유류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치즈: 크림치즈("마스카포네")	
			치즈: 향첨가	
			치즈: 향첨가 가공치즈	
	18-11. 유청류	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분유	
			분유, 탈지우유	
	18-12. 유당	유청(건조, 액상)과 그 제품(유청치즈 제외)		
	18-13. 유단백 가수분해식품	유청단백질: 스포츠음료용		
	19-1. 어육가공품류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어육소시지 기타 어육가공품	수산가공품: 게제품(게맛살)	
			수산가공품: 생선 및 새우 페이스트	
			어류: 연육	
			어류: 연육(냉동)	
			어류: 필릿, 신선, 냉동	
			19-2. 젓갈류	수산가공품: 당절임, 식초절임으로 보존된 어류, 생선 마리네이드, 갑각류, 연체류
수산가공품: 건조, 염장				
청어, 염장 청어와 마리네이드				
19-3. 건포류			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 건포류	수산가공품: 건조, 염장
19-4. 조미김			조미김	해조류 제품
19-5. 한천	한천			
19-6.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 수산물 가공품	갑각류 및 연체류: 조리된		
		갑각류, 두족류: -신선, 냉동 보리새우, 대롱수염새우 -삶은 보리새우, 대롱수염새우		
		갑각류: 반조리		
		갑각류: 삶은		
		수산가공품: 냉동(글레이즈용액용)		
		수산가공품: 보존 처리(캐비어 포함)		
		수산가공품: 통조림 및 저온살균		
		수산가공품: 훈제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20. 동물성 가공식품류			수산가공품:생선 및 캐비어 프리저브 (통조림), 생선 및 붉은살 생선(염장 및 건조, 냉동)
			어란류: 어란
			패류(조개): 삶은
20. 동물성 가공식품류	20-1.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기타동물성가공 식품	
	20-2. 곤충가공식품	곤충가공식품	
	20-3. 자라가공식품	자라분말 자라분말제품 자라유제품	
	20-4. 추출가공식품	추출가공식품	젤라틴 젤라틴: 식육가공품(삶은, 염장, 건조)을 덮는 젤리, 페이스트 젤라틴: 아스픽용 젤라틴: 제과용, 미니팩의 젤리 제외
21. 벌꿀 및 화분가공품	21-1. 벌꿀류	벌집꿀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	꿀
	21-2. 로얄젤리류	로얄젤리 로얄젤리제품	
	21-2. 화분식품	가공화분 화분함유제품	
22. 즉석식품류	22-1. 생식류	생식제품 생식함유제품	생식제품
	22-2. 즉석섭취·편의 식품류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즉석조리식품	샐러드: 즉석조리식품
			수프
			수프: 저칼로리
			수프와 브로스(broth)
			수프와 브로스(broth)(농축)
			수프와 브로스(broth), 액상(통조림 제외)
			수프와 브로스(broth), 통조림
스낵: 전분과 견과류 기반 양념된 즉석섭취 건조식품 곡물 (즉석조리)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23. 기타식품류			즉석섭취 동양식 면(포장된)
			즉석섭취 쌀(포장된)
			진공포장(밀봉): -향첨가 차, 향첨가 분말 인스턴트 음료(즉석섭취 또는 제조사 지침에 따라 재구성) -향첨가 스낵, 아침식사용 시리얼(즉석섭취 또는 제조사 지침에 따라 재구성)
			파스타-어류, 갑각류로 조리된
			차: 향첨가 차, 허브티 조제용 인스턴트 제품
	22-3. 만두류	만두 만두피	라비올리 속, 만두
	23-1. 효모식품	효모식품	이스트(제빵)
	23-2.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가수분해단백질, 펩티드 및 아미노산 함유 식품
			디저트: 건조 믹스 분말
			디저트: 향첨가 건조 디저트
디저트: 향첨가 유제품 포함			
보충식품			
식물성 단백질			
식사요법식품			
에멀션 스프레이(물 기반)			
육류 및 어류 모조품(식물성 단백질 기반)			
음용수: 병 제품			
장식용 식품: 장식용 제품과 조개류			
장식용 식품: 코팅용 식품			
장식용 식품: 코팅용 식품(과일 제외)			
장식용 휘핑 디저트 코팅, 우유와 크림 제외			
코팅제품: 식용치즈와 소시지용			
표면처리 코팅 및 필름(소시지, 치즈 및 케이싱용)			
팬케이크용 베이킹파우더			
디저트			
디저트 및 유사제품: 물 기반 향첨가 우유 및 유제품, 과일 및 채소, 곡물, 계란, 지방 기반 제품 - 저칼로리 및 무설탕			
디저트: 물 기반 향첨가 디저트, 곡물, 과일, 채소, 유제품, 계란과 지방 첨가(무설탕 또는 저칼로리)			
디저트: 우유 기반 디저트, 열처리 되지 않은			
디저트: 유제품 기반(크림) 포함			
디저트: 젤리, 과일 향첨가, 건조 분말, 디저트 믹스			
디저트: 푸딩			
과일가공품: 저온살균된 통조림(저칼로리, 무설탕)			
24. 그외분류	장기보존식품	병통조림식품	과일가공품: 통조림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식품첨가물규정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식품유형(한국어)
			과일가공품: 통조림 과일 및 베리
			과일, 채소 및 서류가공품: 채소(올리브 제외), 과일, 버섯 (신선, 건조, 통조림, 매시트포테이토와 페이스트 포함)
			소시지, 식육가공품(염장, 삶은, 훈연); 육류 통조림
			수산가공품: 통조림 및 저온살균
			수산가공품:생선 및 캐비어 프리저브 (통조림), 생선 및 붉은살 생선(염장 및 건조, 냉동)
			수프와 브로스(broth), 통조림
			토마토페이스트, 소스, 토마토통조림
			통조림 또는 저온살균된 콩, 채소, 버섯, 아티초크
			통조림: 다진 육류
			통조림: 소스를 포함한 과일, 채소 저온살균
			통조림(매시트포테이토, 무스, 콤포트, 샐러드, 주스제품 및 유사제품 제외)
			통조림: 완두콩, 매시트포테이토(가공)
			통조림: 육류
			통조림: 패류(조개)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식품원료	식물성 원료	
		동물성 원료	
	그외 분류	그외 분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들은 그 외의 분류로 구분하였으며, aT KATI에도 올라가 있음

*식품첨가물규정 내 식품유형 중 원물과 식품첨가물 제외

[표 2-8] 한국 식품공전 분류에 따른 카자흐스탄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 식품유형 분류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마카로니(파스타), 바란카(둥근빵), 수하리(러스크), 솔롬카(막대과자) 등
			동양 과자
			제과류 및 당과류
			제과류
		캔디류	케이터링 업체 제조 제과류
			당과 및 페이스트리
			제과류 및 당과류
			설탕 및 당과류
		추잉껌	당과류
			추잉껌 추잉껌 (견과류 포함)
		빵류	마카로니(파스타), 바란카(둥근빵), 수하리(러스크), 솔롬카(막대과자) 등
			빵, 제과류 및 페이스트리
			베이커리 제품
당과 및 페이스트리			
떡류	페이스트리		
2. 빙과류	2-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우유 및 유제품 기반 아이스크림 (모든 종류)
		저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 크림	
	2-2. 아이스크림 믹스류	아이스크림믹스 저지방아이스크 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 크림믹스	
		2-3. 빙과	빙과
	2-4. 얼음류	식용얼음 어업용얼음	
3. 코코아가공품 류 또는 초콜릿류	3-1. 코코아 가공품류	코코아매스	코코아빈(콩) 및 코코아제품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 코코아가공품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3-2. 초콜릿류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초콜릿 및 초콜릿제품
4. 당류	4-1. 설탕류	설탕	설탕 설탕 및 당과류
		기타설탕	
	4-2. 당시럽류	당시럽류	
	4-3. 올리고당류	올리고당	
	4-4. 포도당	포도당	
	4-5. 과당류	과당	
		기타과당	
	4-6. 엿류	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4-7. 당류가공품류	당류가공품류	전분, 당밀 및 기타 가공품 전분, 당밀 및 기타 가공품 (감자) 전분, 당밀 및 기타 가공품 (옥수수)	
5. 잼류	기타잼	잼	과일 및 베리류, 당절임 (잼, 프리저브 등) 버터, 우유 및 유지방으로 만든 버터페이스트 버터, 우유 및 유지방으로 만든 버터페이스트 (저장용) 버터, 우유 및 유지방으로 만든 버터페이스트 (저장용), 식물성 버터스프레드, 식물성 버터(가: ghee) (저장용) 버터, 우유 및 유지방으로 만든 버터페이스트 (코코아제품 함유) 버터, 우유 및 유지방으로 만든 버터페이스트, 식물성 버터스프레드, 식물성 버터(ghee) (코코아제품 함유) 우유 및 유지방으로 만든 버터페이스트
		곡물, 콩류, 기타 작물 씨앗 단백질 제품, 음료. 발효, 두부 및 비지 포함 곡물, 콩류, 기타 작물 씨앗 단백질 제품, 음료. 발효, 두부 및 비지 포함 (건조 물질 기준) 곡물, 콩류, 기타 작물 씨앗 단백질 제품. 발효, 두부 및 비지 포함 두부, 비지, 농축 음료, 응축 및 건조	
6. 두부류 또는 묵류	두부	유바	건조 두부 및 비지 (건조 기준) 곡물 및 콩류 씨앗 추출 음료, 농축, 응축, 건조,
		가공두부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건조 두부 및 비지 곡물 및 콩류 음료, 농축, 응축, 건조, 건조 두부 및 비지 (건조 물질 기준) 곡물, 콩류, 기타 작물 씨앗 단백질 제품, 음료. 발효, 두부 및 비지 포함 곡물, 콩류, 기타 작물 씨앗 단백질 제품, 음료. 발효, 두부 및 비지 포함 (건조 물질 기준) 곡물, 콩류, 기타 작물 씨앗 단백질 제품. 발효, 두부 및 비지 포함 농축 음료, 응축 및 건조, 건조 두부 및 비지 (건조 물질 기준) 두부, 비지, 농축 음료, 응축 및 건조
		목록	
	7. 식용유지류의 모든 중/세분류는 카자흐스탄 유해물질(식품안전 위생요건) 규정 내 우측의 식품유형("가공 식물성 기름 및 동물성 지방. 정제 탈취 어유(지방) 포함")에 모두 해당됨		가공 식물성 기름 및 동물성 지방. 정제 탈취 어유(지방) 포함 식물성 기름 (모든 종류), 식물성 기름 분획물, 식물성 기름 및 동물성 지방 가공품. 정제 탈취 어유(지방) 포함 식물성 기름 (모든 종류), 식물성 기름 분획물, 식물성 버터 스프레드, 녹인 식물성 버터 혼합물, 동물성 지방, 돈지제품
7. 식용유지류	7-1. 식물성유지류	7-1. 식물성유지류의 모든 세분류는 카자흐스탄 유해물질(식품안전 위생요건) 규정 내 우측의 식품유형("식물성 기름 (모든 종류) 및 분획물")에 해당됨	식물성 기름 (모든 종류) 및 분획물
		콩기름(대두유)	
		옥수수기름 (옥배유)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미강유(현미유)	
		참기름	
		추출참깨유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들기름		
		추출들깨유		
		홍화유(사플라워 유 또는 잇꽃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 (면실유)		
		땅콩기름 (낙화생유)		
		올리브유		
		팜유 팜올레인유 팜스테아린유 팜핵유 야자유		
		고추씨기름		
		기타식물성유지	식물성 기름 (모든 종류) 및 분획물, 정제 혼합유 식물성 기름 (모든 종류) 및 비정제 분획물, 비정제 기름 혼합물, 비정제 기름 및 정제 혼합물	
	7-2. 동물성유지류	식용우지 원료우지	우지, 녹인 지방 포함	
		식용돈지 원료돈지	돈지, 녹인 것 포함 동물성 생지방, 돈지제품 동물성 지방, 돈지 및 가공품 동물성 지방, 돈지 및 가공품, 정제 동물성 지방 동물성 지방, 돈지제품 식물성 크림 스프레드, 녹인 식물성 크림 혼합물, 동물성 지방, 돈지제품	
		기타동물성유지	가금육 지방, 혼합 지방, 녹인 지방과 생선오일 포함 동물지방추출물 (저장용) 생선 및 해양포유류 식용 지방 및 식이 (치료, 예방) 식품용 어류 생선 지방 포함 제품, 생선 및 해양포유류 식용 지방 및 식이 (치료, 예방) 식품용 어류 어류 및 해양포유류 식용 지방, 식이(치료 및 예방) 식품	
		7-3. 식용유지 가공품	혼합식용유	
			향미유	
			가공유지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쇼트닝	
		마가린류	녹인 마가린, 스프레드 및 혼합물 (코코아 함유 제품 제외) 마가린 마가린, 식물성 지방 스프레드, 녹인 식물성 지방 혼합물 (코코아 함유 제품 제외)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식물성 크림 스프레드 및 녹인 식물성 크림 혼합물 (코코아 함유 제품 제외), 식물성 크림 스프레드 및 녹인 식물성 크림 혼합물, 코코아제품 함유 식물성 크림 스프레드, 녹인 식물성 크림 혼합물 (지방) 식물성 크림 스프레드, 녹인 식물성 크림 혼합물, 동물성 지방, 돈지제품 식물성 크림, 식물성 지방 스프레드, 녹인 식물성 크림 및 지방 혼합물 (코코아제품 함유) 식물성 스프레드, 기(ghee) 식물성 스프레드, 기(ghee) (저장용) 식물성 스프레드, 기(ghee) (코코아제품 함유) 식물성 스프레드, 기(ghee) (탈수지방 제품용)
		기타 식용유지 가공품	버터, 우유 및 유지방으로 만든 버터페이스트 (저장용), 식물성 버터스프레드, 식물성 버터(기: ghee) (저장용) 유지방 대체품 유지방 대체품, 코코아버터 대체품, SOS타입 코코아버터 개량제, POP타입 코코아버터 대체품, 비템퍼링 비로르산 코코아버터 대체품, 비템퍼링 로르산 코코아버터 대체품, 식물성 버터 및 식물성 지방 스프레드, 녹인 식물성 버터 혼합물 및 식물성 지방, 동물성 지방, 돈지제품, 녹인 동물성 지방 코코아버터 대체품, SOS타입 코코아버터 개량제, POP타입 코코아버터 대체품, 비템퍼링 비로르산 코코아버터 대체품, 비템퍼링 로르산 코코아버터 대체품, 식물성 버터 및 식물성 지방 스프레드, 녹인 식물성 버터 및 식물성 지방 혼합물, 식물성 기름 소스, 마요네즈, 마요네즈 소스, 식물성 크림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p>코코아버터 대체품, SOS타입 코코아버터 개량품, POP타입 코코아버터 대체품, 비템퍼링 비로르산 코코아버터 대체품, 비템퍼링 로르산 코코아버터 대체품, 식물성 버터 및 식물성 지방 스프레드, 녹인 식물성 버터 및 식물성 지방 혼합물, 식물성 기름 소스, 마요네즈, 마요네즈 소스, 식물성 크림</p> <p>코코아버터 대체품, SOS타입 코코아버터 개량품, POP타입 코코아버터 대체품, 비템퍼링 비로르산 코코아버터 대체품, 비템퍼링 로르산 코코아버터 대체품, 식물성 지방 혼합물 스프레드 및 녹인 것, 식물성 기름 소스, 마요네즈, 마요네즈 소스, 식물성 크림</p> <p>코코아버터 대체품, SOS타입 코코아버터 개량품, POP타입 코코아버터 대체품, 비템퍼링 비로르산 코코아버터 대체품, 비템퍼링 로르산 코코아버터 대체품, 식물성 지방 혼합물 스프레드 및 녹인 것, 식물성 기름 소스, 마요네즈, 마요네즈 소스, 식물성 크림, 유지종실</p> <p>코코아버터 대체품, SOS타입 코코아버터 개량품, POP타입 코코아버터 대체품, 비템퍼링 비로르산 코코아버터 대체품, 비템퍼링 로르산 코코아버터 대체품, 식물성 지방 혼합물 스프레드 및 녹인 것, 식물성 크림, 마요네즈, 마요네즈 소스, (식물성 기름) 크림, 유지종실, 식물성 기름 소스</p> <p>특별용도 지방, 요리용, 제과용, 베이커리용 포함</p>
8. 면류		생면	마카로니(파스타), 바란카(둥근빵), 수하리(러스크), 솔룸카(막대과자) 등
		숙면	
		건면	마카로니(파스타), 바란카(둥근빵), 수하리(러스크), 솔룸카(막대과자) 등
		유탕면	
9. 음료류	9-1. 다류	침출차	견과류, 차, 커피
			차
			차 (홍차, 녹차, 용해성) 차, 커피 (콩, 분쇄 및 인스턴트)
		액상차	견과류, 차, 커피
			차
			차 (홍차, 녹차, 용해성) 차, 커피 (콩, 분쇄 및 인스턴트)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고형차	견과류, 차, 커피
			차
			차, 커피 (콩, 분쇄 및 인스턴트)
	9-2. 커피	커피	커피
			커피 (홀빈, 분쇄, 인스턴트)
			견과류, 차, 커피
	9-3. 과일채소류음료	농축과채주스 과채주스 과채음료	차, 커피 (콩, 분쇄 및 인스턴트)
			채소, 멜론, 버섯, 견과류제품, 채소 및 멜론주스
			수박주스
			멜론주스
			흰양배추주스
			당근주스
			채소주스
			채소 및 멜론주스
			기타 채소주스
			비트주스
			토마토주스
			과일 및 채소주스
	주스음료: 사과, 토마토, 산자나무, 산분꽃나무속		
	9-4. 탄산음료류	탄산음료 탄산수	
9-5. 두유류	원액두유	곡물 및 콩류 씨앗 추출 음료, 농축, 응축, 건조, 건조 두부 및 비지	
		곡물 및 콩류 음료, 농축, 응축, 건조, 건조 두부 및 비지 (건조 물질 기준)	
	가공두유	곡물, 콩류, 기타 작물 씨앗 단백질 제품, 음료. 발효 포함	
		곡물, 콩류, 기타 작물 씨앗 단백질 제품, 음료. 발효, 두부 및 비지 포함	
		곡물, 콩류, 기타 작물 씨앗 단백질 제품, 음료. 발효, 두부 및 비지 포함 (건조 물질 기준)	
		농축 음료, 응축 및 건조, 건조 두부 및 비지 (건조 물질 기준)	
		두부, 비지, 농축 음료, 응축 및 건조	
9-6. 발효음료류	유산균음료	무알코올 음료, 주스 및 인공 미네랄 함유 발효음료, 맥주, 와인, 보드카, 저알코올 및 기타	
	효모음료	알코올 음료 포함	
	기타발효음료	무알코올 음료, 주스 및 인공 미네랄 함유 발효음료	
9-7. 인삼, 홍삼음료	인삼, 홍삼음료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9-8. 기타음료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인공 미네랄 음료 카페인 함유 음료 카페인 함유 특수 음료 밀 단백질 제품, 음료. 밀 발효 포함 밀, 보리, 옥수수 단백질 제품, 음료. 발효 포함 보리 농축, 응축, 건조 음료 보리 단백질 제품, 음료. 발효 포함 퀴닌 함유 음료 퀴닌 함유 특수 음료
	카자흐스탄의 식품안전 위생요건 규정 내 영아용 식품 분류는 본 매칭일람표 하단에 별도의 매칭을 제공함.		
	10-1.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10-2. 영아용 조제식	영아용 조제식	다이어트 및 영유아 조제식용 기울(겨) (대두단백질 제품용)
	10-3. 성장기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다이어트 및 영유아 조제식용 기울(겨) (대두단백질 제품용)
	10-4.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영·유아용곡류조제식	다이어트 및 영유아 조제식용 기울(겨) (대두단백질 제품용)
	10-5. 기타영·유아식	기타영·유아식	
10. 특수용도식품	10-6.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환자용식품 선천성 대사질환 자용 식품 유단백알레르기 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10-7.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다이어트 및 영유아 조제식용 기울(겨) (대두단백질 제품용)
	10-8. 임신·수유부용 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	임산부 및 수유부용 식품: 과일 기반 제품 임산부 및 수유부용 식품: 과일 및 채소 기반 제품 (과일, 채소주스, 넥타 및 음료, 과일 음료) 임산부 및 수유부용 식품: 과일 및 채소 기반 제품 (과일, 채소주스, 넥타 및 음료, 과일 음료), 사과, 토마토, 산자, 산분꽃나무속 함유 임산부 및 수유부용 식품: 대두 기반 제품 (즉석섭취); 우유-곡물 기반 시리얼 (즉석섭취)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임산부 및 수유부용 식품: 우유 및 분리대두단백 제품 (즉석섭취)
			임산부 및 수유부용 식품: 우유 및 분리대두단백 제품 (즉석섭취); 우유-곡물 기반 시리얼 (즉석섭취), 허브차 (식물성)
			임산부 및 수유부용 식품: 우유-곡물 기반 포리지(porridge) (즉석조리)
			임산부 및 수유부용 식품: 우유-곡물 기반 포리지(porridge) (즉석조리), 밀, 보리
			임산부 및 수유부용 식품: 우유-곡물 기반 포리지(porridge) (즉석조리), 옥수수, 밀, 보리
			임산부 및 수유부용 식품: 유제품 (즉석섭취);우유-곡물 기반 시리얼 (즉석섭취)
			임산부 및 수유부용 식품: 주스
			임산부 및 수유부용 식품: 채소, 과일 및 과일 기반 제품
			임산부 및 수유부용 식품: 허브차 (식물성)
11. 장류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		
12. 조미식품	12-1. 식초	발효식초 희석초산	
	12-2. 소스류	소스	마요네즈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식물성기름 기반 소스, 마요네즈, 크림
	12-3. 카레(커리)	카레(커리)분 카레(커리)	
12-4.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고춧가루 실고추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12-5.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향신료조제품	향신료 및 허브	
	12-6. 식염	천일염	소금, 요오드 처리된 (허용 수준 결정 시, 0.04 ± 0.015 mg/g)	
		재제소금 (재제조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식탁소금, 치료 및 예방용 소금 최상급 식탁소금, 치료 및 예방용 소금	
13. 절임류 또는 조림류	13-1. 김치류	김치속 김치		
	13-2. 절임류	절임식품 당절임	과일 및 베리류, 당절임 (잼, 프리저브 등)	
	13-3. 조림류	조림류		
14. 주류		탁주		
		약주		
		청주		
		맥주	맥주	맥주 맥주, 와인, 보드카, 저알코올 및 기타 알코올 음료
			과실주	맥주, 와인, 보드카, 저알코올 및 기타 알코올 음료
		소주	소주	보드카, 식용 에틸 알코올, 반가공 알코올 포함 맥주, 와인, 보드카, 저알코올 및 기타 알코올 음료
			위스키 브랜디	보드카, 식용 에틸 알코올, 반가공 알코올 포함 코냑, 코냑 증류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보드카, 식용 에틸 알코올, 반가공 알코올 포함
		기타 주류	무알코올 음료, 주스 및 인공 미네랄 함유 발효음료, 맥주, 와인, 보드카, 저알코올 및 기타 알코올 음료 포함	
		주정		
15. 농산가공식품류	15-1. 전분류	전분	전분, 당밀 및 기타 가공품	
		전분가공품	전분, 당밀 및 기타 가공품 (감자) 전분, 당밀 및 기타 가공품 (옥수수)	
	15-2. 밀가루류	밀가루	빵제품용 밀가루 (베이킹테스트 36시간 후)	
		영양강화 밀가루	시리얼, 귀리, 밀가루 (밀, 호밀) 시리얼, 귀리, 밀가루, 기울 식품	
			식용곡물로 가공한 곡물, 귀리, 플레이크, 밀가루, 기울(겨) (밀, 호밀)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곡물, 귀리, 플레이크, 밀가루, 식용 기울 밀 가공품 밀 식품 및 밀가루
	15-3.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땅콩 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채소, 멜론, 버섯, 견과류제품, 채소 및 멜론주스 채소, 감자, 멜론, 견과류, 버섯 및 가공품, 통조림 포함 견과류 견과류, 차, 커피
	15-4. 시리얼류	시리얼류	시리얼, 귀리, 밀가루 (밀, 호밀) 시리얼, 귀리, 밀가루, 기울 식품 밀 종자, 플레이크 및 이를 이용한 식사 밀, 보리, 옥수수, 곡물 종자, 배아, 플레이크 및 이를 이용한 식사 보리 종자, 플레이크 및 이를 이용한 식사
	15-5. 찌낱	찌낱	
	15-6. 효소식품	효소식품	
	15-7. 기타 농산가공품	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육류 가공품, 가금육 가공품, 육류 통조림, 육류 및 육류, 가금육, 채소 통조림 육류 및 채소 통조림, 가금육 및 채소 통조림 곡물 가공품 곡물 가공품 (밀, 보리, 옥수수) 곡물 가공품 (밀, 보리, 호밀, 귀리, 쌀) 곡물 가공품 (콩류, 빵 및 베이커리 제품 제외) 곡물 가공품 -밀 및 가공품 곡물 가공품 -보리 및 가공품 곡물 및 곡물가공품 곡물 및 콩류 가공품 곡물 및 콩류 가공품 (기울(겨), 빵 및 베이커리 제품 제외) 곡물, 귀리, 플레이크, 밀가루, 식용 기울 곡물, 종자 및 콩류 가공품 (빵 및 베이커리 제품 제외) 곡물, 종자 및 콩류 및 가공품 곡물, 종자 및 콩류 및 가공품 (기울(겨), 빵 및 베이커리 제품 제외) 기울(겨)제품 (밀, 보리, 옥수수) 식용곡물로 가공한 곡물, 귀리, 플레이크, 밀가루, 기울(겨) (밀, 호밀) 양조 맥아 콩류 및 가공품 수박 및 가공품 버섯 및 가공품 버섯, 견과류 및 가공품 멜론 및 가공품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흰양배추(후기) 및 가공품
			흰양배추(초기, 9월 1일 전 수확) 및 가공품
			감자 및 가공품
			감자, 완두콩, 사탕무 및 가공품
			통조림 채소, 과일, 베리류 (주석캔 포장), 과일 및 채소 주스용 제외
			통조림 채소, 과일, 베리류 (TFS(tin free steel) 포장), 과일 및 채소 주스용 포함
			통조림 채소, 과일, 베리류, 버섯 (주석캔 포장), 과일 및 채소 주스용 제외
			잎채소 (샐러드, 시금치, 수영(여귀), 양배추, 파슬리, 셀러리, 고수, 딜 등) 및 잎채소제품
			양파, 양파 싹 및 가공품, 보호농지 재배
			양파, 양파 싹 및 가공품
			양파 및 가공품
			당근(후기) 및 가공품
			당근(초기, 9월 1일 전 수확) 및 가공품
			채소, 멜론, 버섯, 견과류제품, 채소 및 멜론주스
			채소, 감자, 멜론, 견과류, 버섯 및 가공품, 통조림 포함
			채소, 감자, 멜론, 과일, 베리류 및 가공품
			채소, 감자, 멜론, 과일, 베리류, 버섯 및 가공품
			오이 및 가공품, 보호농지 재배
			오이 및 가공품
			파프리카, 애호박 및 가공품, 보호농지 재배
			피망 및 가공품
			비트 및 가공품
			토마토 및 가공품, 보호농지재배
			토마토 및 가공품
			과일, 베리류 및 가공품
			과일, 베리류, 포도 및 가공품
			사과, 토마토, 산자나무, 산분꽃나무속 및 가공품
			곡물, 콩류 및 기타 작물 종자, 배아 제품
			곡물, 콩류 및 기타 작물 종자, 배아, 플레이크 및 이를 이용한 식사
			곡물, 콩류 및 기타 작물 종자, 배아, 플레이크 및 이를 이용한 식사 (지방 기준)
			곡물, 콩류, 기타 작물 씨앗 단백질 제품
			곡물, 콩류, 기타 작물 씨앗 단백질 제품, 음료.
			발효 포함
			곡물, 콩류, 기타 작물 씨앗 단백질 제품, 음료.
			발효, 두부 및 비지 포함
			곡물, 콩류, 기타 작물 씨앗 단백질 제품, 음료.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발효, 두부 및 비지 포함 (건조 물질 기준) 곡물, 콩류, 기타 작물 씨앗 단백질 제품. 발효, 두부 및 비지 포함 식품, 보리 식품 콩류, 유지종자 및 기타 작물 씨앗 식품 및 가루 콩류, 유지종자 및 비전통 작물 씨앗 식품 및 가루
16. 식육가공품	16. 식육가공품의 모든 중/세분류는 카자흐스탄 유해물질(식품안전 위생요건) 규정 내 우측의 식품유형("육류, 가금육 가공품", "육류 및 육류함유제품")에 모두 해당됨		육류, 가금육 가공품 육류 및 육류함유제품 식육 가공품, 가금육 포함 (야생동물 및 조류 제외) 가금육 포함 육류 및 육류 함유 가공품
	16-1. 햄류	햄 생햄 프레스햄	
	16-2. 소시지류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16-3. 베이컨류	베이컨류	훈제 베이컨
	16-4. 건조저장육류	건조저장육류	
	16-5. 양념육류	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천연케이싱	
	16-6. 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16-7. 식육함유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가금육 통조림, 아질산 나트륨 첨가 가금육, 육류 내장, 육류 및 채소 통조림, 주석캔 포장 가금육, 육류 내장, 육류 및 채소 통조림, TFS(tin free steel) 포장 가금육, 육류 및 채소 통조림, 주석캔 포장 간 가공품 간(liver) 통조림 부산물 통조림, 파테(pate) 포함 수렵육 부산물, 돼지 껍질, 선지 가공품, 가금육 파테(pate) 통조림 수렵육 부산물, 돼지 껍질, 선지 가공품, 부산물 통조림 (파테(pate) 포함) 수렵육 부산물, 돼지 껍질, 선지 가공품, 부산물 통조림 (파테(pate) 포함), 육류 및 채소 통조림 신장(kidney) 가공품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신장(kidney) 포함 부산물 통조림, 파테(pate) 포함	
			육류 가공품, 가금육 가공품, 육류 통조림, 육류 및 육류, 가금육, 채소 통조림	
			육류 및 채소 통조림, 가금육 및 채소 통조림	
			육류 통조림 (돼지고기 및 이의 가공품)	
			육류 통조림 (소고기, 양고기 및 이의 가공품)	
			육류, 육류 함유 가공품, 가금육 가공품, 육류 및 육류, 가금육, 채소 통조림	
			육류, 육류 함유 가공품, 가금육 가공품, 육류 통조림, 육류 및 채소, 가금육	
			통조림: 육류, 가금육, 부산물 (파테(pate) 포함), 육류 및 채소 (주석캔 포장)	
			훈제 육류 및 가금육 가공품	
			가금육가공품 및 함유제품	
			가금육 포함 부산물 가공품	
	16-8. 포장육	포장육	생고기, 가금육, 가금육 포함 부산물 가공품	
17. 알가공품류	17. 알가공품의 모든 중/세분류는 카자흐스탄 유해물질(식품안전 위생요건) 규정 내 우측의 식품유형("계란 및 계란 가공품", "계란, 계란제품, 계란가공품, 계란 함유 제품", "알, 알 가공품", "알, 알가공품, 알 함유 가공품")에 모두 해당됨		계란 및 계란 가공품	
			계란, 계란제품, 계란가공품, 계란 함유 제품	
			알, 알 가공품	
			알, 알가공품, 알 함유 가공품	
	17-1. 알가공품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건조 난백 (알부민)
				건조 알 가공품
			건조 알 가공품 (난분, 난백, 난황)	
			알 및 액란 가공품	
	17-2. 알함유 가공품	알함유가공품	알 및 액란 가공품 (멜란지, 난백, 난황)	
18. 유가공품	18. 유가공품의 모든 중/세분류는 카자흐스탄 유해물질(식품안전 위생요건) 규정 내 우측의 식품유형("우유 및 유제품", "우유제품", "유제품")에 모두 해당됨		우유 및 유제품	
			우유제품	
			유제품	
			우유 및 우유가공품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18-1. 우유류	우유 환원유	생우유, 생탈지우유
			생우유, 생탈지우유, 생크림
			액상 우유제품
			우유
			우유 및 버터밀크
			우유, 가공우유
			우유, 버터밀크, 유청, 우유음료, 액상 우유제품, 유제품 혼합물 (발효 후 열처리 포함)
	18-2. 가공우유류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우유, 크림
			우유, 크림, 버터밀크, 유청, 우유음료, 발효유제품, 사워크림, 유제품 혼합물
			가공 우유제품 (버터, 우유 및 유지방으로 만든 버터페이스트, 식물성 버터스프레드 및 기(ghee) 제외), 건조 및 동결건조 가공 우유제품 (회수 제품 기준)
			우유, 가공우유
			통조림 가공 우유 제품, 주석캔 포장
			통조림 가공 우유 제품, TFS(tin free steel) 포장
			통조림 우유 및 통조림 우유 혼합물
	18-3. 산양유	산양유	통조림 우유, 우유 함유 유제품 혼합물
	18-4. 발효우유류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유제품, 발효 후 열처리 포함
			유크림, 버터밀크, 유청, 유제품, 유제품 혼합물
			기반 제품, 당 첨가 농축 및 응축, 응축 우유, 저온살균, 통조림 우유 및 우유 혼합물
18-5. 버터유	버터유	버터밀크	
		우유 및 버터밀크	
		우유, 버터밀크, 유청, 우유음료, 액상 우유제품, 유제품 혼합물 (발효 후 열처리 포함)	
		유크림, 버터밀크, 유청, 유제품, 유제품 혼합물	
18-6. 농축우유류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기반 제품, 당 첨가 농축 및 응축, 응축 우유, 저온살균, 통조림 우유 및 우유 혼합물	
		농축 가공 우유	
		농축 가공 우유, 통조림 우유, 우유 함유 유제품 혼합물	
		농축, 가당 농축 우유, 멸균 농축 우유	
		유크림, 버터밀크, 유청, 유제품, 유제품 혼합물	
	기반 제품, 당 첨가 농축 및 응축, 응축 우유, 저온살균, 통조림 우유 및 우유 혼합물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18-7. 유크림류	유크림 가공유크림	생우유, 생탈지우유, 생크림
			우유, 크림
			우유, 크림, 버터밀크, 유청, 우유음료, 발효유제품, 사워크림, 유제품 혼합물
			크림
	18-8. 버터류	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버터, 우유 및 유지방으로 만든 버터페이스트
			버터, 우유 및 유지방으로 만든 버터페이스트 (저장용)
			버터, 우유 및 유지방으로 만든 버터페이스트 (저장용), 식물성 버터스프레드, 식물성 버터(가: ghee) (저장용)
			버터, 우유 및 유지방으로 만든 버터페이스트 (코코야제품 함유)
			버터, 우유 및 유지방으로 만든 버터페이스트, 식물성 버터스프레드, 식물성 버터(ghee) (코코야제품 함유)
			우유 및 유지방으로 만든 버터페이스트
	18-9. 치즈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가공 치즈 및 치즈제품
			유청 알부민 (건조), 치즈 페이스트, 소스
치즈 및 치즈제품, 치즈 스프레드, 소스			
커드 및 커드 기반 유제품			
커드 및 커드 기반 제품			
커드 및 커드 기반 제품, 우유 알부민 및 기반 제품			
18-10. 분유류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커드 및 커드 기반 제품, 커드 기반 유제품	
		혼연 치즈 및 치즈제품, 치즈 페이스트, 소스	
		가공 우유제품 (버터, 우유 및 유지방으로 만든 버터페이스트, 식물성 버터스프레드 및 기(ghee) 제외), 건조 및 동결건조 가공 우유제품 (회수 제품 기준)	
		생우유, 생탈지우유	
18-11. 유청류	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생우유, 생탈지우유, 생크림	
		유제품, 복합건조, 동결건조 (재구성 제품 기준)	
		우유 알부민 및 기반 제품	
		우유 알부민 및 기반 제품, 유단백질 페이스트, 발효 후 열처리 포함	
		우유, 크림, 버터밀크, 유청, 우유음료, 발효유제품, 사워크림, 유제품 혼합물	
유단백 페이스트			
유단백 페이스트, 발효 후 열처리 포함			
유청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19. 수산기공식품류	18-12. 유당		유청 알부민 (건조), 치즈 페이스트, 소스	
			유크림, 버터밀크, 유청, 유제품, 유제품 혼합물	
			기반 제품, 당 첨가 농축 및 응축, 응축 우유, 저온살균, 통조림 우유 및 우유 혼합물	
			유청 단백질 농축물, 카세인, 유단백질	
			가수분해물	
			유청 단백질 농축물, 카세인, 유단백질	
	18-13. 유단백 가수분해식품	유단백 가수분해식품	가수분해물 (지방 기준)	
			유단백 농축물, 락툴로스, 유당, 카세인, 유단백질	
			가수분해효소	
			유단백 농축물, 락툴로스, 유당, 카세인, 유단백질	
			가수분해효소	
			유청 단백질 농축물, 카세인, 유단백질	
19-1. 어육 가공품류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어육소시지 기타 어육가공품		모든 생선 (간, 어란 및 어유, 생선오일 제외) 및 해양포유류, 건조제품 포함	
			모든 생선 (참치, 황새치, 흰고래 제외) 및 해양포유류, 건조제품 포함	
			모든 생선 (참치, 황새치, 흰고래, 어란 및 어유, 간, 생선 오일 제외) 및 해양포유류, 건조제품 포함	
			모든 생선 및 해양포유류 (어란 및 어유, 간 제외), 건조제품 포함	
			모든 생선 및 해양포유류, 건조제품 포함	
			모든 생선 (참치, 황새치, 흰고래 제외) 및 해양포유류, 건조제품 포함	
	19-2. 젓갈류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생선 (철갑상어, 연어, 청어 제외), 건조, 훈제, 염장, 향신료, 절임, 조리 및 기타, 즉석섭취 포함
				생선 통조림 및 생선 보존처리식품, 생선 간 및 기반 제품, 주석캔 포장
				생선 통조림 및 생선 보존처리식품, 생선 간 및 기반 제품, TFS(tin free steel) 포장
				철갑상어, 연어, 청어 - 모든 종류 (간, 어란 및 어유 제외), 건조, 훈제, 염장, 향신료, 절임, 조리 및 기타 즉석섭취식품 포함
				모든 생선 (간, 어란 및 어유, 생선오일 제외) 및 해양포유류, 건조제품 포함
				모든 생선 (참치, 황새치, 흰고래 제외) 및 해양포유류, 건조제품 포함
19-3. 건포류	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 건포류		모든 생선 (간, 어란 및 어유, 생선오일 제외) 및 해양포유류, 건조제품 포함	
			모든 생선 (참치, 황새치, 흰고래 제외) 및 해양포유류, 건조제품 포함	
			모든 생선 (참치, 황새치, 흰고래, 어란 및 어유, 간, 생선 오일 제외) 및 해양포유류, 건조제품 포함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모든 생선 및 해양포유류 (어란 및 어유, 간 제외), 건조제품 포함
			모든 생선 및 해양포유류, 건조제품 포함
			생선 (철갑상어, 연어, 청어 제외), 건조, 훈제, 염장, 향신료, 절임, 조리 및 기타, 즉석섭취 포함
			참치, 황새치, 연어, 청어 - 모든 종류, 건조제품 포함
			참치, 황새치, 흰고래 - 모든 종류 (어란 및 어유, 간, 생선오일 제외), 건조제품 포함
			참치, 황새치, 흰고래 - 모든 종류, 건조제품 포함
	19-4. 조미김	조미김	철갑상어, 연어, 청어 - 모든 종류 (간, 어란 및 어유 제외), 건조, 훈제, 염장, 향신료, 절임, 조리 및 기타 즉석섭취식품 포함
	19-5. 한천	한천	한천, 알긴산
	19-6.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 수산물 가공품	생선 간 및 기반 제품
			생선오일
			어란 및 어유 (모든 종류), 기반 제품
			어란 및 어유제품
			참치, 황새치, 연어, 청어 - 모든 종류, 건조제품 포함
참치, 황새치, 흰고래 - 모든 종류 (어란 및 어유, 간, 생선오일 제외), 건조제품 포함			
참치, 황새치, 흰고래 - 모든 종류, 건조제품 포함			
19-6.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 수산물 가공품	철갑상어, 연어, 청어 - 모든 종류 (간, 어란 및 어유 제외), 건조, 훈제, 염장, 향신료, 절임, 조리 및 기타 즉석섭취식품 포함	
20. 동물성 가공식품류	20-1.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기타 동물성가공식품	
		동물성가공식품	
20-2. 곤충가공 식품	자라분말	자라분말	
		자라분말제품	
20-3. 자라가공 식품	자라유제품	자라유제품	
		자라유제품	
20-3. 자라가공 식품	자라유제품	캐비어 유사제품	
		훈제 생선제품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20-4. 추출가공 식품	추출가공식품	젤라틴, 결합 조직 단백질 농축물
21. 벌꿀 및 화분가공품	21-1. 벌꿀류	벌집꿀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	꿀
	21-2. 로얄젤리류	로얄젤리 로얄젤리제품	
	21-2. 화분식품	가공화분 화분함유제품	
22. 즉석식품류	22-1. 생식류	생식제품 생식함유제품	
	22-2. 즉석섭취·편의 식품류	즉석섭취식품	생선 (철갑상어, 연어, 청어 제외), 건조, 훈제, 염장, 향신료, 절임, 조리 및 기타, 즉석섭취 포함 건조 브로스(broth)
		신선편의식품	건조 브로스(broth) (원제품 기준)
		즉석조리식품	건조 브로스(broth), 소금
22-3. 만두류	만두 만두피		
23. 기타식품류	23-1. 효모식품	효모식품	
	23-2.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곡물 식물성 단백질 분리물, 농축물, 가수분해물 및 혼합물
			곡물, 옥수수, 콩류(대두 제외), 해바라기, 땅콩 분리물, 농축물, 가수분해물 및 혼합물
			밀 단백질 분리물, 농축물, 가수분해물 및 혼합물 밀 단백질 제품, 음료. 밀 발효 포함
			밀, 보리, 옥수수 단백질 제품, 음료. 발효 포함 밀, 보리, 옥수수 식물성 단백질 분리물, 농축물, 가수분해물 및 혼합물
			보리 단백질 분리물, 농축물, 가수분해물 및 혼합물
			보리 단백질 제품, 음료. 발효 포함 식물성 단백질 분리물, 농축물, 가수분해물 및 혼합물
			식이 및 영양용 대두제품: 대두단백질 분리물, 농축물, 가수분해물, 콩가루 및 밀가루, 대두 씨앗 및 대두 씨앗 플레이크와 가루, 기울, 발효음료와 두부 및 비지 포함 대두 씨앗 추출 단백질 제품 식품 농축물
			식품 농축물, 원제품 기준 (지방 기준)
			아마, 겨자, 유채 식물성 단백질 분리물, 농축물, 가수분해물 및 혼합물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콩류, 면화 식물성 단백질 분리물, 농축물, 가수분해물 및 혼합물 콩류, 면화, 옥수수 식물성 단백질 분리물, 농축물, 가수분해물 및 혼합물 콩류, 유지종자 및 기타 작물 씨앗 식물성 단백질 분리물, 농축물, 가수분해물 및 혼합물 해바라기, 땅콩 식물성 단백질 분리물, 농축물, 가수분해물 및 혼합물 혈액 단백질 농축물
24. 그외분류	장기보존식품	병통조림식품	가금육 통조림, 아질산 나트륨 첨가 가금육, 육류 내장, 육류 및 채소 통조림, 주석캔 포장 가금육, 육류 내장, 육류 및 채소 통조림, TFS(tin free steel) 포장 가금육, 육류 및 채소 통조림, 주석캔 포장 간(liver) 통조림 돼지 껍질, 선지 가공품, 육류 내장과 육류 및 채소 통조림 수렵육 부산물, 돼지 껍질, 선지 가공품, 가금육 파테(pate) 통조림 수렵육 부산물, 돼지 껍질, 선지 가공품, 부산물 통조림 (파테(pate) 포함) 수렵육 부산물, 돼지 껍질, 선지 가공품, 부산물 통조림 (파테(pate) 포함), 육류 및 채소 통조림 신장(kidney) 포함 부산물 통조림, 파테(pate) 포함 육류 가공품, 가금육 가공품, 육류 통조림, 육류 및 육류, 가금육, 채소 통조림 육류 및 채소 통조림, 가금육 및 채소 통조림 육류 통조림 (돼지고기 및 이의 가공품) 육류 통조림 (소고기, 양고기 및 이의 가공품) 육류, 육류 함유 가공품, 가금육 가공품, 육류 및 육류, 가금육, 채소 통조림 육류, 육류 함유 가공품, 가금육 가공품, 육류 통조림, 육류 및 채소, 가금육 통조림: 육류, 가금육, 부산물 (파테(pate) 포함), 육류 및 채소 (주석캔 포장) 생선 통조림 및 생선 보존처리식품, 생선 간 및 기반 제품, 주석캔 포장 생선 통조림 및 생선 보존처리식품, 생선 간 및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기반 제품, TFS(tin free steel) 포장
			철갑상어, 연어, 청어 - 모든 종류 (간, 어란 및 어유 제외), 건조, 훈제, 염장, 향신료, 절임, 조리 및 기타 즉석섭취식품 포함
			통조림 채소, 과일, 베리류 (주석캔 포장), 과일 및 채소 주스용 제외
			통조림 채소, 과일, 베리류 (TFS(tin free steel) 포장), 과일 및 채소 주스용 포함
			통조림 채소, 과일, 베리류, 버섯 (주석캔 포장), 과일 및 채소 주스용 제외
			채소, 감자, 멜론, 견과류, 버섯 및 가공품, 통조림 포함
			통조림 가공 우유 제품, 주석캔 포장
			통조림 가공 우유 제품, TFS(tin free steel) 포장
			통조림 우유 및 통조림 우유 혼합물
			통조림 우유, 우유 함유 유제품 혼합물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식품원료	식물성 원료	
		동물성 원료	
	그외 분류	그외 분류	음용 미네랄워터, 천연, 테이블용, 의료용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들은 그 외의 분류로 구분하였으며, aT KATI에도 올라가 있음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 내 식품유형 중 원료와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품목 제외

[표 2-9] 한국 식품공전 분류에 따른 카자흐스탄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
“영아용 식품” 식품유형 분류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10. 특수용도 식품	10-1.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유	적응유, 부분 적응유 혼합물 (건조 - 재구성 제품 기준), 살균 우유, 초저온살균, 저온살균, 농축 액상 발효우유 포함
		성장기용 조제유	적응유, 부분 적응유 혼합물 (건조 - 재구성 제품 기준), 살균 우유, 초저온살균, 저온살균, 농축 액상 발효우유 및 살균 유크림 포함
			적응유, 부분 적응유 혼합물 (건조 - 재구성 제품 기준), 살균 우유, 초저온살균, 저온살균, 농축 액상 발효우유 및 우유음료, 살균 유크림 포함
			적응유, 부분 적응유 혼합물 (건조 - 재구성 제품 기준), 살균 우유, 초저온살균, 저온살균, 농축 액상 발효우유 및 우유음료, 유크림 포함
			적응유, 부분 적응유 혼합물 (건조 - 재구성 제품 기준), 살균 우유, 초저온살균, 저온살균, 액상 발효우유제품, 우유음료, 유크림
			적응유, 부분 적응유 혼합물, 살균 우유, 저온살균, 초저온살균, 액상 발효우유제품, 우유음료, 유크림
			건조 및 액상 우유음료,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용 건조 및 액상 우유음료, 생후 6개월 이상 3세 미만 영유아용 (건조 - 재구성 제품 기준)
			건조 및 액상 우유음료,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용 포함
			건조 및 액상 우유음료,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용 포함 (재구성 제품 기준)
			건조 및 액상 우유음료, 우유음료, 저온살균 유크림
			고단백질 분유
			고단백질 분유 (재구성 제품 기준)
			영아용 분유 (재구성 제품 기준)
			영아용 분유 (재구성 제품 기준), 건조 및 액상 우유음료,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용 포함
	영아용 분유, 건조 우유 포리지(porridge) (조리 필요), 인스턴트 건조 우유 포리지(porridge), 인스턴트 비스킷 (재구성 제품 기준)		
	영아용 분유, 건조 및 액상 우유음료 (재구성 제품 기준)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영아용 분유, 건조 및 액상 우유음료,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용 포함 (재구성 제품 기준)
	10-2. 영아용 조제식	영아용 조제식	저젓당 및 무젓당 제품, 대두분리단백질 기반, 건조 고단백질 우유 제품, 저단백질 제품, 완전 및 부분 가수분해 단백질 기반 제품, 페닐알라닌 성분이 없거나 낮은 제품 (재구성 제품 기준)
			저젓당 및 무젓당 제품, 대두분리단백질 기반, 건조 고단백질 우유 제품, 저단백질 제품, 완전 및 부분 가수분해 단백질 기반 제품, 페닐알라닌 성분이 없거나 낮은 제품, 1세 영유아용 (재구성 제품 기준)
			저젓당 및 무젓당 제품, 대두분리단백질 기반, 건조 고단백질 우유 제품, 저단백질 제품, 완전 및 부분 가수분해 단백질 기반 제품, 페닐알라닌 성분이 없거나 낮은 제품, 미숙아 및 저체중아용 (재구성 제품 기준)
			대두분리단백질 제품
			대두분리단백질 제품 (재구성된), 저단백질 제품
			대두분리단백질 제품, 건조 고단백질 유제품, 저젓당 및 무젓당 제품, 미숙아 및 저체중아용 제품
			대두분리단백질 제품, 건조 고단백질 유제품, 저젓당 및 무젓당 제품, 미숙아 및 저체중아용 제품 (재구성 제품 기준)
	10-3. 성장기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저젓당 및 무젓당 제품, 대두분리단백질 기반, 건조 고단백질 우유 제품, 저단백질 제품, 완전 및 부분 가수분해 단백질 기반 제품, 페닐알라닌 성분이 없거나 낮은 제품 (재구성 제품 기준)
			저젓당 및 무젓당 제품, 대두분리단백질 기반, 건조 고단백질 우유 제품, 저단백질 제품, 완전 및 부분 가수분해 단백질 기반 제품, 페닐알라닌 성분이 없거나 낮은 제품, 1세 영유아용 (재구성 제품 기준)
			저젓당 및 무젓당 제품, 대두분리단백질 기반, 건조 고단백질 우유 제품, 저단백질 제품, 완전 및 부분 가수분해 단백질 기반 제품, 페닐알라닌 성분이 없거나 낮은 제품, 미숙아 및 저체중아용 (재구성 제품 기준)
			대두분리단백질 제품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대두분리단백질 제품 (재구성된), 저단백질 제품		
			대두분리단백질 제품, 건조 고단백질 유제품, 저젓당 및 무젓당 제품, 미숙아 및 저체중아용 제품		
			대두분리단백질 제품, 건조 고단백질 유제품, 저젓당 및 무젓당 제품, 미숙아 및 저체중아용 제품 (재구성 제품 기준)		
			베이커리, 제과류 및 밀가루, 곡물 제품		
	10-4.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영·유아용곡류 조제식	베이커리, 제과류 및 밀가루, 곡물 제품 (옥수수 가루)		
			베이커리, 제과류 및 밀가루, 곡물 제품 (밀 및 보리)		
			베이커리, 제과류 및 밀가루, 곡물 제품 (밀, 보리, 옥수수)		
			밀가루 및 곡물 제품		
			밀가루 및 곡물 제품 (조리 필요)		
			밀가루 및 곡물 제품 (조리 필요), 건조 유제품프리 곡물 (즉석조리)		
			밀가루 및 곡물 제품 (조리 필요), 건조 우유 포리지(porridge), 유제품프리 인스턴트, 건조 우유 포리지(porridge)(조리 필요), (건조 제품의 지방 기준)		
			밀가루 및 곡물 제품 (조리 필요), 건조 우유 포리지(porridge), 유제품프리 인스턴트, 건조 우유 포리지(porridge)(조리 필요), (건조 제품의 지방 기준), 인스턴트 비스킷		
			밀가루 및 곡물 제품 (조리 필요), 건조 우유 포리지(porridge), 유제품프리 인스턴트, 건조 우유 포리지(porridge)(조리 필요), 인스턴트 비스킷 (건조 제품 기준)		
			밀가루 및 곡물 제품 (조리 필요), 건조 유제품프리 인스턴트 포리지(porridge) (즉석조리)		
			밀가루 및 곡물 제품 (조리 필요), 인스턴트 건조 유제품프리 시리얼, 건조 우유 시리얼 (조리 필요), 인스턴트 비스킷 (건조 제품 기준)		
			밀가루 및 곡물 (조리 필요), 건조 유제품프리 인스턴트 포리지(porridge)		
			10-5. 기타영유아식	기타영·유아식	베이커리 및 제과류
					베이커리, 제과류
					베이커리, 제과류 및 밀가루, 곡물 제품
					베이커리, 제과류 및 밀가루, 곡물 제품 (옥수수 가루)
			베이커리, 제과류 및 밀가루, 곡물 제품 (밀 및 보리)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베이커리, 제과류 및 밀가루, 곡물 제품 (밀, 보리, 옥수수)
			생선 통조림, 非어류 수산물 음식 및 반가공품
			생선 통조림, 생선 채소 통조림, 생선 및 非어류 수산물 음식 및 반가공품
			생선 통조림, 생선 및 非어류 수산물 음식 및 반가공품
			과일 및 채소 통조림 (밀, 보리가루 포함 곡물 및 과일튀레)
			과일 및 채소 통조림 (밀, 옥수수, 보리가루 포함 곡물 및 과일튀레)
			과일 및 채소 통조림 (곡물 및 과일튀레)
			과일 및 채소 통조림 (유제품 및 과일튀레)
			과일 및 채소 통조림 (밀가루, 곡물 포함)
			과일 및 채소 통조림, 주스용 포함
			과일 및 채소 통조림, 주스용 포함 (사과, 토마토, 산자열매 함유)
			육류 통조림, 소시지, 육류 반가공품, 파테(pate) 및 요리제품
			육류 통조림, 소시지, 육류 반가공품, 파테(pate) 및 요리제품, 저온살균 육류 소시지, 육류-채소 통조림
			육류 통조림, 저온살균 육류 소시지
			육류 통조림, 저온살균 육류 소시지, 유아용
			육류 통조림, 저온살균 육류 소시지, 육류-채소 및 채소-육류 통조림, 소시지, 육류 반가공품, 파테(pate) 및 요리제품
			육류 통조림, 저온살균 육류 소시지, 육류-채소 및 채소-육류 통조림, 파테(pate) 및 요리제품
			육류 통조림, 저온살균 육류 소시지, 육류-채소 통조림 (채소 및 육류 통조림), 육류 반가공품, 파테(pate) 및 요리제품
			육류 통조림, 저온살균 육류 소시지, 육류-채소 및 채소-육류 통조림, 생선 통조림, 생선-채소 통조림, 파테(pate) 및 요리제품 (조립식 주석용기 통조림 포장)
			건조 우유 포리지(porridge)(조리 필요), 인스턴트 비스킷 (건조 제품을 기반으로 한 모든 종류)
			건조 우유 포리지(porridge), 인스턴트, 건조 우유 시리얼(조리 필요), 인스턴트 비스킷 (건조 제품을 기반으로 한 옥수수가루)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우유 포리지(porridge), 즉석섭취, 저온살균된
			치즈 및 치즈제품, 치즈 스프레드
			치즈 및 치즈제품, 치즈 스프레드, 우유음료, 저온살균된 유크림
			치즈 및 치즈제품, 치즈 스프레드, 건조 및 액상 우유음료,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용 포함
			어린이용 허브 음료 (허브차) (재구성 제품 기준)
			코티지 치즈 제품
			코티지 치즈 제품, 우유음료
			코티지 치즈 제품, 치즈
			어류 및 non-어류 수산물 음식 제품
			어류 및 non-어류 수산물 음식 제품 (계란 성분 함유)
			어류 및 non-어류 수산물 음식 제품 (곡물 및 밀가루 함유)
			저단백질 식품
			어류 및 non-어류 수산물 음식 제품 (채소 함유)
			어류 및 non-어류 수산물 음식 제품 (유제품 성분 함유)
			어류 및 non-어류 수산물(양식) 요리 제품 (유제품 성분, 생선 통조림 및 채소제품 포함)
			인스턴트 건조 포리지(porridge), 유제품 없음 (즉석조리)
			생선 및 생선-채소 통조림, 어류 및 non-어류 수산물 음식 제품, 반가공품
			생선 및 채소 통조림
			생선 및 채소 통조림 (밀가루, 곡물 함유)
			생선 및 채소 통조림 (토마토 함유)
			생선 및 채소 통조림 (채소 함유)
			생선 및 채소 통조림 (밀, 보리가루 함유)
			동결건조 유제품
			동결건조 식물성 식품
			동결건조 식물성 식품 (사과, 토마토, 산자열매 함유)
			동결건조 육류 제품
			과일 및 채소 통조림, 주스용 포함
			건조 우유 포리지(porridge) (조리 필요), 인스턴트
			건조 우유 포리지(porridge), 인스턴트 비스킷 (건조 제품 기준)
			건조 우유 포리지(porridge) (조리 필요), 인스턴트 비스킷 (옥수수, 보리, 밀가루, 건조 제품 기준)
			건조 우유 포리지(porridge) (조리 필요), 인스턴트 비스킷 (건조 제품 기준)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건조 우유 포리지(porridge), 인스턴트
			건조 우유 포리지(porridge) (조리 필요)
			건조 우유 포리지(porridge) (조리 필요), 인스턴트
			건조 우유 포리지(porridge) (재구성 제품 기준)
			건조 우유 포리지(porridge) (조리 필요), 인스턴트
			건조 우유 포리지(porridge), 인스턴트 비스킷 (재구성 건조 제품 기준)
			건조 우유 포리지(porridge) (조리 필요), 인스턴트
			건조 우유 포리지(porridge), 인스턴트 비스킷 (재구성 제품 기준)
			건조 우유 포리지(porridge) (조리 필요), 인스턴트 비스킷 (건조 제품 기준) (밀, 보리가루, 곡물 함유 시리얼)
			인스턴트 건조 우유 포리지(porridge)
			즉석조리 유제품 포리지(porridge), 유가공 시설 생산
			즉석조리 유제품 포리지(porridge), 유가공 시설 생산 (밀, 보리가루, 곡물 함유 시리얼)
			우유 포리지(porridge), 즉석섭취, 저온살균된
			저단백질 식품
			저단백질 식품 (밀, 보리가루)
			육류-채소 및 채소-육류 통조림
			육류-채소 및 채소-육류 통조림 (채소 함유 통조림 식품)
			육류-채소 및 채소-육류 통조림 (밀, 보리 함유 통조림 식품)
			육류-채소 및 채소-육류 통조림 (곡물 및 밀가루 함유)
			육류-채소 및 채소-육류 통조림, 미취학 및 취학 연령 아동용
			육류-채소 및 채소-육류 통조림 (토마토 함유)
			육류-채소 및 채소-육류 통조림 (밀, 보리, 옥수수가루 함유)
			육류-채소 통조림 (채소-육류 통조림) (곡물 및 밀가루 함유)
			소시지
			우유 포리지(porridge), 즉석조리, 유가공 시설 생산
			우유 포리지(porridge), 즉석조리, 유가공 시설 생산 (모든 종류)
			우유 포리지(porridge), 즉석조리, 유가공 시설 생산 (곡물 함유 밀가루 및 곡물)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우유 포리지(porridge), 즉석조리, 유가공 시설 생산 (밀, 보리가루, 곡물 함유)	
			영아용 식품 원물 및 식품 성분 (유제품, 육류, 내장)	
			영아용 식품 원물 및 식품 성분 (우유 기반)	
			어류 및 非어류 수산물 반가공품	
			인스턴트 쿠키	
			인스턴트 비스킷 (건조 기준)	
	10-6. 특수의료용 도등 식품	환자용식품 선천성 대사질환 자용 식품 유단백알레르기영· 유아용특수조제식 품 영·유아용 특수조 제식품		고단백질 분유, 저젓당 및 무젓당 제품, 미숙아 및 저체중아용 제품 (재구성 제품 기준)
				고단백질 분유, 미숙아 및 저체중아용 제품 (재구성 제품 기준)
				고단백질 분유, 완전 또는 부분 가수분해 단백질 기반, 저젓당 및 무젓당 제품, 미숙아 및 저체중아용 제품 (재구성 제품 기준)
				미숙아 및 저체중아용 제품
미숙아 및 저체중아용 제품 (재구성 제품 기준)				
10-7.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0-8. 임산·수유부 용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들은 그 외의 분류로 구분하였으며, at KATI에도 올라가 있음

*유해물질규정(식품안전 위생요건) 내 식품유형 중 원물과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품목 제외

[표 2-10] 한국 식품공전 분류에 따른 카자흐스탄 유해물질규정(미생물) 식품유형 분류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미생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동양식 밀가루 당과류 (시나몬, 커라비, 세커로콤, 세커쥬렉으로 만든 비스킷)
			동양식 밀가루 당과류 (제밀라흐(земеллах): 설탕과 계피를 곁들인 부드러운 쿠키, 유대인식 쿠키)
			롤: 속을 채운 비스킷 (과일, 당절임과일, 양귀비 씨앗, 견과류), 당노 환자용
			비스킷
			비스킷 롤, 크림, 지방, 당절임 과일 및 과일, 씨앗, 견과류 포함
			비스킷: 비스킷, 크래커
			러시아과일과자(빠스쥘라)-마멀레이드
			러시아과일과자(빠스쥘라)-마멀레이드: 글레이즈 되지 않은, 당노 환자용
			러시아과일과자(빠스쥘라)-마멀레이드: 글레이즈된
			러시아과일과자(빠스쥘라)-마멀레이드: 당노 환자용
			설탕 마감 처리한 반가공품
			설탕 마감 처리한 반가공품, "베미첼리"류
			쿠키: 설탕, 초콜릿 프로스팅(아이싱), 버터, 귀리, 얇은 크림과 필링이 있는
			쿠키: 얇은 크림과 필링이 있는
		할바(halva)	
		할바(halva), 글레이즈되지 않은	
		할바(halva), 글레이즈된	
		캔디류	글레이즈 되지 않은 카라멜, 속을 채운: 견과류, 초콜릿-견과류, 초콜릿, 크림 등
			글레이즈되지 않은 카라멜 (캔디, 풍당, 리큐어(liqueur), 과일 및 베리류, 휘핑, 젤리로 속을 채운), 당노 환자용
			글레이즈된 캔디 및 당과류 (우유, 휘핑, 건조과일, 당절임과일, 팡창 곡물, 리큐어(liqueur), 젤리로)
			글레이즈된 캔디 및 당과류: 우유, 휘핑, 건조과일, 당절임과일, 크림, 프랄린 기반, 지방
			글레이즈된 필링 포함 카라멜: 우유, 휘핑, 견과류
			글레이즈된 필링 포함 카라멜: 풍당, 과일, 리큐어(liqueur), 젤리
			동양식 당과류: 글레이즈된 소프트캔디류 (터키쉬딜라이트); 글레이즈된 카라멜류
			동양식 당과류: 소프트캔디류, 글레이즈된 소프트캔디류
			동양식 당과류: 소프트캔디류, 글레이즈된
소프트캔디류, 카라멜 타입(까지낙(козинак:땅콩엿)), 글레이즈된 카라멜류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미생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동양식 당과류: 소프트캔디류, 글레이즈된, 셔벗, 터키쉬달라이트
			동양식 당과류: 소프트캔디류, 카라멜류
			(까지낙(козинак:땅콩엿))
			동양식 당과류: 카라멜류 (구운 견과류)
			동양식 당과류: 카라멜류 (구운 견과류, 까지낙(козинак:땅콩엿))
			동양식 당과류: 터키쉬 달라이드
			동양식 밀가루 당과류
			동양식 밀가루 당과류, 글레이즈된
			드라제
			이리스(Ирис: 러시아 기름사탕)
			초콜릿 및 초콜릿 캔디
			"각종" 초콜릿 및 캔디
			"각종" 초콜릿 및 캔디, 제과류, 당노 환자용
			카라멜: 글레이즈되지 않고 필링 포함. 글레이즈 포함
			카라멜: 글레이즈되지 않고 필링 포함; 당노 환자용
			카라멜: 글레이즈되지 않은; 글레이즈된 필링 포함; 당노 환자용
			캔디 및 당과류: (풍당, 우유로) 글레이즈되지 않은
			캔디 및 당과류: (풍당, 우유로) 글레이즈되지 않은, (풍당, 과일, 마지팬, 구운 것으로) 글레이즈된, 당노 환자용
			캔디 및 당과류: (풍당, 우유로) 글레이즈되지 않은, 당노 환자용
			캔디 및 당과류: (프랄린 및 지방 기반으로) 글레이즈되지 않은, 건조 과일, 크림, 프랄린 기반으로 글레이즈된
			캔디 및 당과류: (프랄린 및 지방 기반으로) 글레이즈되지 않은, 글레이즈된: 풍당, 과일, 파지팬, 구운 것, 당절임과일, 팡창 곡물, 리큐어(liqueur), 젤리로
			캔디 및 당과류: (프랄린 및 지방 기반으로) 글레이즈되지 않은, 겉면 글레이즈된, 당노 환자용
			캔디 및 당과류: 겉면 글레이즈된 (건조과일로)
			캔디 및 당과류: 글레이즈되지 않은, (크림, 프랄린 기반으로) 글레이즈된
			캔디 및 당과류: 글레이즈되지 않은, 겉면 글레이즈된, 당노 환자용
			단 식품 및 음료: 신선 과일 및 베리류로 만든 콤포트(compote), 통조림, 건조 과일 및 베리류로 만든 콤포트(compote), 신선, 건조 과일 및 베리류로 만든 젤리, 주스, 시럽, 과일 및 베리류 푸레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미생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숨사탕
			젤리 무스
		추잉껌	추잉껌
		빵류	팬케이크, 육류 및 내장 등으로 속을 채운
			곱창 포함 가금육 파이
			베이커리 제품, 커스터드 포함
			베이커리 제품, 필링 포함
			베이커리 크림
			동양식 밀가루 당과류: 롤 및 견과류 롤
			동양식 밀가루 당과류: 시나몬, 커라비, 세커로콤, 세커쥬렉으로 만든 스펀지케이크, 제밀라흐, 롤 및 견과류 롤
			동양식 밀가루 당과류: 시나몬, 커라비, 세커로콤, 세커쥬렉으로 만든 스펀지케이크, 제밀라흐, 롤 및 견과류 롤, 글레이즈된
			롤, 당노 환자용
			속을 채운 스펀지롤
			속을 채운 스펀지롤 (크림, 지방)
			속을 채운 스펀지롤: 과일, 당절임과일, 양귀비 씨앗, 견과류
			속을 채운 와플케이크
			속을 채운 와플케이크: (지방, 프랄린, 초콜릿-견과류, 할바(halva)로)
			속을 채운 와플케이크: 지방으로
			속을 채운 와플케이크: 프랄린, 초콜릿-견과류, 할바(halva)로
			와플
			와플: 속을 채우거나 채우지 않은
			장식한 케이크 및 페이스트리
			장식한 케이크 및 페이스트리 (크림 케이크)
			진저브레드
			진저브레드: 속을 채운
			진저브레드: 필링 없음
			진저브레드: 필링이 있거나 없음
			초콜릿 글레이즈된 와플
			컵케이크
			컵케이크 (가루설탕)
			컵케이크 (견과류, 당절임과일, 미숙 과일 및 럼으로 글레이즈된)
			컵케이크 및 롤, 밀봉포장된
			케이크 및 페이스트리, 당노 환자용 롤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미생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케이크 및 페이스트리, 마가린 및 크림, 지방으로 마감을 하거나 하지 않은
			케이크 및 페이스트리: 마감 처리하거나 하지 않은, 마가린, 식물성 크림 및 지방으로
			케이크 및 페이스트리: 마감 처리하거나 하지 않은; 당뇨 환자용
			케이크 및 페이스트리: 마감 처리한
			케이크 및 페이스트리: 마감 처리한 (수플레와 같은 단백질 휘핑, 과일, 풍당, 초콜릿 글레이즈, 지방, 커드크림, 식물성 버터, "감자" 타입 커스터드로)
			케이크 및 페이스트리: 마감 처리한 (유통기한 5일 미만)
			케이크 및 페이스트리: 마감 처리한 (유통기한 최소 5일)
			케이크 및 페이스트리: 마감 처리한 (커스터드로), 당뇨 환자용
			케이크 및 페이스트리: 마감 처리한(크림(유통기한 5일 이하일 때), 과일, 풍당, 초콜릿 글레이즈, 지방, 커드크림, 식물성 버터, "감자" 타입 커스터드로); 마감 처리 하지 않음; 마가린 및 식물성 크림, 지방 기반 마감 처리
			케이크 및 페이스트리: 마감 처리한, 냉동 포함: 크림으로 (유통기한 5일 미만)
			베이커리제품, 파이
			치즈케이크, 캐서롤, 구운 푸딩, 코티지치즈로 속을 채운 파이
			코티지치즈 요리: 만두, 찐 푸딩, 팬케이크, 캐서롤, 구운 푸딩, 코티지치즈로 속을 채운 파이
			코티지치즈 요리: 치즈, 치즈케이크, 캐서롤, 구운 푸딩, 코티지치즈로 속을 채운 파이
			비스킷 롤, 크림, 지방, 당절임 과일 및 과일, 씨앗, 견과류 포함
2. 병과류	2-1. 아이스크림류	떡류	
		아이스크림	과일 및 베리류 아이스크림, 설탕 시럽 기반 향첨가 아이스
		저지방아이스 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비유지방아이 스크림	동양식 당과류: 서벤티류에 한함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미생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2-2. 아이스크림믹스류	아이스크림믹스 저지방아이스 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과일 및 베리류 아이스크림 믹스 (물로 재구성된)
	2-3. 빙과	빙과	
	2-4. 얼음류	식용얼음 어업용얼음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3-1. 코코아가공품류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 코코아가공품	코코아분말 코코아분말, 산업 공정용
	3-2. 초콜릿류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일반 초콜릿 및 디저트 초콜릿, 무첨가물 초콜릿 및 초콜릿 캔디 "각종" 초콜릿 및 캔디 "각종" 초콜릿 및 캔디, 제과류, 당노 환자용 초콜릿, 다양한 캔디 및 제과류로 속을 채운 초콜릿, 당노 환자용 초콜릿: 일반 및 디저트, 무첨가물; 당노 환자용
4. 당류	4-1. 설탕류	설탕 기타설탕	
	4-2. 당시럽류	당시럽류	비살균, 저온살균, 고온충전 시럽 비살균 시럽 저온살균, 고온충전 시럽
	4-3. 올리고당류	올리고당 올리고당가공품	
	4-4. 포도당	포도당	과립형 포도당, 주스 첨가물용 포도당-과당 시럽
	4-5. 과당류	과당 기타과당	포도당-과당 시럽
	4-6. 엿류	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4-7. 당류가공품류	당류가공품류	저당 당밀
5. 잼류		잼	잼, 프리저브, 설탕 함유 비살균 과일 농축액 잼, 프리저브, 설탕 함유 비살균 과일 및 베리류 농축액 잼, 프리저브, 콤포트(compote), 과일 및 베리류, 설탕 및 기타 과일과 으깬, 과일 및 베리류 설탕 농축물, 살균제품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미생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6. 두부류 또는 목류		기타잼	해조류 잼	
			페이스트, 크림	
			페이스트, 크림, 견과류	
			페이스트, 크림: 우유, 초콜릿	
			두부	대두단백질 제품 (두부)
				대두단백질 제품 (두부) (유통기한 72시간 이상)
				대두단백질 제품 (두부, 비지), 스타터 배양 사용하지 않은
				대두음료, 대두단백질 제품(두부), 비지
			가공두부	유바
				대두단백질 제품 (두부)
대두단백질 제품 (두부) (유통기한 72시간 이상)				
대두단백질 제품 (두부, 비지), 스타터 배양 사용하지 않은				
대두음료, 대두단백질 제품(두부), 비지				
비지 콩 비지				
목류				
7. 식용유지류	7-1. 식물성유지류	콩기름(대두유)		
		옥수수기름 (옥배유)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미강유(현미유)		
		참기름 추출참깨유		
		들기름 추출들깨유		
		홍화유(사플라워 유 또는 잇꽃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 (면실유)		
		땅콩기름 (낙화생유)		
		올리브유		
		팜유 팜올레인유 팜스테아린유		
		팜핵유		
		야자유		
		고추씨기름		
기타식물성유지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미생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7-2. 동물성유지류	식용우지		
		원료우지		
		식용돈지	돈지, 냉장, 냉동, 미염장	
		원료돈지	돈지 및 삼겹살 (염장, 훈제, 굽고 훈제한)	
			기타동물성유지	
	7-3. 식용유지가공품	혼합식용유		
		향미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류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 가공품	
8. 면류	생면		파스타 면, 우유 기반	
			파스타 면, 우유 및 채소 기반 첨가물 포함	
			파스타 면, 채소 기반 첨가물 포함	
			파스타 면, 채소 기반 첨가물 포함 (이스트 포함)	
			무단백질 파스타	
			무단백질 파스타 (이스트 포함)	
	숙면		가니쉬: 삶은 쌀, 파스타, 삶은 매시트포테이토 (드레싱 없는), 삶은 감자, 구운 (드레싱 없는)	
			가니쉬: 삶은 쌀, 파스타, 삶은 매시트포테이토 (드레싱 없는), 삶은 감자, 튀긴(드레싱 없는), 끓인 채소(드레싱 없는)	
			드레싱 있는 가니쉬 (삶은 쌀, 파스타, 삶은 매시트포테이토, 삶은 감자, 튀긴, 끓인 채소)	
	건면		파스타 면, 우유 기반	
			파스타 면, 우유 및 채소 기반 첨가물 포함	
			파스타 면, 채소 기반 첨가물 포함	
			파스타 면, 채소 기반 첨가물 포함 (이스트 포함)	
			무단백질 파스타	
			무단백질 파스타 (이스트 포함)	
		유당면		
	9. 음료류	9-1. 다류	침출차	차
액상차			차	
고형차			차	
9-2. 커피		커피	커피콩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미생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9-3. 과일채소류음료	농축과·채즙 과·채주스 과·채음료	무알코올 음료, 유통기한 30일 이상인 설탕, 감미료 함유 주스 포함
			무알코올 음료, 유통기한 30일 이상인 주스 포함
			무알코올 음료, 주스
			단 식품 및 음료: 신선 과일 및 베리류로 만든 콤포트, 통조림, 건조 과일 및 베리류로 만든 콤포트(compote), 신선, 건조 과일 및 베리류로 만든 젤리, 주스, 시럽, 과일 및 베리류 푸레
	9-4. 탄산음료류	탄산음료 탄산수	무알코올 음료, 유통기한 30일 이상인 설탕, 감미료 함유 주스 포함
			무알코올 음료, 유통기한 30일 이상인 주스 포함
			무알코올 음료, 주스
	9-5. 두유류	원액두유 가공두유	대두음료, 혼합음료, 냉장 및 냉동 디저트
			대두음료, 혼합음료, 냉장 및 냉동 디저트 (유통기한 72시간 이상)
			대두음료 (발효 콩음료)
대두음료, 대두단백질 제품(두부), 비지			
대두음료, 혼합음료, 냉장 및 냉동 디저트			
발효 대두음료			
발효 대두음료 (유통기한 72시간 이상)			
9-6. 발효음료류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여과한 저알코올 저온살균 발효음료	
		대두음료 (발효 콩음료)	
		발효 대두음료	
9-7. 인삼, 홍삼음료	인삼, 홍삼음료	발효 대두음료 (유통기한 72시간 이상)	
9-8. 기타 음료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건조 허브 원료 혼합물, 뜨거운 청량음료 제조용	
		청량음료 농축액 (액상, 페이스트), 혼합물 (분말, 정제형, 과립형 등)	
		청량음료 농축액 (액상, 페이스트), 혼합물 (분말, 정제형, 과립형 등) (중탄산나트륨 포함 농축물 제외)	
		대두음료, 혼합음료, 냉장 및 냉동 디저트	
10. 특수용도 식품	카자흐스탄의 유해물질(미생물) 규정 내 "1.11 유가공 시설 생산(제조) 영아용 특수용도식품"~"1.14 영아용 특수용도 식품 제조용 원료 및 주요 성분" 유형은 본 매칭일람표 하단에 별도의 매칭을 제공함.		
	10-1.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유 성장기용 조제유	
	10-2. 영아용 조제식	영아용 조제식	
	10-3. 성장기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미생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10-4.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10-5. 기타 영·유아식	기타영·유아식	
	10-6.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환자용식품 선천성 대사질 환자용 식품 유 단 백 알 레 르 기 영 · 유 아 용 특 수 조 제 식 품 영 · 유 아 용 특 수 조 제 식 품	질병 예방, 영양 보충용 건조식품 - 곡물, 유제품, 육류 혼합물 (압출한)
	10-7.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0-8. 임신·수유부용 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	
11. 장류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			
12. 조미식품	12-1. 식초	발효식초 희석초산	
	12-2. 소스류	소스	토마토 소스 및 케첩, 비살균, 식품첨가물 포함한 제품 포함
		마요네즈	향첨가 양념 - 머스터드, 서양 고추냉이 (테이블용)
		토마토케첩	메인 코스용 소스 및 드레싱
	복합조미식품	요리용 소스 분말 (열건조)	
12-3. 카레(커리)	카레(커리)분 카레(커리)	향신료 및 향신식물 복합보충제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미생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12-4.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고춧가루 실고추	
	12-5.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향신료조제품	즉석섭취 향신료 및 허브 향신료 및 향신식물 복합보충제
	12-6. 식염	천일염 재제소금 (재제조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13. 절임류 또는 조림류	13-1. 김치류	김치속 김치	
	13-2. 절임류	절임식품 당절임	당절임과일 배럴에 삶고 피클, 염장 버섯 단 식품 및 음료: 신선 과일 및 베리류로 만든 콤포트(compote), 통조림, 건조 과일 및 베리류로 만든 콤포트(compote), 신선, 건조 과일 및 베리류로 만든 젤리, 주스, 시럽, 과일 및 베리류 쥬레 잼, 프리저브, 콤포트(compote), 과일 및 베리류, 설탕 및 기타 과일과 으갠, 과일 및 베리류 설탕 농축물, 살균제품 통조림: 버섯 및 절인 버섯
	13-3. 조림류	조림류	
14. 주류		탁주	
		약주	
		청주	
		맥주	저온살균 캔맥주
			병포장 생맥주
			수제 맥주
			케그 포장 생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비여과 크바스(러시아 전통 음료, 주류) 비살균 여과 수제 크바스(러시아 전통 음료, 주류) 비살균 여과 크바스(러시아 전통 음료, 주류): 케그 포장 비살균 여과 크바스(러시아 전통 음료, 주류): 폴리머 포장 (PET)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미생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15. 농산가공 식품류			저알코올, 비살균, 여과 발효음료, 케그 포장				
			저알코올, 비살균, 여과 발효음료, 폴리머 포장 (PET, 등)				
			저온살균 여과 수제 저알코올 주류				
			저알코올 비여과 발효음료, 케그 포장				
			저온살균, 여과된 크바스(러시아 전통 음료, 주류)				
			케그 포장 크바스(러시아 전통 음료, 주류)				
	15-1. 전분류	전분 전분가공품	주정	건조 전분 (감자, 옥수수, 완두콩)			
				15-2. 밀가루류	밀가루		
				영양강화 밀가루			
				15-3.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땅콩 버터	구운 견과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굽지 않은 껍질 벗겨진 견과류	
				15-4. 시리얼류	시리얼류	비조리 시리얼	
						압출 건조 시리얼	
						모든 압출 건조 제품, 코코아제품 미포함	
						식용 기울(겨) 시리얼	
						식용 기울(겨) 시리얼 (열처리)	
						밀기울 시리얼	
				인스턴트 건조 시리얼 농축물			
				15-5. 찌쌀	찌쌀		
				15-6. 효소식품	효소식품		
				15-7. 기타 농산가공품	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	감자 반가공품, 급속냉동	
감자칩							
건조 감자 및 기타 뿌리식물, 건조 전에 데친							
건조 감자 및 채소, 건조 전 데치지 않은							
건조 매시트포테이토							
건조 버섯							
건조 코코넛							
과일 및 베리류 (건조 과일)							
과일 및 베리류 디저트, 반가공품							
과일 및 베리류 디저트, 반가공품 (이스트 포함)							
과일 및 베리류 디저트, 반가공품, 급속냉동							
과일 및 베리류 반가공품, 급속냉동, 반죽 케이싱에 있는							
과일 및 베리류, 동결건조 과일 푸레							
급속냉동 채소 커틀릿							
급속냉동 채소 커틀릿 (반가공품)							
급속냉동 채소 푸레, 반가공품							
급속냉동 채소: 신선 채소(전체), 데친 버섯							
냉동과일 디저트							
냉동과일 디저트 (이스트 추가)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미생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냉동과일 디저트; 당절임
			마늘 분말
			마늘 분말 (동결건조)
			미숙 핵과류 과일, 급속냉동
			베리류 껍데기, 냉동
			삶은 채소 샐러드 및 믹스, 급속냉동
			신선 베리류, 진공포장 및 냉동, 전체
			신선 채소, 전체, 데치지 않은, 급속냉동
			채소 및 과일 디저트
			채소 및 과일 디저트 (열건조)
			채소 분말 (동결건조)
			핵과류 과일 과육, 급속냉동
			핵과류 과일, 급속냉동
			향첨가 칩 및 압출 제품
			가니쉬: 끓인 채소 (드레싱 없는)
			가니쉬: 삶은 쌀, 파스타, 삶은 매시트포테이토 (드레싱 없는), 삶은 감자, 구운 (드레싱 없는)
			가니쉬: 삶은 쌀, 파스타, 삶은 매시트포테이토 (드레싱 없는), 삶은 감자, 튀김(드레싱 없는), 끓인 채소(드레싱 없는)
			계란, 통조림 채소, 과일 등이 추가된 생채소 샐러드
			계란, 통조림 채소, 과일 등이 추가된 생채소 샐러드, 드레싱 없이 염장 채소를 추가하지 않고 드레싱 있는 (마요네즈, 소스 등)
			계란, 통조림 채소, 과일 등이 추가된 생채소 샐러드, 드레싱 있는 (마요네즈, 소스 등)
			계란, 통조림 채소, 과일 등이 추가된 생채소 샐러드, 드레싱 있는 (마요네즈, 소스 등), 보존제 첨가
			드레싱 있는 가니쉬 (삶은 쌀, 파스타, 삶은 매시트포테이토, 삶은 감자, 튀김, 끓인 채소)
			뜨거운 수프 및 기타 뜨거운 요리: 보르쉬, 양배추 수프, 피클 수프, 카르파초 수프, 채소 수프, 브로스(broth), 파스타 및 감자 수프, 채소, 콩류, 시리얼
			뜨거운 수프 및 기타 뜨거운 요리: 파스타 및 감자 수프, 채소, 콩류, 시리얼
			삶은 채소 샐러드와 비네 그레트, 삶고, 튀김, 끓인 채소로 만든 요리
			삶은 채소 샐러드와 비네 그레트, 삶고, 튀김, 끓인 채소로 만든 요리, 드레싱 있는 (마요네즈, 소스 등)
			삶은 채소 샐러드와 비네 그레트, 삶고, 튀김, 끓인 채소로 만든 요리, 드레싱 있는 (마요네즈, 소스 등), 보존제 첨가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미생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삶은 채소 샐러드와 비네 그레트, 삶고, 튀긴, 끓인 채소로 만든 요리, 염장 채소와 드레싱 없는
			삶은 채소 샐러드와 비네 그레트, 삶고, 튀긴, 끓인 채소로 만든 요리, 염장 채소와 드레싱 없는, 드레싱 있는 (마요네즈, 소스 등)
			염장 채소 샐러드
			채소 및 과일 샐러드, 드레싱 없거나 있는 (마요네즈, 소스 등)
			채소 및 과일 샐러드, 드레싱 있는 (마요네즈, 소스 등)
			채소 및 과일 샐러드, 드레싱 있는 (마요네즈, 소스 등), 보존제 첨가
			채소 및 과일 샐러드: 드레싱 없는
			채소박, 과일박
			비농축 토마토 제품 (전체 통조림) 건조물 함량 12% 미만, 채소 주스용 제외
			살균 통조림: 곡물, 채소, 가금육 및 육류, 채소로 만든 파테(pate)를 포함한 내장 등으로 만든 사이드디쉬, 패티 및 다진 육류 포함
			살균 통조림: 소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등. 천연 곡물, 채소, 가금육 및 육류, 채소로 만든 파테(pate)를 포함한 내장 등으로 만든 사이드디쉬, 패티 및 다진 육류 포함
			통조림 채소 (pH 3.7 미만), 저온살균 과일 및 베리류, 소르브산 pH 4.0 미만의 음식용 통조림
			통조림 채소, pH 3.7-4.2 사이. 과일 및 채소 주스용 제외
			통조림: 버섯 및 자연산 버섯
			통조림: 버섯 및 절인 버섯
			통조림: 살구, 복숭아, 배, pH 3.8 미만, 과일 주스용을 제외하고 산을 첨가하지 않은
통조림: 채소, pH 4.2 이상			
16. 식육 가공품	16-1. 햄류	햄 생햄 프레스햄	저온살균 통조림 식품: 소고기 및 돼지고기, 다진 햄 및 수제 햄, 가금육
	16-2. 소시지류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머리고기, 살치촌
			간(liver) 소시지, 헤드치즈, 살치촌
			선지 소시지, 가금육 간(liver) 및 부산물
			선지 소시지, 간(liver) 소시지
			선지 소시지, 간(liver) 소시지 (유통기한이 2일 이상인 제품)
			선지 소시지, 간(liver) 소시지, 가금육 및 부산물 포함
			선지 소시지, 간(liver) 소시지, 헤드치즈(송아지, 돼지 머리 고기젤리), 살치촌, 간 파테(pate) 및(또는) 육류, 껍질 포함, 겔화 육류 (유통기한이 2일 이상인 제품)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미생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소시지 및 수렵육 식육가공품, 훈제 및 저크, 훈제 소시지, 삶고 훈제한, 삶은 소시지 및 식육가공품, 가금육, 훈제, 저크
			소시지 및 식육가공품, 가금육, 훈제, 저크, 슬라이스와 진공포장 포함
			조리된 소시지, 다진, 기체 조절 진공포장된 제품 포함
			가금육 부산물 파테(pate) 및 간(liver) 소시지
	16-3. 베이컨류	베이컨류	돈지 및 삼겹살, 염장, 훈제, 굵고-훈제한
	16-4. 건조 저장육류	건조저장육류	건조 가금육
			다진 가금육, 열건조한
			다진 닭고기, 동결건조
			다진 닭고기, 동결건조 및 얼처리
			육류 건조 내장 농축물 식품
		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천연케이싱	가금육 파테(pate)
			가금육 간(liver) 파테(pate)
			가금육 부산물 파테(pate) 및 간(liver) 소시지
			간(liver) 소시지 및 가금육 제품
			간(liver) 파테(pate) 및(또는) 육류, 껍질 포함
			간(liver) 파테(pate) 및(또는) 조류 포함 육류, 껍질 포함
			구운, 훈제 조리 육류, 다진, 기체 조절 진공포장된
			냉동 가금육 요리: 튀긴, 삶은, 소스 및 사이드디쉬와 함께 다진
			냉동 육류 요리 가공품: 다진 육류, 소스 첨가
			냉동 육류 요리 가공품: 모든 육류 부분 (소스 무첨가), 튀긴, 삶은
			냉동 육류 요리 가공품: 모든 육류 부분, 소스 무첨가, 튀긴, 삶은, 소스 첨가 다진 육류
	16-5. 양념육류		냉동 육류 요리 가공품: 육류 부분 (소스 첨가), 튀긴, 삶은
			다진 가금육 반가공품 (냉장, 냉각, 냉동)
			다진 가금육 요리
			다진 소고기, 돼지고기, 기타 수렵육
			다진 양념육
			다진 육류 반가공품: 성형, 브레딩한
			다진 육류 반가공품 (냉장, 냉동), 속을 채운(양배추, 호박 등으로), 다진 육류 함유 반가공품
			다진 육류 성형 반가공품(냉장, 냉동), 브레딩 포함; 반가공 다진 육류 함유 제품, 속을 채운 (양배추, 호박 등), 유통기한 1개월 이상
			다진 육류 요리
			뼈없는 육류 반가공품 (냉장, 냉각, 냉동), 마리네이드한
			뼈없는 육류 반가공품 (냉장, 냉각, 냉동), 마리네이드한: 덩어리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미생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육류 및 육류 함유, 가공육 반가공품, 모양을 만들어 브레딩한 제품 포함, 다진
			육류 반가공품: 육류-빼없는, 브레딩한, 향신료, 소스, 염장한; 빼없는 육류 블록 덩어리
			조리된 육류, 2등급, 3등급 육류로 만든, 슬라이스된 것 포함
			조리된 육류, 가공육 포함, 슬라이스된 것 포함
			조리된 육류, 삶거나 구운, 훈제-조리한, 구워서 훈제한, 구운, 슬라이스된 것 포함, 기체조절진공포장
			가금육, 토끼고기 요리, 삶은, 튀긴, 끓인, 구운 제품, 다진 가금육, 만두, 파이 등
			육류 및 식육가공품: 삶은, 튀긴, 끓인 육류, 필라프, 만두, 벨야시, 팬케이크, 다진 육류제품, 구운 것 포함
			젤화 가금육
			젤화 육류
			젤화 육류, 가금육
16-6. 식육 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젤리 (액상)	
16-7. 식육 함유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가금육 도체, 굵고, 삶아 훈제 또는 훈제, 저크	
		가금육 반가공품: 육류-빼 없는, 브레딩하지 않은	
		냉동 가금육 요리	
		냉동 육류 요리 가공품	
		육류 및 가금육, 조리된, 구운, 삶고 훈제한, 훈제, 저크	
		육류 및 가금육, 조리된, 훈제	
		육류, 가금육, 저크, 훈제	
		육류, 훈제 가금육	
		조리, 훈제 조리, 훈제 구운 육류	
		팬케이크, 육류 및 내장 등으로 속을 채운	
		곱창 포함 가금육 파이	
		훈제 조리된 육류 (턱, 발)	
		가금육 포함 육류, 훈제, 조리된, 삶은, 슬라이스된 것 포함	
		삶은 소고기, 가금육, 토끼고기, 돼지고기 등 (드레싱, 소스 없음)	
		육류 및 간(liver) 파테(pate)	
살균 통조림: 곡물, 채소, 가금육 및 육류, 채소로 만든 파테(pate)를 포함한 내장 등으로 만든 사이드디쉬, 패티 및 다진 육류 포함			
살균 통조림: 소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등. 천연 곡물, 채소, 가금육 및 육류, 채소로 만든 파테(pate)를 포함한 내장 등으로 만든 사이드디쉬, 패티 및 다진 육류 포함			
16-8. 포장육	포장육	가금육 도체, 냉장, 냉각, 냉동 포장된	
		기계 분리 냉동 육류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미생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17. 알가공품 류	17-1. 알가공품		기계로 뼈제거한 가금육, 냉장 뼈 잔여물, 블록 냉동한, 가금육 껍질, 가금육 부산물 및 반가공품
			기계로 뼈제거한 냉동 수렵육
			냉각, 냉장 육류 (모든 종류)
			냉동, 냉장 육류 (모든 종 수렵육)
			냉동 가금육 도체
			냉동 수렵육 도체, 자른
			냉동 육류
			냉동 육류, 뼈가 있거나 없는, 블록 손질
			냉장 가금육 도체
			냉장 육류 (모든 종류), 유통기한 7일 이상
			냉장 육류(모든 종류), 절단, 기체조절 및 진공포장된
			냉장 육류, 자른, 기체조절 및 진공포장된
			뼈없는 육류 덩어리, 손질된 냉동 육류
			뼈없는 육류 반가공품 (냉장, 냉각, 냉동), 작은 크기 육류 (모든 종류): 냉장 - 어린이, 식사요법식품용 육류 (모든 종류), 냉장, 자른, 기체조절진공포장된
			17-2. 알함유가공품
액상 전란: 저온살균된, 거른			
액상 전란: 거른			
액상 전란: 냉동			
저온살균 액상 전란, 냉동			
테이블 애그			
난백, 동결건조			
난분, 장 영양보충용			
난황, 동결건조			
테이블 알 및 기타 조류 알			
난분, 오믈렛 믹스			
오믈렛 건조 믹스			
계란 오믈렛(멜란지와 난분으로 구성), 유기농 채소 포함, 육류 제품 등, 계란 필링			
계란 요리: 삶은 계란, 오믈렛 (멜란지와 난분으로 구성), 유기농 채소 포함, 육류 제품 등, 계란 필링			
18. 유가공품	18-1. 우유류	우유 환원유	
	18-2. 가공유류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18-3. 산양유	산양유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미생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18-4. 발효유류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18-5. 버터유	버터유	
	18-6. 농축유류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18-7. 유크림류	유크림 가공유크림	크림 (시트러스, 바닐라, 초콜릿 등)
	18-8. 버터류	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18-9. 치즈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코티지치즈 요리: 만두, 찐 푸딩
	18-10. 분유류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18-11. 유청류	유청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18-12. 유당	유당	
	18-13.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단백가수분 해식품	
19. 수산가공 식품류	19-1. 어육 가공품류	어육살	냉장, 냉동 생선(해산물): 생선 필릿, 특수 드레싱 생선(바다생선), 다져서 모양을 만든 생선, 밀가루 포함
		연육	냉장, 냉동 생선(해산물): 생선 필릿, 특수 드레싱 생선(바다생선), 다진 생선, 밀가루 포함
		어육반제품	냉장, 냉동 생선: 다진 특수 조건
		어묵	냉장, 냉동 생선: 특수 드레싱 생선, 다진 생선, 다져서 모양을 만든 생선 제품, 밀가루 포함
		어육소시지	냉장, 냉동 생선: 특수 드레싱 생선, 다진 생선, 밀가루 포함 (진공포장 제품) 냉훈제 생선 제품, 어육소시지 및 다진 제품
		기타	다진 육류 제품 포함 냉훈제 생선, 자른 훈제 생선, 염장, 필릿 및 진공포장 포함
		어육가공품	다진 특별 조건 냉장, 냉동 수산물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미생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19-2. 젓갈류	젓갈	기타 어종 알 - 분해, 염장, 훈제, 건조
		양념젓갈	기타 어종 알: 분해, 염장 야스틱, 훈제, 건조
		액젓	기타 어종 알: 분해, 염장 야스틱, 훈제, 건조, 저온살균
		조미액젓	냉훈제 생선 제품, 염장, 향신료, 마리네이드한, 필릿, 슬라이스, 향신료, 사이드디쉬, 식물성 기름 포함
			다진 육류 제품 포함 냉훈제 생선, 자른 훈제 생선, 염장, 필릿 및 진공포장 포함
			보존처리한 생선 페이스트
			보존처리한 생선 페이스트, 단백질 페이스트
			보존처리한 수산물 페이스트, 식물성 기름, 필링, 소스 및 사이드디쉬 포함
			보존처리한 어류 및 비어류 수산물, 자른, 식물성 기름, 필링, 소스, 사이드디쉬 포함, 고명 미포함
			보존처리한 어류 및 비어류 수산물, 자른, 식물성 기름, 필링, 소스, 사이드디쉬 포함, 고명 미포함 (연어 포함)
			보존처리한 열처리 생선
			보존처리한 자른, 열처리 생선, 조개살
			보존처리한 조개살
			보존처리한 페이스트, 단백질 페이스트
			보존처리한 페이스트, 단백질 페이스트, 조개살
			보존처리한 페이스트, 조개살
			염장 과립 철갑상어 캐비어 및 연어 알
			염장 야스틱, 훈제, 건조 기타 어종 알
			염장 어란
			염장 연어 알 알갱이
			염장 연어 알 알갱이 - 통조림
			염장 연어 알 알갱이, 냉동 염장제품(야스틱 염장)
			염장 향신료 및 특수 염장 보존처리한 생선, 식물성 기름, 필링, 소스, 사이드디쉬 포함, 고명 미포함
			염장, 향신료 첨가, 마리네이드, 자른 생선, 속, 향신료, 사이드디쉬, 식물성 기름 포함
			염장, 향신료 첨가, 마리네이드한 생선
			염장, 향신료 첨가, 마리네이드한 생선, 현탁 포함 (진공포장)
			염장, 향신료 첨가, 마리네이드한 생선, 자른 생선 포함, 방부제 미포함, 슬라이스, 사이드디쉬, 식물성 기름 포함
			자른 생선, 훈제, 염장, 필릿, 진공포장 포함
			철갑상어 어란, 야스틱 염장
			철갑상어 캐비어 알갱이, 염장 과립 연어 알, 기타 저온살균 어란
			철갑상어 캐비어: 알갱이, 통조림, 압축, 염장 어란
			철갑상어 캐비어: 염장 연어, 기타 어종 어란
			철갑상어, 연어 제외 기타 어종 알 - 분해, 염장 야스틱, 훈제, 건조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미생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향신료 및 특수 염장 보존처리한 생선, 식물성 기름, 필링, 소스, 사이드디쉬 포함, 생선 페이스트로 만든
			향신료 및 특수 염장 보존처리한 생선, 자른 생선, 식물성 기름, 필링, 소스, 사이드디쉬 포함, 고명 미포함
			향신료 및 특수 염장 보존처리한 생선, 전체, 염장 포함
			향신료 및 특수 염장 보존처리한 생선, 전체를 포함; 프리저브 "페이스트" - 단백질 페이스트
			향신료 및 특수 염장 보존처리한 어류 및 非어류 수산물, 식물성 기름, 필링, 소스, 사이드디쉬, 조개살 포함
			훈제 바다생선, 자른 훈제, 염장, 필릿 포함
	19-3. 건포류	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 건포류	건조 생선 (진공포장)
			건조 해양 무척추동물
			건조, 현탁 생선
			기타 어종 알 - 분해, 염장, 훈제, 건조
			기타 어종 알: 분해, 염장 야스틱, 훈제, 건조
			기타 어종 알: 분해, 염장 야스틱, 훈제, 건조, 저온살균
			非어류 수산물 - 생조개, 건조
			자연 건조 생선 태양 건조 생선
	19-4. 조미김	조미김	
19-5. 한천	한천	한천, 알긴산나트륨	
19-6.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 수산물 가공품	간(liver), 냉동 생선 머리	
		非어류 수산물: 갑각류 및 기타 무척추동물: 생, 냉장, 냉동	
		건조 단백질 및 해양 非어류 제품: 건조 혼합 브로스(broth)(육수), 부용 큐브 및 페이스트, 분리 단백질	
		건조 단백질 및 해양 非어류 제품: 혼합 가수분해물 (MiG-K), 혼합 단백질-탄수화물 농축물	
		건조 단백질 및 해양 非어류 제품: 혼합 가수분해물 및 단백질-탄수화물 농축물	
		건조 단백질 및 해양 非어류 제품: 혼합 단백질-탄수화물 농축물, 진공포장된	
		건조 생선 수프, 조리 필요	
		건조 해조류	
		겔화 요리,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캐비어 요리, 비열처리	
		냉장, 냉동 생선	
		냉장, 냉동 조개	
		냉훈제 생선 제품, 슬라이스 포함	
		냉훈제 생선, 슬라이스 포함 자른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열처리 제품, 겔화 식품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미생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캐비어 요리, 혼합 후 비열처리
			다진 냉장, 냉동 수산물, 특별한 조건 제외, 非어류
			非어류 수산물: 갑각류 및 기타 무척추동물류 (두족류, 복족류, 극피동물류 등): 생, 냉장, 냉동
			非어류 해양 수산물 가수분해물, 조개살
			비열처리 요리 제품, 생선 및 해산물 샐러드, 드레싱 없음
			비열처리 요리 제품, 생선 및 해산물, 캐비어 - 다양한 요리용
			비열처리 요리 제품: 다진 염장 생선, 패티, 파스타, 청어, 캐비어, 크릴 등
			비열처리 요리 제품: 청어, 캐비어, 크릴 등
			삶아서 냉동한 제품
			생선 및 해산물 샐러드, 드레싱 없음
			슬라이스, 절단 포함 냉훈제 생선, 자른 훈제 생선, 필링 및 진공포장 포함
			신선 해조류, 냉동 및 건조 포함
			열처리 수산물, 식물성 기름, 필링, 사이드디쉬 포함, 고명 미포함
			열처리한 요리 제품, 다진 제품. 파스타, 패티, 구운, 튀긴, 삶은, 필링을 넣은 요리 등
			열처리한 요리 제품: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제품, 냉동 포함. 비열처리: 다진 염장 생선, 패티, 파스타
			열처리한 요리 제품: 다져서 구운, 튀긴, 삶은, 밀가루 및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제품으로 속을 채운, 진공포장 제품
			열처리한 요리 제품: 생선 및 다진 제품. 파스타, 패티, 구운, 튀긴, 삶은, 밀가루 및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제품, 결화 식품으로 속을 채운
			열처리한 요리 제품: 생선 및 다진 제품. 파스타, 패티, 구운, 튀긴, 삶은, 밀가루로 속을 채운, 냉동 포함
			열처리한 캐비어 요리 제품
			열훈제, 냉훈제 생선 제품, 슬라이스 포함
			열훈제, 냉훈제 생선 제품, 진공포장
			열훈제, 냉훈제 생선 제품, 자르지 않은
			이리 및 어란 (바다생선)
			이리 및 캐비어 (냉장 및 냉동)
			자른 생선, 훈제, 염장, 필링, 진공포장 포함
			저온살균한 기타 어종 알
			조리된 냉동 수산물: 새우, 게, 크릴 등으로 만든 갑각류, 조개류, 연체동물류 요리 (부분 조각)
			조리된 냉동 제품 - 구조화된
			조리된 냉동 제품: 냉동 생선 요리, 생선을 곁들이거나 생선으로 속을 채운 팬케이크 (진공포장)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미생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조리된 냉동 제품: 냉동 생선 요리, 생선을 곁들이거나 생선으로 속을 채운 팬케이크, 진공포장 포함
			조리된 냉동 제품: 냉동 생선 요리, 생선을 곁들이거나 생선으로 속을 채운 팬케이크, 진공포장 포함 (부분 조각 생산)
			조리된 냉동 제품: 냉동 생선 요리, 진공포장 포함
			조리된 냉동 제품: 냉동 어류 및 non-어류 수산물 요리, 진공포장 포함
			조리된 냉동 제품: non-어류 수산물 - 새우, 게, 크릴 등으로 만든 갑각류, 조개류, 연체동물류 요리 (진공포장)
			조리된 냉동 제품: non-어류 수산물: 새우, 게, 크릴 등으로 만든 갑각류, 조개류, 연체동물류 요리 (다진)
			조리된 냉동 제품: non-어류 수산물: 새우, 게, 크릴 등의 조개류, 연체동물류
			철갑상어 캐비어 알갱이 및 캐비어 유사제품
			철갑상어 캐비어 알갱이, 저온살균
			철갑상어 캐비어 알갱이, 저온살균, 기타 저온살균 어종의
			철갑상어 캐비어: 알갱이, 통조림, 압축, 캐비어 유사제품, 단백질성 포함
			철갑상어, 연어 제외 기타 어종 알 - 분해, 염장 야스틱, 훈제, 건조
			캐비어 요리 제품
			캐비어 요리 제품: 다용도
			캐비어 요리, 열처리
			캐비어 유사제품
			캐비어 유사제품, 단백질 포함
			해양 수산물, 냉훈제 생선, 자른 것 포함
			해조류 잼
			훈제 바다생선, 자른 훈제, 염장, 필릿 포함
			훈제 생선 제품
			겉화 생선 (액상)
			삶고 구운 생선, 마리네이드한
			삶은 생선, 마리네이드, 끓인, 튀긴, 구운
			생선 요리: 삶고 데친, 끓인, 로스팅한, 구운
			생선 요리: 삶은, 끓인, 튀긴, 구운, 생선 커틀렛 요리 (커틀렛, 즈라지, 슈니첼, 토마토 소스 미트볼)
			생선 요리: 삶은, 끓인, 튀긴, 구운, 생선 커틀렛 요리 (커틀렛, 즈라지, 슈니첼, 토마토 소스 미트볼)
			생선 커틀릿 요리 (커틀릿, 즈라지, 슈니첼, 토마토 소스 미트볼)
			반통조림 생선, 유리병에 저온살균된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미생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통조림: 생선, 생선 간 및 non-어류 수산물, 병제품, 알루미늄캔 제품, 주석캔 제품
20. 동물성가공식품류	20-1.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또는 기타동물성 가공식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기타동물성 가공식품	건조 혈장 농축물
			알부민 식품
			혈액 식품
			혈액 식품, 건조 알부민, 혈장 농축물 등 가공품
	20-2. 곤충 가공식품	곤충가공식품	혈액 푸딩
	20-3. 자라 가공식품	자라분말	
자라분말제품 자라유제품			
	20-4. 추출 가공식품	추출가공식품	젤라틴, 대량 생산용 젤라틴, 어린이 및 다이어트용
21. 벌꿀 및 화분 가공품	21-1. 벌꿀류	벌집꿀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	
		21-2. 로얄젤리류	로얄젤리 로얄젤리제품
	21-2. 화분식품	가공화분 화분함유제품	
22. 즉석식품류	22-2. 즉석섭취·편의 식품류	22-1. 생식류	생식제품 생식함유제품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즉석조리식품	건조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수프, 조리 필요 건조 버섯 수프, 조리 필요 건조 브로스(broth) 계란, 통조림 채소, 과일 등이 추가된 생채소 샐러드 계란, 통조림 채소, 과일 등이 추가된 생채소 샐러드, 드레싱 없이 염장 채소를 추가하지 않고 드레싱 있는 (마요네즈, 소스 등) 계란, 통조림 채소, 과일 등이 추가된 생채소 샐러드, 드레싱 있는 (마요네즈, 소스 등) 계란, 통조림 채소, 과일 등이 추가된 생채소 샐러드, 드레싱 있는 (마요네즈, 소스 등), 보존제 첨가 뜨거운 수프 뜨거운 수프 및 기타 뜨거운 요리 브로스(broth) 브로스(broth) 건조 농축물, 향신료 포함, 조리 필요 우유 수프 인스턴트 건조 시리얼 농축물
		즉석섭취 요리(점심식사용) 농축물 (인스턴트 수프)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미생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즉석조리 요리, 가금육, 생선, 진공 포장 포함 소비자용 포장된
			즉석조리 피자
			차가운 수프
			차가운 수프: 보르쉬, 초록 양배추 고기 수프, 생선, 계란 (사워크림 드레싱 없는)
			차가운 수프: 아크로시카, 크바스에 채소, 육류, 케피르, 비트수프, 보트비니아, 보르쉬, 초록 양배추 고기 수프, 생선, 계란 (사워크림 드레싱 없는)
			차갑고 단 수프 및 수프 튀레, 통조림 및 건조 과일 및 베리류로 만든
			채소 및 과일 샐러드, 드레싱 없거나 있는 (마요네즈, 소스 등)
			채소 및 과일 샐러드, 드레싱 있는 (마요네즈, 소스 등)
			채소 및 과일 샐러드, 드레싱 있는 (마요네즈, 소스 등), 보존제 첨가
			채소 및 과일 샐러드: 드레싱 없는
			햄버거, 치즈버거, 즉석섭취 샌드위치
			조리가 필요 없는 압출기술 코스요리용 식품
			육류, 가금육, 생선, 훈제 육류 샐러드, 드레싱 없는
			육류, 가금육, 생선, 훈제 육류 샐러드, 드레싱 없는, 드레싱 있는 (마요네즈, 소스 등)
			육류, 가금육, 생선, 훈제 육류 샐러드, 드레싱 있는 (마요네즈, 소스 등)
육류, 가금육, 생선, 훈제 육류 샐러드, 드레싱 있는 (마요네즈, 소스 등), 보존제 첨가			
22-3. 만두류	만두 만두피		
23. 기타식품류	23-1. 효모식품	효모식품	건조 이스트, 베이커리용 베이커리용 이스트, 압축
	23-2. 기타 가공품	기타가공품	대두 추출 가수분해 단백질
			대두단백질농축물, 대두분말
			분리물, 식물성 단백질 농축물, 대두분말
			분리물, 식물성 단백질 농축물, 대두분말 (어린이용)
			사과 살럿(푸딩)
			해바라기 단백질 농축물
			식물성 식이 보충제, 액상 무균 충전
			키슬, 건조 과일 및 베리류
			건조 과일-키슬 (러시아 과일 디저트)
24. 그외분류	장기보존식품	병통조림식품	대두 기반 무균 병음료
			반통조림 생선, 유리병에 저온살균된
			비농축 토마토 제품 (전체 통조림) 건조물 함량 12% 미만, 채소 주스용 제외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미생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살균 통조림: 곡물, 채소, 가금육 및 육류, 채소로 만든 파테(pate)를 포함한 내장 등으로 만든 사이드디쉬, 패티 및 다진 육류 포함	
			살균 통조림: 소고기, 돼지고기, 말고기 등. 천연 곡물, 채소, 가금육 및 육류, 채소로 만든 파테(pate)를 포함한 내장 등으로 만든 사이드디쉬, 패티 및 다진 육류 포함 식물성 식이 보충제, 액상 무균 충전	
			잼, 프리저브, 콤포트(compote), 과일 및 베리류, 설탕 및 기타 과일과 으갠, 과일 및 베리류 설탕 농축물, 살균제품	
			저온살균 통조림 식품: 소고기 및 돼지고기, 다진 햄 및 수제 햄, 가금육	
			통조림 채소 (pH 3.7 미만), 저온살균 과일 및 베리류, 소르브산 pH 4.0 미만의 음식용 통조림	
			통조림 채소, pH 3.7-4.2 사이. 과일 및 채소 주스용 제외	
			통조림: 버섯 및 자연산 버섯	
			통조림: 버섯 및 절인 버섯	
			통조림: 살구, 복숭아, 배, pH 3.8 미만, 과일 주스용을 제외하고 산을 첨가하지 않은	
			통조림: 생선, 생선 간 및 非어류 수산물, 병제품, 알루미늄캔 제품, 주석캔 제품	
			통조림: 채소, pH 4.2 이상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반가공 냉동 피자
식품원료	식물성 원료			
	동물성 원료			
그외 분류	그외 분류	미네랄워터, 천연, 테이블, 의료용 물		
		음용수, 인공 미네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들은 그 외의 분류로 구분하였으며, aT KATI에도 올라가 있음

*유해물질규정(미생물) 내 식품유형 중 원료와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품목 제외

**[표 2-11] 한국 식품공전 분류에 따른 카자흐스탄 유해물질규정(미생물)
“영아용/영아용 특수용도식품” 식품유형 분류**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미생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10. 특수용도 식품	10-1.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유	무균 발효유제품, 유가공 시설 생산	
		성장기용 조제유	살균 우유 혼합물, 살균 무균 병우유 및 크림, 재구성된 저온살균 혼합물, 스타터 배양 (액상), 유가공 시설 생산	
			살균 우유 혼합물, 살균우유 및 크림, 무균 병입, 탈수 코티지치즈, 유가공 시설 생산	
				살균 우유 혼합물, 살균우유 및 크림, 살균 무균 필링, 재구성된 저온살균 혼합물, 발효유제품, 무균 필링, 우려낸 차 (로즈힙, 블랙커런트 등), 스타터 배양(액상), 유가공 시설 생산
				재구성된 저온살균 혼합물, 유가공 시설 생산
				건조 우유 성분, 맥아 추출물 함유
				건조 우유 성분, 맥아 추출물 함유 (액상 영아용 식품용)
				건조 우유 성분, 액상 영아용 식품용 탄수화물-단백질 농축물 함유
				무지방 건조 우유, 영아용 식품용
				무지방 건조 우유, 화학적 처리 하지 않은, 건조 영아용 식품용
			분유, 지방 질량 25%, 건조 탈지우유	
		생우유 (1등급)		
		생우유 (프리미엄 등급)		
	10-2. 영아용 조제식	영아용 조제식	분리대두단백질	
	10-3. 성장기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분리대두단백질	
	10-4. 영아용 곡류 조제식	영아용곡류 조제식	밀가루 및 시리얼, 건조, 유제품프리 인스턴트	
			포리지(porridge) (즉석조리)	
			조리가 필요한 밀가루 및 시리얼	
			조리가 필요한 밀가루 및 시리얼, 건조 유제품프리	
			포리지(porridge), 조리 필요	
			가공 곡물 가루	
			건조된 가공 쌀가루, 메밀, 귀리, 호밀	
			당밀, 저당, 분말 포함	
			대두 기름	
			쌀가루, 메밀, 귀리, 미가공 호밀	
	쌀가루, 메밀, 귀리, 미가공 호밀가루			
	저젓당 당밀, 분말			
		옥수수 시럽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미생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옥수수 시럽, 건조 포함
			옥수수 시럽, 저당, 분말 포함
정제 탈취 대두 기름			
정제 탈취 옥수수 기름			
프리미엄 감자 전분			
프리미엄 옥수수 전분			
10-5. 기타 영유아식		기타영·유아식	건조 유제품프리 인스턴트 포리지(porridge) (즉석조리), 인스턴트 쿠키
			건조 포리지(porridge) - 유제품프리 인스턴트 (즉석조리)
			영아용 허브음료 (허브차)
			우려낸 차 (로즈힙, 블랙커런트 등), 유가공 시설 생산
			유제품 포리지(porridge) 가공품, 유가공 시설 생산
			인스턴트 비스킷
			저온살균 육류 소시지
			저온살균 육류 소시지 (1.5세 이상 취식 가능)
			카드, 카드제품, 카드 기반 제품, 호산성 페이스트, 저젓당 단백질 페이스트, 유가공 시설 생산
			코티지치즈, 카드제품, 호산성 페이스트, 저젓당 단백질 페이스트, 탈수 카드, 유가공 시설 생산 우유
			포리지(porridge) 가공품
			탈수 코티지치즈, 우유 포리지(porridge) 가공품, 우려낸 차 (로즈힙, 블랙커런트 등), 유가공 시설 생산
			건과류, 당절임과일, 럼 과일로 글레이즈된 머핀
			급속냉각 생선 요리 가공품, 진공포장 포함
			머핀, 가루설탕 아이싱된, 견과류, 당절임과일, 럼
			과일로 글레이즈된
			바다생선 반가공품
			반가공 육류, 생고기
			반가공 육류, 생고기를 다진
			반가공 육류, 생고기를 브레딩한
			베이커리 제품, 가루설탕 아이싱 케이크
			베이커리 제품, 과일 필링 및 당절임과일, 양귀비 씨앗, 견과류로 채워진 비스킷 롤
			베이커리 제품, 비스킷, 크래커
			비스킷 롤, 과일 필링이 채워진, 당절임과일, 양귀비 씨앗, 견과류가 들어간
			비스킷 롤, 크림 지방 필링이 채워진
			비스킷 롤, 크림 지방, 과일 필링이 채워진, 당절임과일, 양귀비 씨앗, 견과류가 들어간
			비스킷, 크래커
			생고기 반가공품
			생고기 반가공품 및 우유 기반 첨가물 첨가된 인스턴트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미생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파스타
			생선 및 해산물 샐러드, 열처리 하지 않은, 드레싱 없는 설탕 쿠키, 초콜릿 아이싱된, 버터와 얇은 크림층, 필링으로 채워진
			소시지
			소시지, 유통기한 5일 이상
			어류 및 non-어류 수산물 반가공품
			어류 및 non-어류 수산물 반가공품 - 구조화된 다진 제품
			어류 및 non-어류 수산물 반가공품 - 구조화된 제품 ("게 스틱" 등)
			어류 및 non-어류 수산물 반가공품 - 급속냉각 생선 요리 가공품, 진공포장 포함
			어류 및 non-어류 수산물 반가공품, 진공포장
			어류 및 non-어류 수산물 요리, 열처리: 생선 및 생선 다진 제품, 굵고 삶은, 냉동 포함
			어류 및 non-어류 수산물 요리, 열처리: 생선 및 생선 다진 제품, 굵고 삶은, 냉동, 포장, 구조화된 제품 포함 ("게 스틱" 등)
			어류 및 non-어류 수산물 요리, 열처리: 생선 및 해산물 샐러드, 열처리 하지 않은, 드레싱 없는, 구조화된 제품 ("게 스틱" 등)
			열처리 하지 않은: 드레싱 없는 생선 및 해산물 샐러드 와플, 필링 없는, 과일, 풍당 지방 필링으로 채워진, 호두-프랄린 필링, 초콜릿 글레이즈된
			와플, 필링 없는, 과일, 풍당, 지방 필링으로 채워진
			와플, 호두-프랄린 필링, 초콜릿 글레이즈된
			육류로 만든 소시지, 파테(pate), 음식, 과일 및 당철임과일로 속을 채운 베이커리, 비스킷롤, 양귀비 씨앗, 견과류, 진저브레드, 비스킷, 크래커
			육류 소시지, 패티, 요리
			육류 소시지, 패티, 요리, 어류 및 non-어류 수산물로 만든 반가공품
			육류 파테(pate), 요리
			육류 패티 및 요리, 유통기한 72시간 이상
			인스턴트 파스타, 식물성 기반 첨가물 첨가한
			인스턴트 파스타, 유제품 기반 첨가물 첨가한
			진저브레드
			컵케이크 및 롤, 밀봉포장
			컵케이크 및 롤, 밀봉포장, 얇은 크림층과 필링을 넣은 필링 없는 진저브레드
			필링 채운 진저브레드
			건조 옥수수 시럽, 수입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미생물)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한국어)
			건조 탄수화물-단백질 모듈, 유청치즈에서 얻은 건조 혈액 식품 과립 설탕, 정제 유당 냉동 수렴육 냉동 수렴육, 블록 및 조각 냉장 가금육 부산물 냉장 닭고기, 육계 냉장 수렴육 냉장 조류 녹인 가금육 지방 뼈 제거 육류, 뼈 덩어리, 다리 및 가슴 포함 신선 생선, 냉장, 약냉동, 냉동 정제 유당 정제 탈취 식물성 기름 정제 탈취 해바라기 기름 젖당 식품 프리미엄 버터
	10-6.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환자용식품 선천성 대사질 환자용 식품 유단백알레르기 영·유아용 특수 조제식품 영·유아용 특수 조제식품	유단백질 농축물 유청단백질 농축물, 전기투석, 한외여과 전기투석으로 얻은
	10-7.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0-8. 임산·수유부 용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들은 그 외의 분류로 구분하였으며, at KATI에도 올라가 있음

*유해물질규정(미생물) 내 식품유형 중 원물과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품목 제외

**[표 2-12] 한국 식품공전 분류에 따른 카자흐스탄 유해물질규정(병원성미생물, 방사성물질)
내 식품유형 분류**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병원성미생물, 방사성물질)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 (병원성 미생물)	카자흐스탄 식품유형(방사성물질)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사탕과자류	
		추잉껌	추잉껌	
		빵류	밀가루 및 시리얼 제품 (조리 필요 없는 시리얼, 계란 파스타, 속, 기울 및 식이섬유), 토핑이 있는 빵	빵 및 베이커리 제품
			사워도우 페이스트리	
떡류				
2. 빙과류	2-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저지방아이스 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비유지방아이스 스크림		
		아이스크림믹스 저지방아이스 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샤베트믹스 비유지방아이스 스크림믹스	우유 및 유제품, 소프트 아이스크림용 건조 믹스 포함 (생우유, 생탈지우유 및 생크림, 살균, UHT 무균 사전 포장된, 발효, 건조, 응축 제품, 치즈 및 가공 치즈 제품, 녹인 버터, 유지방, 식물성 크림(ghee) 혼합물 제외)	
	2-3. 빙과	빙과		
	2-4. 얼음류	식용얼음 어업용얼음		
3. 코코아가공 품류 또는 초콜릿류	3-1. 코코아 가공품류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 코코아가공품	코코아 제품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병원성미생물, 방사성물질)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 (병원성 미생물)	카자흐스탄 식품유형(방사성물질)
	3-2. 초콜릿류	초콜릿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초콜릿 및 초콜릿 제품	
4. 당류	4-1. 설탕류	설탕 기타설탕		
	4-2. 당시럽류	당시럽류	시럽	
	4-3. 올리고당류	올리고당 올리고당가공품		
	4-4. 포도당	포도당		
	4-5. 과당류	과당 기타과당		
		4-6. 엿류	물엿 기타엿 덱스트린	
	4-7. 당류 가공품류	당류가공품류		
	5. 잼류		잼 기타잼	
6. 두부류 또는 목류		두부 유바 가공두부 목류		
	7. 식용유지류	7-1. 식물성유 지류의 모든 세분류는 카 자흐스탄 유 해물질(세슘, 스트론튬) 규 정 내 우측의 식품유형("식 물성 기름")에 모두 해당됨		식물성 기름
		콩기름(대두유)		
		옥수수기름 (옥배유)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미강유(현미유)				
참기름 추출참깨유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병원성미생물, 방사성물질)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 (병원성 미생물)	카자흐스탄 식품유형(방사성물질)	
		들기름			
		추출들깨유			
		홍화유(사플라 워유 또는 잇 꽃유)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			
		(면실유)			
		땅콩기름			
		(낙화생유)			
		올리브유			
		팜유			
		팜올레인유			
		팜스테아린유			
		팜핵유			
	야자유				
	고추씨기름				
	기타식물성유지				
	7-2. 동물성유지류	식용우지			
		원료우지			
		식용돈지			
		원료돈지			
	7-3. 식용유지가공품	기타동물성유지			
		혼합식용유			
		향미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류			마가린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식물성 크림 스프레드		식물성 크림 스프레드, 녹인 식물성 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마가린, 유지방 대체품, 코코 아버터 대체품, 코코아버터 개량제, SOS타입 코코아버 터 대체품, POP타입 코코아 버터 대체품, 비로르산 비템 퍼링 코코아버터 대체품, 로 르산 비템퍼링 타입, 녹인 혼합물, 스프레드, 식물성 기 름 크림	특수용도 지방, 요리용, 제과용, 베이커리용 정제 탈취 경화유지 기름 (지방) 치환 정제 탈취 유지방 대체품, 코코아버터 대체품, SOS-타입 코코아버터 개량제, POP-타입 코코아버터 대체품,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병원성미생물, 방사성물질)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 (병원성 미생물)	카자흐스탄 식품유형(방사성물질)	
			특수용도 지방, 조리용, 제과류용, 베이커리용 포함	비템퍼링 코코아버터 대체품, 식물성 지방 스프레드, 녹인 식물성 지방 혼합물, 식물성 기름 기반 소스, 마요네즈, 마요네즈 소스, 식물성 기름 크림	
8. 면류		생면		밀가루, 곡류, 플레이크, 파스타	
		숙면			
		건면		밀가루, 곡류, 플레이크, 파스타	
		유탕면			
9. 음료류	9-1. 다류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커피			
	9-3 과일채소류음료	농축과·채즙	신선하게 짜낸 주스, 저온살균, 농축 주스, 농축 과일 음료 및 농축 과일 및 채소 쥬레, 냉동 포함 신선하게 짠 주스		
		과·채주스 과·채음료			
	9-4. 탄산음료류	탄산음료	탄산수	청량음료	
		탄산수			
	9-5. 두유류	원액두유	가공두유		
		가공두유			
9-6. 발효음료류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발효음료		
	효모음료				
9-7. 인삼, 홍삼음료	인삼	홍삼음료			
	홍삼음료				
9-8. 기타음료	혼합음료 음료베이스		음료용 농축물 및 믹스		
10. 특수용도식품	10-1.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유	영아용 식품: 맞춤형, 초기 및 후속 영아용 이유식 (인스턴트), 분유, 인스턴트 조제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병원성미생물, 방사성물질)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 (병원성 미생물)	카자흐스탄 식품유형(방사성물질)
		성장기용 조제유	영아용 식품: 맞춤형, 초기 및 후속 영아용 이유식 (인스턴트), 분유, 인스턴트 조제 (살균, UHT 무균포장 제품 제외)	
			영아용 식품: 영아용 조제식, 곡물,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용 인스턴트 분유	
			영유아용 분유	
10-2. 영아용 조제식	영아용 조제식	미취학 및 취학 연령 아동용 어린이 영양보충용 식품 (무균 충전재 없이 포장된 UHT 우유 제외)		
		영아용 식품: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용 식이보충식품 포함 특수용도식품		
		영아용 조제식, 저온살균		
10-3. 성장기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미취학 및 취학 연령 아동용 어린이 영양보충용 식품 (무균 충전재 없이 포장된 UHT 우유 제외)		
10-4.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영·유아용곡류 조제식	영아용 식품: 곡물 기반 보완식품: 조리가 필요한 밀가루 및 시리얼		
		영아용 식품: 영아용 조제식, 곡물,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용 인스턴트 분유 영아용 허브 음료 (허브차)		
10-5. 기타 영·유아식	기타영·유아식	영유아용 기타 식품, 어린이용 식이보충 식품 포함: 승화 육류 및 우유 기반, 저단백질 식품, 부분 열처리 필요한 우유 혼합물, 무균 충전된 액상 유제품 믹스, 열처리 필요한 영아용 분유 (살균, UHT 무균 사전 포장된, 통조림 제품 제외); 건조 시리얼 (건조 제품)	즉석섭취 특수 영아용 식품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병원성미생물, 방사성물질)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 (병원성 미생물)	카자흐스탄 식품유형(방사성물질)
			영유아용 우유 기반 기타 식품 (살균, UHT무균 사전 포장된 제품 제외); 건조 시리얼 - 건조 제품	
			미취학 및 취학 연령 아동용 어린이 영양식품: 식육 가공품 및 반가공 어류, 非어류 수산 가공품, 육류 요리 및 스프레드, 식육 가공품(소시지), 우유 및 유제품 (살균, UHT 무균포장 제품 제외)	
			영아용 식품, 우유 기반 건조 (건조 곡물 제외), 식이영양보충요법용 특수용도식품 포함	
	10-6.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환자용식품	식이영양보충요법용 특수용도식품 (승화 육류 및 우유 기반, 저단백질 식품 제외)	
		선천성 대사질 환자용 식품	식이영양보충요법용 특수용도식품: 미숙아 및 LBW 유아용 제품, 고단백 분유, 저유당 및 무유당 제품 (살균, UHT 무균포장 제품 제외)	
		유단백알레르기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영아용 식품: 미숙아 및(또는) 작은 아기용 건조 식품 (건조)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10-7.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0-8. 임신·수유부용 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	임산부 및 수유부용 우유 기반 식품	
			임산부 및 수유부용 유제품, 대두 기반 식품	
11. 장류		한식메주 개량메주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병원성미생물, 방사성물질)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 (병원성 미생물)	카자흐스탄 식품유형(방사성물질)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12. 조미식품	12-1. 식초	발효식초 희석초산	마요네즈, 식물성 기름 기반 소스				
	12-2. 소스류	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12-3. 카레(커리)	카레(커리)분 카레(커리)					
	12-4.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고춧가루 실고추					
	12-5.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향신료조제품			향신료, 허브, 견과류, 유지종자		
	12-6. 식염	천일염 재제소금 (재제조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13. 절임류 또는 조림류	13-1. 김치류			김치속 김치		
		13-2. 절임류			절임식품 당절임	채소, 감자, 버섯, 과일, 데치거나 삶은, 냉동, 건조, 피클, 염장 -가공품 및 비살균 가공품	
13-3. 조림류		조림류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병원성미생물, 방사성물질)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 (병원성 미생물)	카자흐스탄 식품유형(방사성물질)
14. 주류		탁주		
		약주		
		청주		
		맥주	맥주 및 맥주 기반 음료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15. 농산 가공식품류	15-1. 전분류	전분 전분가공품		
	15-2. 밀가루류	밀가루	밀가루 및 시리얼 제품 (조리 필요 없는 시리얼, 계란 파스타, 속, 기울 및 식이섬유), 토핑이 있는 빵	밀가루, 곡류, 플레이크, 파스타
		영양강화 밀가루		
	15-3. 땅콩 또는 견과류가 공품류	땅콩 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향신료, 허브, 견과류, 유지종자	
	15-4. 시리얼류	시리얼류	밀가루 및 시리얼 제품 (조리 필요 없는 시리얼, 계란 파스타, 속, 기울 및 식이섬유), 토핑이 있는 빵	밀가루, 곡류, 플레이크, 파스타
	15-5. 찌쌀	찌쌀		
	15-6. 효소식품	효소식품		
15-7. 기타 농산가공품	과채가공품	건조 채소 및 감자 가공품 신선 채소, 자르거나 데친 과일 및 채소 제품, 냉동 포함 채소 및 감자, 데치거나 냉동한 제품, 샐러드, 신선 채소 및 과일;	건조 버섯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채소, 감자, 버섯, 과일, 데치거나 삶은, 냉동, 건조, 피클, 염장 -가공품 및 비살균 가공품	와일드베리 및 통조림 제품	
	기타 농산가공품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병원성미생물, 방사성물질)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 (병원성 미생물)	카자흐스탄 식품유형(방사성물질)
16. 식육가공품	16. 식육가공품의 모든 중/세분류는 카자흐스탄 유해물질(병원성미생물) 규정 내 우측의 식품유형("육류 및 식육가공품, 내장, 돈지 및 가공품 (혈액 식품 제외)", "육류 및 식육가공품; 내장, 돈지 및 가공품")에 모두 해당됨		육류 및 식육가공품, 내장, 돈지 및 가공품 (혈액 식품 제외)	
			육류 및 식육가공품; 내장, 돈지 및 가공품	
	16. 식육가공품의 모든 중/세분류는 카자흐스탄 유해물질(세균, 스트렙토) 규정 내 우측의 식품유형("육류 및 식육가공품, 내장")에 모두 해당됨			육류 및 식육가공품, 내장
	16-1. 햄류	햄 생햄 프레스햄		
	16-2. 소시지류	소시지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16-3. 베이컨류	베이컨류		
	16-4. 건조저장육류	건조저장육류		
	16-5. 양념육류	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천연케이싱		
	16-6. 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16-7. 식육함유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16-8. 포장육	포장육			
17. 알가공품류	17-1. 알가공품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조류 알 및 가공품	
	17-2. 알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조류 알 및 가공품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병원성미생물, 방사성물질)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 (병원성 미생물)	카자흐스탄 식품유형(방사성물질)
18. 유가공품	18. 유가공품의 모든 중/세분류는 카자흐스탄 유해물질(병원성미생물) 규정 내 우축의 식품유형("우유 및 유제품 (살균, UHT 무균포장 제품 제외)")에 모두 해당됨		우유 및 유제품 (살균, UHT 무균포장 제품 제외)	
	18-1. 우유류	우유 환원유	살균 우유 혼합물, 유가공 시설에서 포장 살균한 우유 및 크림	우유 및 유가공품 (농축, 응축, 통조림, 건조, 치즈 및 치즈 제품, 우유 버터 및 버터 페이스트, 식물성 버터 스프레드, 식물성 버터 혼합물, 유단백질 농축물, 락툴로스, 유당, 카세인, 유단백 가수분해물 제외)
	18-2. 가공유류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우유 및 유가공품 (농축, 응축, 통조림, 건조, 치즈 및 치즈 제품, 우유 버터 및 버터 페이스트, 식물성 버터 스프레드, 식물성 버터 혼합물, 유단백질 농축물, 락툴로스, 유당, 카세인, 유단백 가수분해물 제외)
	18-3. 산양유	산양유		
	18-4. 발효유류	발효유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18-5. 버터유	버터유		
	18-6. 농축유류	농축우유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농축 유가공품; 통조림 우유, 유제품 성분, 우유 함유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병원성미생물, 방사성물질)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 (병원성 미생물)	카자흐스탄 식품유형(방사성물질)	
	18-7. 유크림류	유크림	UHT 크림(무균포장하지 않은 캔제품)		
		가공유크림	살균 우유 혼합물, 유가공 시설에서 포장 살균한 우유 및 크림		
	18-8. 버터류	버터 가공버터 버터오일		버터, 우유 버터 페이스트, 유지방	
	18-9. 치즈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치즈 및 치즈제품, 치즈 페이스트, 영아용 식품 포함	치즈 및 치즈 제품	
	18-10. 분유류	전지분유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분유	건조 우유 가공품, 동결 건조	
	18-11. 유청류	유청			우유 및 유가공품 (농축, 응축, 통조림, 건조, 치즈 및 치즈 제품, 우유 버터 및 버터 페이스트, 식물성 버터 스프레드, 식물성 버터 혼합물, 유단백질 농축물, 락툴로스, 유당, 카세인, 유단백 가수분해물 제외)
		농축유청			
	18-12. 유당	유당			
	18-13. 유단백가수분 해식품	유단백가수분 해식품			
19. 수산가공식품류	19. 수산가공식품의 모든 중/세분류는 카자흐스탄 유해물질(병원성 미생물) 규정 내 우축의 식품유형("어류, 비어류 수산물 가공품(생선 오일 제외)")에 해당됨		어류, 비어류 수산물 가공품 (생선 오일 제외)		
	19. 수산가공식품의 모든 중/세분류는 카자흐스탄 유해물질(세슘, 스트론튬) 규정 내 우축의 식품유형("생선 및 수산가공품")에 해당됨			생선 및 수산가공품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병원성미생물, 방사성물질)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 (병원성 미생물)	카자흐스탄 식품유형(방사성물질)
	19-1. 어육 가공품류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어육소시지 기타 어육가공품	어류, 비어류 수산물 및 가 공품 (건조, 보존처리, 저온 살균 어란 제외)	
	19-2. 젓갈류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어류, 비어류 수산물 및 가 공품 (건조, 보존처리, 저온 살균 어란 제외)	
	19-3. 건포류	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 건포류		건조 생선
	19-4. 조미김	조미김		
	19-5. 한천	한천		
	19-6.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어류, 비어류 수산물 및 가 공품 (건조, 보존처리, 저온 살균 어란 제외)	
20. 동물성가공 식품류	20-1.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기타동물성가 공식품		
	20-2. 곤충 가공식품	곤충가공식품		
	20-3. 자라 가공식품	자라분말 자라분말제품 자라유제품		
	20-4. 추출 가공식품	추출가공식품		
21. 벌꿀 및 화분가 공품	21-1. 벌꿀류	벌집꿀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		
	21-2. 로알젤리류	로알젤리 로알젤리제품		
	21-2. 화분식품	가공화분 화분함유제품		

신식품공전			카자흐스탄 : 유해물질규정(병원성미생물, 방사성물질)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식품유형)	카자흐스탄 식품유형 (병원성 미생물)	카자흐스탄 식품유형(방사성물질)
22. 즉석식품류	22-1. 생식류	생식제품 생식함유제품		
	22-2. 즉석섭취편의 식품류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즉석조리식품	즉석조리식품, 케이터링용 채소 및 감자, 데치거나 냉 동한 제품, 샐러드, 신선 채 소 및 과일;	
	22-3. 만두류	만두 만두피		
23. 기타식품류	23-1. 효모식품	효모식품		
	23-2. 기타 가공품	기타가공품	단백질 분리물 및 농축물	
24. 그외분류	장기보존식품	병통조림식품	UHT 크림(무균포장하지 않 은 캔제품)	와일드베리 및 통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식품원료	식물성 원료		
		동물성 원료		
그외 분류	그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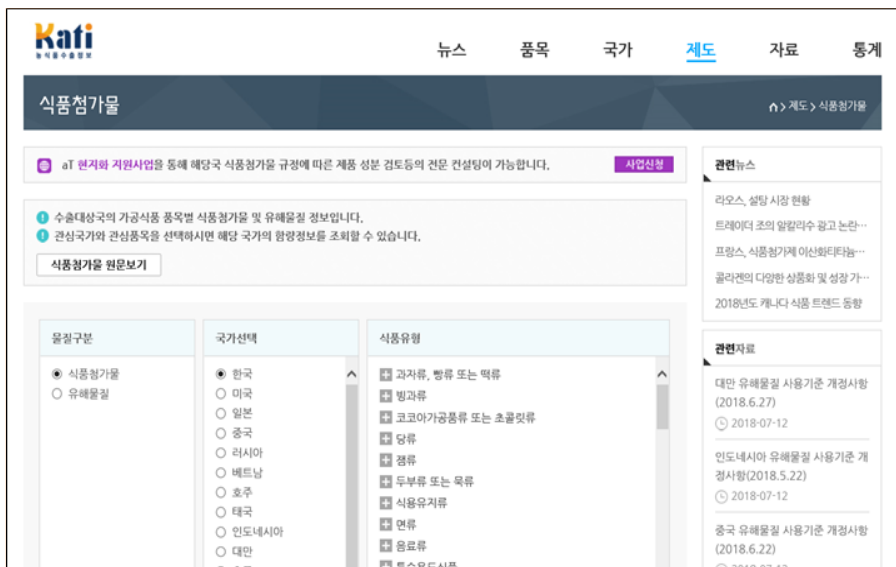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들은 그 외의 분류로 구분하였으며, at KATI에도 올라가 있음

*유해물질규정(병원성 미생물, 방사성물질) 내 식품유형 중 원료와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품목 제외

4. 식품첨가물/유해물질 기준 데이터베이스 활용

- 주요 수출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은 KATI(농식품수출정보) →제도→식품첨가물/유해물질에서 검색 가능함

* <http://www.kati.net/additive/additiveList.do>



[그림 2-12] 식품첨가물/유해물질 기준 DB 수출지원정보 사이트(aT KATI)

-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베트남, 호주,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 아랍에미리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캐나다, 인도,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19개국 식품첨가물과 관련하여 사용기준, 식품유형, 함량정보 등에 관한 정보와 유해물질의 허용 여부 및 한계치를 제공함
- 해당 정보는 관심국가와 관심품목을 선택하면 해당 국가의 함량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의 식품공전을 기준으로 매칭됨

- KATI 홈페이지는 농·식품 수출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별도의 아이디가 없어도 홈페이지의 자료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내용에 대한 간단한 검색 결과는 [표 2-13], [표 2-14]와 같음

[표 2-13]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검색 결과 예시

번호	물질	식품유형	기준	
			한국	일본
1545	acesulfame potassium	유당면	0.35g/kg 이하	0.35g/kg 이하 (특별용도 표시허가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않음)
1549	5'-deaminase	과자	일반사용기준	일반사용기준
1548	acacia (gum arabic)	포장육	일반사용기준	일반사용기준

[표 2-14] 유해물질 허용기준 검색 결과 예시

번호	물질	한국	인도		분류PVO*
		식품유형	식품유형	함량정보	
1	triazophos	콩기름(대두유)	기름: 대두유	0.05mg/kg	p
2	spinetoram	콩기름(대두유)	기름: 대두유	0.02mg/kg	p
3	pyraclostrobin	빵류	빵류: 땅콩 케이크	0.05mg/kg (fixed at LOQ)	p

* 유해물질 분류: 농약(Pesticide), 동물용의약품(Veterinary medicine), 기타(Others)



제 6 절. 기타 식품안전 및 수입식품 관련 이슈

□ 1. 식품 관련 주요 비관세 장벽

▣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기준 준수

- 관세동맹기술규정(TRCU)에 제시된 식품첨가물과 유해물질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거부될 수 있음
- TRCU 기술규정 요건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출시마크를 부착할 수 없고, 관세동맹 회원국은 해당 제품을 시장에 유통할 수 없음
- 식품첨가물, 향료 및 가공보조제에는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서류와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보관조건과 유통기한에 관한 정보가 첨부되어야 함

- 관세동맹의 회원국 시장에서 단일 유통마크가 표시된 적합성 평가(확인)가 완료되어야 함
- 식품원료를 포함하여 유통 중인 식품에는 제품 이력추적을 제공하는 선적 문서가 첨부되어야 함

■ 각종 증명서

- 식품이 카자흐스탄에 수입되어 유통되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연방국가 등록(State registration) 등이 필요하며, 품목별로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수의검역증명서(Veterinary certificate) 및 제조업체로부터 GMO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 특히 어린이용 식품, 식이요법 제품, 유제품, 육류 및 육류가공품, 식품첨가물, 생물학적활성첨가물, 유전자변형제품으로 제조된 식품, 신기술로 제조된 식품 등 위생·전염병 검역대상 제품들은 수입 전 신고의무가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품질 및 안전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적합성 선언과 연방 국가등록 등을 제출해야 함
- 카자흐스탄은 2015년 말 WTO 가입 후 국제기준에 따라 유라시아경제연합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OIE(국제 수역 사무국), IPPC(국제 식물보호협약), Codex(국제식품규격)와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함

■ 통관 시 주의할 점

- 전자면장을 포함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 통관을 위해 B/L 건당 인력이 필요하고, 창구마다 세관원을 접촉해야 해서 추가적인 통관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입면장에 간이 수입인증 도장을 대체 사용하여 30일 이내 해당 증명서를 발급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하고, 다시 완전 수입통관 도장을 받아야 함. 간이 수입기간과 완전 수입기간 사이에는 제품의 사용 및 판매 불가능함

- 통관법상 육류, 육가공 제품, 유가공 제품은 반드시 100% 화물 실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소시지의 경우 관세 5~30%, 0.2유로/Kg~0.7유로/Kg, 부가세 12%가 부과됨
- 통관이 완료되기 전에 중앙세관으로부터 '선픽업허가서'를 발급받아 지역세관에 제출해야 선 픽업이 가능

❑ 유통과정의 어려움

- 넓은 영토대비 약 1,860만 명(2020년 기준)의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러시아·중동에 둘러싸인 내륙국가로 대체로 물류가 낙후되어 있고, 인프라 구축이 미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장 접근성이 떨어짐
- 해상운송 경로가 없어서 물류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현재,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주요 화물 대부분은 해운으로 출발해서 철도를 이용하는 TCR(Trans China Railway), TSR(Trans Siberian Railway) 노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TCR은 기간이 21일~28일, TSR은 29~35일 정도 소요됨

❑ 유전자변형 식품

-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유전자변형(GMO)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한 라면 3종과 빵 믹스 1종의 한국산 식품에 대해 임시적인 수입·판매금지 조치를 취함
- 카자흐스탄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분기에 1만 4,880개의 식품 및 비식품 품목을 검사하였으며, 이중 3.5%가 정부의 기술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힘
- 수입금지 조치를 받은 한국산 제품은 GMO 대두와 옥수수 등을 2%에서 100%까지 사용하고 있어 카자흐스탄 정부가 규정한 0.9% 미만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
- 카자흐스탄 정부의 이번 검사 결과에는 통조림 고기, 소시지, 가금류, 유제품 등 800여 개 샘플의 항생제 존재 여부도 포함됨

□ 2. 기타 식품 관련 이슈

▣ 건강과 관련된 정책

- 카자흐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염분 섭취량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영양상태 개선과 건강한 생활습관 증진을 목표로 2016년부터 국가 건강개발 프로그램인 “Densaulyk”를 시행 중임
- 2019년 Kazakh Food Academy가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15세 이상 인구의 절반(여성의 55.5%, 남성의 49.2%)은 과체중과 비만에 시달리고 있음. 과체중 인구는 전체 여성의 29.7%, 남성의 33.9%에 달하고 있으며, 비만은 전체 여성의 25.8%, 남성의 15.3%에 달함
- 또한,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2018년 말 높은 소아 비만율을 낮추고자 학교 내 탄산음료 및 초콜릿, 사탕류 제품 판매를 금지함
 -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소아 비만율을 가진 국가임
 - 카자흐스탄의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안 좋은 식습관 및 과도한 패스트푸드 섭취로 20%가 과체중, 10%가 비만으로 나타남
 -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개선을 위해 어린이 음식 TV광고의 엄격한 광고규제 움직임이 있음

▣ 무설탕 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

-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무설탕 식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 카자흐스탄 내 당뇨와 관련된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무설탕 등의 무첨가 식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
 - 2018년 기준 카자흐스탄의 당뇨병 환자는 30만 9,000명을 기록했으며, 5년 사이 10만 명 이상 증가함
 - 이에 따라, 현지에서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초콜릿, 젤리 등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 카자흐스탄 영양아카데미(Kazakh Academy of Nutrition)는 최근 무설탕 초콜릿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건강한 식품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초콜릿에 트랜스 지방 및 콜레스테롤이 포함되지 않아 다이어트 및 당뇨병에 좋다고 홍보하고 있음

■ 웰빙식단 배달서비스의 성장

- 기업이 고객의 신체조건 및 추구하는 목적에 맞춰 식단을 연구하고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배달해 주는 웰빙식단 배달서비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음
-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외모를 가꾸고자 하는 고객들 사이에서 수요가 있음. 경제력을 갖추었으나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과 중산층, 헬스장에서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 젊은 대학생들이 주요 고객층임
- 다이어트 식단, 건강 및 균형 식단, 스포츠 식단, 개인 맞춤형 식단, 단기간 체중 감량, 운동효과 극대화, 채식주의자, 임산부 식단, 디톡스주스, 개인 맞춤형 식단 등을 제공함
-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증대와 전체 음식 배달업계의 성장이 맞물려 웰빙식단 배달서비스가 발전하기 좋은 시장환경이 조성됨

■ 간편조리식단의 성장

- 카자흐스탄에서 건강한 간편조리식단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바쁜 라이프스타일을 보내는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간편식 선호가 뚜렷해지는 추세임
- 건강식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식단으로 매주, 매달 단위의 식사를 제공하는 신생 업체가 생겨나고 있으며, 키친 랩(Kitchen lab), 스마트 푸드(Smart food), 쿡 잇 프레시(Cook it fresh) 등이 대표적임
- 카자흐스탄의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추구하는 빠르고 간편한 라이프스타일이 식품 소비 트렌드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여전히 가격에는 민감한 편임

■ 품질 증시 및 제품 검색

- 최근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은 식품의 품질을 중시하여 식료품 구매 전에 SNS 및 인터넷으로 검색한 후 구매하는 경향이 있음
 - SNS를 활용하여 식품 영양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고, 구매 전에 인터넷 후기를 찾아보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음
- 이러한 트렌드는 다이어트식이나 건강식을 선호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더욱 뚜렷해짐
 - 이에 식료품 업체 및 식당도 자체 온라인사이트나 소셜페이지를 개설해 고객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현지업체는 많은 이용자 수를 가진 Instagram, Facebook 등 인기 소셜사이트를 통해 홍보를 진행 중임
 - 몇몇 레스토랑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해 오픈시간이나 오늘의 메뉴, 이벤트 등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SNS로 테이블 예약, 온라인 주문 서비스, 선불 결제 등 서비스를 확대함

■ 할랄 식품

- 할랄의 범위
 - 모든 종류의 채소, 과일, 곡류 등 비육류성식품과 모든 종류의 해산물이 할랄에 해당되며, 과자, 빵, 주스 및 가공식품도 돼지고기나 알코올 성분이 없어야 함
 - 육류는 주로 양, 소, 닭 등 허용된 고기로 한정되며, 허용된 고기는 '신의 이름으로 (Bis Milah)'라는 기도문을 읊은 뒤, 단칼에 정맥을 끊어 도살하는 등 할랄방식으로 도축된 것만 인정함. 돼지고기는 무조건 하람(haram)에 해당됨
- 할랄식품 비중
 - 카자흐스탄 내 할랄식품은 전체의 30% 비중을 차지하는데, 카자흐스탄의 무슬림 비율이 약 70%인 것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임

- 할랄식품 동향
 - 카자흐스탄이 주로 수입하는 할랄 인증식품으로는 칼바사(소시지), 닭고기 등 육류제품 외에 우유, 요구르트, 버터 등 유제품과 샌드위치, 만두, 생수, 초콜릿, 물이며, 주로 러시아에서 수입함
 - 현재 카자흐스탄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산 식품은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며, 한국의 이슬람교중앙회(KMF)에서 할랄인증을 받은 라면 등이 현지에서 유통됨
- 할랄식품은 카자흐스탄 대형마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으나 별도의 할랄식품 코너는 없음
 - 무슬림 신자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할랄 기준이 불분명하므로 할랄 인증마크가 있어도 가공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가공육류 제품의 구매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며, 비무슬림의 경우 할랄식품의 선입견은 없는 편임

▣ 주류시장의 성장

- 카자흐스탄의 주류시장은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맥주의 판매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맥주 판매 규모는 3601억 텡게(약 9억 4400만 달러)이며, 증류주가 3126억 텡게(약 8억 20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음
 -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이는 주류 카테고리는 와인으로 2019년 기준 총 판매 규모는 2817억 텡게(약 7억 3900만 달러)이며, 전년 대비 성장률은 23.5%로 맥주(14.4%), 증류주(11.2%)에 비해 큰 폭으로 성장함
-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식당 및 바의 영업 중지 및 제한으로 주류 소비가 크게 감소함
 - 카자흐스탄 국내 경제가 침체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감소했고 이는 주류 소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최근 카자흐스탄의 주류시장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변화는 주류의 프리미엄화 진행임
 - 특히 젊은 소비자층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음. 점점 더 많은 주류 소비자들이 건강에 덜 해로운 프리미엄 주류를 선택함

- 웰빙 트렌드의 확산과 함께 증류주와 같이 도수가 높은 주류는 건강에 유해하다는 인식이 퍼짐에 따라 도수가 높은 주류를 기피하고 맥주나 와인과 같이 가벼운 주류의 소비가 증가함
- 젊은 소비자들은 새로운 맛에 대한 경험을 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프리미엄 주류와 칵테일 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프리미엄 라거가 강세를 보임
- 한국의 전통적 소주보다는 다양한 맛을 제공하는 과일소주를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됨. 또한, 코로나로 인해 오프트레이드¹⁸⁾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캔맥걸리, 캔맥주 등이 긍정적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임

□ 3. 카자흐스탄 수출 관련 Q & A

Q. 카자흐스탄 식품시장 진출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 본사의 구매부서가 납품업체 계약과 대금결제 결정

- 대부분의 유통업체는 본사의 구매부서가 납품업체와 계약과 대금결제 방식을 결정함. 이후, 지점에서 따로 납품업체에 연락하여 물품을 공급받도록 하는 구매방식임
- 현지 유통업체의 경우 카자흐스탄산 제품이나 중국산 공산품의 수입 비중이 높으며, 직접구매의 형태로 공급받음
- 외국계 유통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공산품을 유럽 및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인증 및 서류 절차가 복잡하여 대부분을 간접구매 형태로 공급받음
- 따라서 유통체인에 납품 경험이 있으면서 한국제품을 다루어본 경험이 있는 현지 수입업체를 통해 간접수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18) 오프트레이드(off-trade)는 식당, 바, 호텔 등과 같은 온 트레이드(on-trade)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주류 전문점, 편의점, 슈퍼마켓과 같은 오프 트레이드 채널에서 직접 주류제품을 구매하는 소비 행태를 의미함

Q. 카자흐스탄 식품 유통에 있어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지?

▣ 유통시장의 현대화 및 프랜차이즈 가속화

- 슈퍼마켓, 편의점 등의 현대적 식품소매채널의 확대와 프랜차이즈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한국식품의 입점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됨
- 최근 현지 소비자의 원스톱 아울렛 매장에서 수입산 식품을 구매하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한국산 식품에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임
- 특히, 소비자들이 건강과 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쾌적한 식품 쇼핑환경을 제공하고 신뢰도가 높은 현대적 유통채널이 더 각광받을 것임
- 지난 수년간 카자흐스탄에서 해외 프랜차이즈의 유입은 새로운 사업 컨셉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현재 3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중 대부분이 알마티에 자리잡고 있음
 - 2014년에는 미국의 레스토랑 체인인 하드락카페(Hard Rock Café), 2016년에는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2018년에는 미국의 피자체인인 파파존스(Papa John's)가 카자흐스탄에 진출함
 - 2017년 카자흐스탄의 GRDI(Global Retail Development Index)는 전년 대비 12단계 하락한 16위를 기록했으나, 유통 부문은 여전히 성장 중으로 3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화가 진행 중임

▣ 음식 배달 시장의 성장

- 카자흐스탄 요식업체들은 배달플랫폼을 활용하거나 개별 배달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에게 음식을 배달하고 있음
- 최근 식품상자 배달서비스인 kese가 레시피가 포함된 식사키트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다이어트식뿐만 아니라 국제요리까지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고 있음
- 대표적인 배달플랫폼 중 하나인 초코푸드(chocofood.kz)에는 425개의 레스토랑이 등록되어 있음

- 2015년 1~2개에 그쳤던 건강식 배달업체는 2018년 15개까지 증가함
- 2019년 카자흐스탄 배달음식 시장규모는 3,1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작년 한 해에만 20% 성장을 기록함. 또한 배달시장의 성장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배달만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전문점도 생겨나기 시작함

▣ PB시장 확대

- 한국,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하였을 때 PB시장의 발달은 저조한 편임. 대형마트 고객이 중상류 및 부유층에 한정되기에 고급 식료품점의 고가·고품질 마케팅과 PB상품의 저가 마케팅 목표가 상충되며, PB상품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임.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 증가, 경기 침체 지속, 식품제조업을 육성하는 정부정책과 맞물려 PB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 소규모 현대식 식료품점의 성장

- 빠른 도시화, 커리어 중심의 생활양식에 따른 가족 구성원 축소 등으로 카자흐스탄의 소비자들은 집에서 가까운 매장에서 식료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함
- 집 근처의 소규모 매장에서 하루에 여러 번 소량으로 식료품을 조달하는 것을 선호함
- 카자흐스탄 식료품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소형매장 중에서도 특별히 편의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Q. 카자흐스탄에서 향후 유망한 수출 품목은?

▣ 확대되는 차 소비

- 카자흐스탄은 차를 자주 섭취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차 소비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카자흐스탄은 전통적으로 차를 마시는 문화가 발달해 있으며 1인당 평균 차 소비량이 1.4kg으로 세계 3위의 차 소비 국가임
- 유목민족이었던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육류와 같은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는 식습관으로 인해 식사를 마친 후 원활한 소화작용을 위해 차를 마시는 문화가 발달함

-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음료도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제품을 찾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욱 차 소비가 증가함
- 2018년 기준, 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6.6% 증가한 2억 5,035만 달러(한화 약 2,956억 6,347만 원)를 기록함
- 유로모니터 자료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이며, 2018년 대비 2023년엔 10.3%의 가치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선도적인 업체는 Tea House, Orimi Trade, Mondelez Kazakhstan가 있으며, 대부분 저렴한 가격대 제품을 판매중임. 카자흐스탄 소비자가 선호하는 브랜드는 아쌈 (Accam)으로 다른 브랜드에 비해 맛이 진하고 강하며 가격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남

■ 차와 함께 소비하는 프리머

-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차에 주로 우유를 넣어 마시는데, 우유 대신 커피크리머를 넣어 먹는 것이 유행하여 커리크리머가 인기식품 반열에 오름
- 우리나라 D社の '프리머(Frima)'는 카자흐스탄에서 2017년 기준 커피크리머 시장의 82.0%의 점유율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음
- D社は 현지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커피나 차에 넣어 먹는 용도 외에 여러 가지 음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리머 제품 형태를 개발 중임
- 카자흐스탄에서 프리머는 주식인 빵이나 패스추리에도 첨가해 먹으며, 아침식사, 수프, 팬케이크, 크림소스 등을 요리하는 데도 활용됨
-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D社에서는 빵 반죽에 넣는 '하이밀키'라는 액상제품을 따로 개발했고, 이로 인해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음
- 최근 카자흐스탄 SNS에서 'Korean Fire Food Challenge'라는 영상이 인기를 얻으며 K-푸드 열풍이 있었고, 이에 프리머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지속적인 매출 상승이 전망됨

■ 건강스낵 마케팅

-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은 차를 섭취할 때 주로 스낵과 함께 먹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현지에서도 건강스낵이 인기를 끌고 있음
- 이에 스낵문화가 자리 잡은 현지 시장에서 건강스낵이 유망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김스낵의 가능성

- 최근 한국산 김스낵이 이슈된 바 있으며, 현지 소비자들이 사이에서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은 최근 소득증가로 인해 웰빙푸드, 프리미엄 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은 김에 주목하고 있음
- 김의 철분, 단백질, 비타민 B1, B2등의 풍부한 영양소도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구매 유인요소가 됨
- 염분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나라답게 김은 짭짤한 맛과 바삭한 식감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건강스낵용으로 부상함
- 또한, 한국산 김은 스시 요리에 활용도가 높고 맛이 좋아 카자흐스탄 소비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음
 - 특히 요즘 K-드라마, 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산 음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도 도움이 됨
- 일본산 김은 가격이 너무 높고 중국산 김은 저렴한 가격에 비해 떨어지는 맛으로 인해 수요가 높지 않음. 따라서 맛과 가격 면에서 적절성을 갖춘 우리나라 김의 판매 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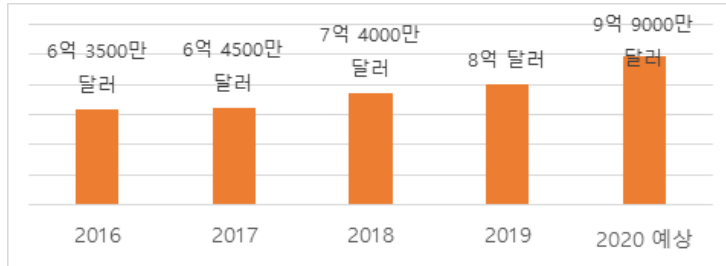
■ 유탕면과 컵라면 제품 판매량의 증가

- 전체적으로 카자흐스탄의 유탕면과 컵라면 제품 판매는 해서 증가 추세임
 - 한국과 러시아산 라면 제품은 거의 동일하게 판매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엔 한국의 농심 신라면 컵이 가장 큰 인기를 끌
- 다양한 한국산 라면 제품이 판매 중임. 종류로는 신라면 컵, 너구리, 진라면 컵, 열라면, 김치라면 등이 있음
- 한국산 제품이 우수한 면의 품질 때문에 인기가 높고, 러시아산 제품보다 판매량이 높은 편임. 비록 한국 라면 제품이 비쌀지라도 고객들은 가격 요인보다는 맛을 고려하여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임
-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서는 농심 제품이 제품 품질, 맛, 편리성으로 인기가 높음

■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의 라면 판매

-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년 3분기 라면 총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20년 상반기에는 3억 207만 달러로 전년 대비 37.4% 증가한 바 있음
 - 2018년 상반기 2억 1,618만 달러에서 2019년 상반기 2억 1,987만 달러로 1.7% 증가한 것과 비교해서 증가폭이 22배인 셈임. 이는 전세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라면수요가 급증한 것이 한 요인으로 풀이됨
- 업계 1위 농심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2020년 농심의 해외사업 실적은 수출과 (해외에서 직접 라면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해외법인의 매출을 합하여 약 9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 성장을 예상함
 - 2020년 초부터 신라면을 비롯한 짜파게티, 너구리 등 한국 라면에 대한 관심과 판매가 늘어났으며, 코로나19가 미국, 유럽 등지로 빠르게 번지면서 간편식 수요와 맞물려 라면 소비가 급증함
- 농심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가장 두드러진 해외시장은 미국으로 나타남
 - 캐나다를 포함한 미국법인 매출은 약 3억 2,600만 달러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28% 성장한 수치임

<농심 해외매출 추이>



출처: 농심 내부 자료

- 농심에서는 할랄인증을 받은 할랄 신라면으로 주요 카자흐스탄이 속한 중앙아시아 이슬람국가를 공략하고 있음
- 농심은 2011년 부산공장에 전용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할랄 신라면을 생산함
- 농심 관계자는 “동남아와 중앙아시아는 인구가 많고 소득수준이 점차 올라감에 따라, 라면의 수출 전망도 좋은 편이다. 이들 지역은 면식 문화가 발달했고, 여러 가지 향신료로 맛을 낸 음식들을 즐겨 먹는 편이라, 한국의 매콤하고 얼큰한 라면도 거부감 없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함

❏ 과자류 시장 발달

- 과자류 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현지 내 생산이 원활하여 가격이 저렴한 편에 속함
- 한국 과자업체가 인수한 라하트(Rakhat)는 합작 형태이며, 카자흐스탄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자 전문회사 중 하나임
- 최근 감자칩, 스니커즈 과자가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다이어트에 좋다는 인식이 퍼져 우리나라 쌀과자 및 곡물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

〈참고문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9), 2019 국별 진출전략_카자흐스탄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foodsafetykorea.go.kr/foodcode/04_01.jsp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512>
- 식품안전나라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specialinfo/infoMapCodex.do?menu_grp=MENU_NEW04&menu_no=2848
-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Commission)
<http://www.eurasiancommission.org/en/Pages/default.aspx>
- 카자흐스탄 재정부 국가수입위원회
<http://kgd.gov.kz/tnved/>
- 카자흐스탄 통계청
<https://stat.gov.kz/search/item/WC16200023636>
<https://stat.gov.kz/search/item/ESTAT130990>
- 통계청(2019),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6), '한국의료 CIS 진출가이드(카자흐스탄)'연구 최종보고서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06), 카자흐스탄 한국농식품 진출여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5), 카자흐스탄 라면 시장조사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6), 해외시장맞춤보고서_카자흐스탄_유자잼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7), 2017 신흥시장 클로즈업_카자흐스탄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9), 2018 주요국 수입제도 모니터링_V기타신흥국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9), 2018 수출국가정보 zip_아태 기타국.중동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9), 2019 신북방정책 카자흐스탄 식품시장 이슈 및 시사점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20), 2019 수출국가정보 zip_아태 기타국.중동

kati 농식품수출정보

<https://www.kati.net/nation/basisInfo.do?lcdCode=MD193>
<https://www.kati.net/statistics/monthlyPerformanceByNation.do>
<http://www.kati.net/additive/additiveList.do>
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board_seq=92137&menu_dept2=49&menu_dept3=52%20&dateSearch=all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104&commItemSn=404#area1>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ldx=243&dataIdx=184807>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ldx=243&dataIdx=183913>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ldx=243&dataIdx=182793>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ldx=243&dataIdx=181947>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http://ktr.or.kr/certification/overseas/contentsid/476/index.do>

Codex Alimentarius(2014), National Food Safety System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Market Research

<https://www.marketresearch.com/MarketLine-v3883/Food-Grocery-Retail-Kazakhstan-13512893/>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2019), Exporter Guide_Kazakhstan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2019),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Report_Kazakhstan

3

부 록

부록 1

대한민국 신식품공전 식품 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품목코드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N001-001
		캔디류	N001-002
		추잉껌	N001-003
		빵류	N001-004
		떡류	N001-005
2. 병과류	2-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	N002-001
		저지방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2-2. 아이스크림믹스류	비유지방아이스크림	N002-002
		아이스크림믹스	
		저지방아이스크림믹스	
		아이스밀크믹스	
	2-3. 병과	샤베트믹스	N002-003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2-4. 얼음류	빙과	N002-004
		식용얼음	N002-004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3-1. 코코아가공품류	어업용얼음	
		코코아매스	N003-001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 코코아가공품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품목코드
	3-2. 초콜릿류	초콜릿	N003-002
		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4. 당류	4-1. 설탕류	설탕	N004-001
		기타설탕	N004-002
	4-2. 당시럽류	당시럽류	N004-003
	4-3. 올리고당류	올리고당	N004-004
		올리고당가공품	N004-005
	4-4. 포도당	포도당	N004-006
	4-5. 과당류	과당	N004-007
		기타과당	N004-008
	4-6. 엿류	물엿	N004-009
		기타엿	N004-010
		텍스트린	N004-011
	4-7. 당류가공품류	당류가공품류	N004-012
	5. 잼류		잼
기타잼			N005-002
6. 두부류 또는 묵류		두부	N006-001
		유바	N006-002
		가공두부	N006-003
		묵류	N006-004
7. 식용유지류	7-1. 식물성유지류	콩기름(대두유)	N007-001
		옥수수기름(옥배 유)	N007-002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N007-003
		미강유(현미유)	N007-004
		참기름	N007-005
		추출참깨유	참기름
		들기름	N007-006
		추출들깨유	들기름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N007-007
해바라기유	N007-008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품목코드	
		목화씨기름(면실 유)	N007-009	
		땅콩기름(낙화생 유)	N007-010	
		올리브유	N007-011	
		팜유	N007-012 팜유	
		팜올레인유		
		팜스테아린유		
		팜핵유		
		야자유	N007-013	
		고추씨기름	N007-014	
		기타식물성유지	N007-015	
		7-2. 동물성유지류	식용우지	N007-016
	원료우지			
	식용돈지		N007-017	
	원료돈지			
	기타동물성유지			
	7-3. 식용유지가공품	혼합식용유	N007-019	
		향미유	N007-020	
		가공유지	N007-021	
		쇼트닝	N007-022	
		마가린류	N007-023	
		모조치즈	N007-024	
		식물성크림	N007-025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N007-026	
	8. 면류		생면	N008-001
			숙면	N008-002
건면			N008-003	
유탕면			N008-004	
9. 음료류	9-1. 다류	침출차	N009-001	
		액상차	N009-002	
		고형차	N009-003	
	9-2. 커피	커피	N009-004	
	9-3. 과일·채소류음료	농축과·채즙	N009-005	
		과·채주스		
과·채음료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품목코드
	9-4. 탄산음료류	탄산음료	N009-006
		탄산수	
	9-5. 두유류	원액두유	N009-007
		가공두유	
	9-6. 발효음료류	유산균음료	N009-008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9-7. 인삼, 홍삼음료	인삼, 홍삼음료	N009-009
9-8. 기타음료	혼합음료	N009-010	
	음료베이스		
10. 특수용도식품	10-1.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유	N010-001
		성장기용 조제유	
	10-2. 영아용 조제식	영아용 조제식	N010-002
	10-3. 성장기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N010-003
	10-4.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영·유아용곡류조제식	N010-004
	10-5. 기타영·유아식	기타영·유아식	N010-005
	10-6.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환자용식품	N010-006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유단백알레르기영·유아용특수조제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10-7.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N010-007	
10-8. 임신·수유부용식품	임산·수유부용식품	N010-008	
11. 장류		한식매주	N011-001
		개량매주	
		한식간장	N011-002
		양조간장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품목코드	
		산분해간장	N011-003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N011-004
		춘장		N011-005
		청국장		N011-006
		혼합장		N011-007
		기타장류		N011-008
12. 조미식품	12-1. 식초	발효식초	N012-001	
		희석초산		
	12-2. 소스류	소스	N012-002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12-3. 카레(커리)	카레(커리)분	N012-003	
		카레(커리)		
	12-4.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고춧가루	N012-004	
		실고추		
	12-5.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N012-005	
		향신료조제품		
	12-6. 식염	천일염	N012-006	
		재제소금(재제조소금)		
		태움·용융소금		
		정제소금		
		기타소금		
	13. 절임류 또는 조림류	13-1. 김치류	김치속	N013-001
김치				
13-2. 절임류		절임식품	N013-002	
	당절임			
13-3. 조림류	조림류	N013-003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품목코드
14. 주류		탁주	N014-001
		약주	N014-002
		청주	N014-003
		맥주	N014-004
		과실주	N014-005
		소주	N014-006
		위스키	N014-007
		브랜디	N014-008
		일반증류주	N014-009
		리큐르	N014-010
		기타 주류	N014-011
			주정
15. 농산가공식품류	15-1. 전분류	전분	N015-001
		전분가공품	
	15-2. 밀가루 류	밀가루	N015-002
		영양강화 밀가루	
	15-3.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땅콩 버터	N015-003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15-4. 시리얼류	시리얼류	N015-004
	15-5. 찌낱	찌낱	N015-005
	15-6. 효소식품	효소식품	N015-006
	15-7. 기타 농산가공품	과·채가공품	N015-007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16. 식육가공품	16-1. 햄류	햄	N016-001
		생햄	
		프레스햄	
	16-2. 소시지류	소시지	N016-002
		발효소시지	
혼합소시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품목코드
	16-3. 베이컨류	베이컨류	N016-003
	16-4. 건조저장육류	건조저장육류	N016-004
	16-5. 양념육류	양념육	N016-005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천연케이싱	
	16-6. 식육추출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N016-006
	16-7. 식육함유가공품	식육함유가공품	N016-007
16-8. 포장육	포장육	N016-008	
17. 알가공품류	17-1. 알가공품	전란액	N017-001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17-2. 알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N017-002
18. 유가공품	18-1. 우유류	우유	N018-001
		환원유	
	18-2. 가공유류	강화우유	N018-002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가공유	
	18-3. 산양유	산양유	N018-003
	18-4. 발효유류	발효유	N018-004
		농후발효유	
		크림발효유	
		농후크림발효유	
발효버터유			
발효유분말			
18-5. 버터유	버터유	N018-005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품목코드
	18-6. 농축유류	농축우유	N018-006
		탈지농축우유	
		가당연유	
		가당탈지연유	
		가공연유	
	18-7. 유크림류	유크림	N018-007
		가공유크림	
	18-8. 버터류	버터유	N018-008
		가공버터	
		버터오일	
	18-9. 치즈류	자연치즈	N018-009
		가공치즈	
	18-10. 분유류	전지분유	N018-010
탈지분유			
가당분유			
혼합분유			
18-11. 유청류	유청	N018-011	
	농축유청		
	유청단백분말		
18-12. 유당	유당	N018-012	
18-13.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단백가수분해식품	N018-013	
19. 수산가공식품류	19-1. 어육가공품류	어육살	N019-001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어육소시지	
		기타 어육가공품	
	19-2. 젓갈류	젓갈	N019-002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식품유형)	품목코드
	19-3. 건포류	조미건어포	N019-003
		건어포	
		기타 건포류	
	19-4. 조미김	조미김	N019-004
	19-5. 한천	한천	N019-005
	19-6.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N019-006
20. 동물성가공식품류	20-1.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N020-001
		기타동물성가공식품	
	20-2. 곤충가공식품	곤충가공식품	N020-002
	20-3. 자라가공식품	자라분말	N020-003
		자라분말제품	
자라유제품			
20-4. 추출가공식품	추출가공식품	N020-004	
21. 벌꿀 및 화분가공품	21-1. 벌꿀류	벌집꿀	N021-001
		벌꿀	
		사양벌집꿀	
		사양벌꿀	
	21-2. 로얄젤리류	로얄젤리	N021-002
		로얄젤리제품	
21-2. 화분식품	가공화분	N021-003	
	화분함유제품		
22. 즉석식품류	22-1. 생식류	생식제품	N022-001
		생식함유제품	
	22-2.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즉석섭취식품	N022-002
		신선편의식품	
		즉석조리식품	
22-3. 만두류	만두	N022-003	
	만두피		
23. 기타식품류	23-1. 효모식품	효모식품	N023-001
	23-2. 기타가공품	기타가공품	N023-002

부록 2

카자흐스탄 주요 정부 기관 연락처

1. 수의 통제 및 감시위원회 (Committee of the Veterinary Control and Surveillance)

- 010000, Astana, Kenessary 36, floor 6
- Tel: 7 (7172) 555-815
- Fax: 7 (7172) 555-815
- Email: priemnaya.kvkn@minagri.gov.kz
- <https://moa.gov.kz/ru/documents/93>
- 수의 통제 및 감시위원회는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산하 기관임

2. 농산물검역위원회 (Committee of the State Inspection in Agriculture)

- 010000, Astana, Kenessary 36
- Tel: 7 (7172) 555-961
- e-mail: priemnaya.kgiapk@minagri.gov.kz
- 농산물검역위원회는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산하 기관임

3. 공공보건위원회 (Committee for Public Health)

- 010000, Astana, Orynbor, 8
- Tel: 7 (7172) 74-17-72
- Fax: 7 (7172) 74-17-72
- <http://kooz.dsm.gov.kz/ru>
- 공공보건위원회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기관임

4. 기술규정·계량위원회 (Technical Regulation and Metrology Committee)

- 010000, Astana, Orynbor 11
- Tel: 7 (7172) 270-701
- <http://memst.miid.gov.kz/en>
- 기술규정·계량위원회는 산업·기반개발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rastructural Development) 산하 기관임

5. 유라시아경제위원회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 115114, Moscow, Letnikovskaya ul., 2, bld. 1, bld. 2
- Tel./Fax: 011 7 (495) 669-2400
-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Pages/default.aspx>

6. 카자흐스탄 표준 및 인증기관 (Kazakh Institute of Standardization and Certification)

- Certification/declaration of conformity
- 11, Orynbor, Bld. "Ethalon Center"
- 010000, Astana, Yessil district
- Tel. 7 (7172) 79-34-22
- <https://www.memst.kz/contacts/podvedomstvennyye.php>

부록 3

원산지 증명서

□ 원산지 증명

■ 원산지증명서 필요성

-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임
- 원산지 검증 시 엄격한 입증서류를 요구하여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 1)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생산자와 수출자의 정보가 다를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2) 세번(稅番) 변경 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함에도 상대국 세관의 검증 과정에서 생산 공정 세부내용, 원가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게 되면 원산지 소명서를 제출하고 원산지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함

원산지 규정의 구분

- 원산지 규정은 적용 목적에 따라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구분됨
 - 특혜원산지규정 : 특정국가간의 관세 상 특혜를 베푸는 자유무역지대 혹은 경제구역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GPS)등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의미함
 - 비특혜원산지규정 : 여타 무역 정책상에서 상품의 원산지를 일반적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의미함

원산지 결정 원칙

- 원산지 결정의 기본원칙은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변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됨
 - 완전생산기준(a goods wholly obtained test) : 원재료 단계에서부터 완전한 국가에서 생산, 최종가공공정이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함
 -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test) : 생산과정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뤄진 물품에 대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함
 - ① 세번(稅番)변경기준(change in tariff heading method, CTH)
 - ②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test or ad valorem percentage criterion)
 - ③ 특정가공공정기준(criterion of 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증명서 발급

- 원산지 증명 관련 통일서식은 Form Ak를 사용해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관세청을 통해 신청 가능함. 두 기관의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음
 -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 <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
 -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국내 원산지 증명 절차
 - 관세청 종합 솔루션 Yes FTA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00&cntntsId=1060>

자율발급

01	서명카드 비치	02	서명권자 지정
	고시 (별지 제9호 서식)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사유기재
03	증명서 발급 및 서명	04	증명서대장 기재 및 관리
	1) 적용된 협정명칭 5) 수출자의 FAX 2) 원산지 및 결정기준 6) 수출자의 서명 3) 수출자의 성명 7) 수출자의 서명일자 4) 수출자의 전화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1) 작성번호·작성일자 4) 원산지·거래상대방 2) 수출신고번호·수리일자 5) 자유무역협정 명칭 3) 품명·품명번호·수량·금액

■ 자유무역협정의 이월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작성 번호	2.작성 (서명) 일	3.수출· 입 신고번호 및 수리일	4.품명	5.품목번호 (HS No.)	6.수량/ 금액	7.원산지	8.거래 상대방	9.자유무역 협정명칭	10.원산지 결정기준	11.비고

작성 방법	
항 목	작성 내용
1.작성번호	○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작성번호를 기재합니다.
2.작성(서명)일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서명)일을 기재합니다.
3.수출입신고번호 및 수리일	○ 세관에 신고한 수출신고번호와 수출신고 수리일을 기재합니다. ○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번호와 수입신고 수리일을 기재합니다. ○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출신고번호와 수출신고 수리일을 기재합니다. ○ 생산자의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4.품명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상 물품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5.품목번호(HS No.)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상 물품의 품목번호(HS No.)를 6단위로 기재합니다.
6.수량/금액	○ 해당물품의 총 수량, 금액을 기재합니다.
7.원산지	○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기재합니다.
8.거래상대방	○ 작성·관리하는 자에 따라 다르게 기재합니다. -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및 수입자·수입국명 - 생산자: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 수입자: 수출자·수출국명
9.자유무역협정명칭	○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자유무역협정 명칭을 기재합니다. - 계약상대국이 칠레인 경우: 한-칠레 FTA
10.원산지결정기준	○ 해당 수출물품이 충족하는 원산지결정기준(완전생산, 세번변경, 부가가치, 결합기준, 특정공정, 역외가공, 기타)을 기재합니다. 예)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결합기준을 기재합니다.
11.비고	○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작성되는 경우: 제3국 송품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유무역협정의 이월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12.27.>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일련 번호	서 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자 및 사유	해제일자 및 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 기관발급

· 세관 발급

▪ 온라인



·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 온라인



▪ 오프라인(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제출 후 발급

부록 4

EAC 인증서 샘플

 ТАМОЖЕННЫЙ СОЮЗ ДЕКЛАР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ИИ	
Заявитель: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Прошкин Станислав Валерьевич ОГРНИП 309507201600037. Место нахождения: Россия, 140500, Московская область, Луховицкий район, город Луховицы, улица Пушкина, дом 176. Телефон: +79209524498. Факс: +74912992621. E-mail: sale@teaberg.ru.	
заявляет, что Чай байховый крупнолистовой фасованный: чай зелёный неферментированный «Серебряные иглы» (белый чай), чай зелёный неферментированный «Весенние локоны», чай зелёный неферментированный «Белая гроздь» (связанный распускающийся чай), чай зелёный неферментированный «Золотая хризантема» (связанный распускающийся чай), чай оолонг (улуи) частично ферментированный «Медовый ручей», чай оолонг (улуи) частично ферментированный «Фарфоровая гуаньянь», чай оолонг (улуи) частично ферментированный «Снежный улуи», чай чёрный ферментированный «Одинокая камелия» (красный чай), чай чёрный ферментированный «Пуэр в мандарине», чай чёрный ферментированный «Пуэр золотой корень».	
Иготовитель: Chao An Xian Feng Huang Zhen Propitious Clouds Tea, Ltd. Место нахождения: Guangdong province, Chaozhou city, Fengxin Village, Fenghuang Town, China, Китай.	
Стандарты, нормативные документы: Спецификация к торговому контракту № TBRG-777 от 18.07.2013. Код ТН ВЭД ТС: 0902200000, 090240 0000 Серийный выпуск	
соответствует требованиям ТР ТС 021/2011 «О безопасности пищевой продукции»; ТР ТС 022/2011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 в части ее маркировки».	
Деклар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ии принята на основании Протоколов испытаний № 10763, № 10764, № 10765, № 10766, № 10767, № 10768 от 19.09.2013 Испыт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Общества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Коломенский центр сертификации, мониторинга качества и защиты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регистрационный номер аттестата аккредитации РОСС RU.0001.21ПЕ09, срок действия с 28.06.2013 по 26.11.2015.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Срок годности и условия хранения указаны на этикетке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й упаковки.	
Деклар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ии действительна с даты регистрации по 23.09.2015 включительно.	
	С.В. Прошкин (инициалы и фамилия руководителя организации-заявителя или физического лиц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ого в качестве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Сведения о регистрации декларации о соответствии: Регистрационный номер декларации о соответствии: ТС № RU Д-СН.АЯ42.В.00134 Дата регистрации декларации о соответствии: 24.09.2013	

부록 5

품목별 식품수입관세

품목			증량	금액
궐련	필터 담배 및 담뱃잎	2402201000	천 개당 2유로	CIS국가 관세 면제
	담배 및 담뱃잎	2402209000		
라면	기타 마카로니 제품, 건조된 것	1902301000	13% 또는 kg 당 0.05유로 이상	CIS국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입관세 0%
음료	단백질 함량이 2.8% 이상인 음료	2202991100	8% 또는 리터 당 0.03유로	CIS국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입관세 6.8% 또는 리터당 0.032유로
	단백질 함량이 2.8% 미만인 음료	2202991500		
커피조제품	로스팅 된 커피의 추출물 및 조제품	2101309900	13%	WTO 세율 10% CIS국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입관세 0%
인삼류	인삼뿌리	1211200000	5%	CIS국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입관세 0%
맥주	용량이 10리터 이하인 병 에 담긴 맥주	2203000100	리터당 0.018 유로	CIS국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입관세 kg당 0.273유로
	용량이 10리터 이하인 병 을 제외한 다른 용기에 담긴 맥주	2203000900		
흡연용담배	시가 및 시가 릴로	2402100000	17% 또는 천 개당 1.7유로	CIS국가 관세 면제
설탕	기타 설탕	1701999009	톤당 340달러	CIS국가 관세 면제

품목			증량	금액
비스킷	기타 비스킷	1905904500	11% 또는 kg 당 0.11유로	CIS국가 관세 면제
조제분유	유아용 조리 식품	1901100000	5%	CIS국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입관세 0%
파프리카	냉동을 포함한 파프리카	0709601002	5%	WTO 세율 3% CIS국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입관세 6.8%
배	신선한 배	0808309000	5%	CIS국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입관세 0%
곡류조제품	곡물제품을 가공하여 얻은 조리 된 제품	1904109000	10%	CIS국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입관세 6.8%
닭고기	절단되지 않은 닭고기	0207111009	80% 또는 kg 당 0.7유로	WTO 세율 40% 또는 kg당 0.65유로 CIS국가 관세 면제
판지	기타 재생지 또는 판지	4707200000	5%	WTO 세율 4% CIS국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입관세 0%
채소종자	파종을 위한 기타 야채 종자	1209918000	5%	CIS국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입관세 0%
채소종자	파종을 위한 기타 야채 종자	1209918000	5%	CIS국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입관세 0%
젤라틴	젤라틴	3503001001	5%	CIS국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입관세 0%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및 기타 유형의 식용얼음	2105001000	10%	CIS국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입관세 6.8%

품목			증량	금액
인스턴트면	기타 파스타	1902309000	13% 또는 kg당 0.05유로 이상	WTO 세율 10% CIS국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입관세 6.8% 또는 kg당 0.027유로
유자차	과실가공품 기타 : Citrus : 당분 첨가 열가공된 잼, 젤리, 페이 스트 등	2007919000	10%	CIS국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입관세 6.8%
베이커리 반죽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 합 물과 가루반죽	1901200000	11%	WTO 세율 10% CIS국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입관세 6.8%
개 사료	개 또는 고양이를 위한 기타 소매용 식품	2309109000	10% 또는 kg 당 0.08유로	CIS국가 관세 면제
빵	기타 제빵 및 밀가루 제 과 제품	1905909000	10% 또는 kg 당 0.09 유로	CIS국가 관세 면제 베트남 수입관세 6.8% 또는 kg당 0.059유로
에틸알코올	알코올 농도가 80% 이상 인 변형되지 않은 에틸 알코올	2207100000	100% 또는 리 터당 2유로	WTO 세율 리터당 2유로 CIS국가 관세 면제

출처: 카자흐스탄 재정부 국가수입위원회(kgd.gov.kz/tnved)

부록 6

주요 국가 통관 거부 현황

2020년도 주요 수출국 대한민국 식품기업 통관거부 유형별 자료 현황

	 미국	 유럽 연합	 일본	 중국	 대만	 홍콩	 호주
 라벨링/포장	86	0	0	2	0	0	0
 서류미비	63	0	0	1	0	0	0
 성분(금지, 기준치 초과)	28	4	19	0	5	0	9
 표준미준수	102	5	0	0	0	0	0
 식품변질	12	0	0	1	0	0	0
 사용상의 위험	0	0	0	0	0	0	0
 기타	6	6	0	0	0	1	0

출처: Trade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한국무역협회), 2020년 11월 30일 기준

2020년도 주요 수출국 대한민국 식품기업 통관거부 업종별 자료 현황

	 미국	 유럽 연합	 일본	 중국	 대만	 홍콩	 호주
 가공식품	38	2	7	1	1	0	7
 수산물	12	2	8	0	0	0	2
 농산물	5	1	0	0	4	0	0
 임산물	3	0	0	0	0	0	0
 축산물	0	0	0	0	0	0	0

출처: Trade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한국무역협회), 2020년 11월 30일 기준

2020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카자흐스탄 종합보고서

2020년 12월 인쇄

2020년 12월 발행

편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발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TEL: (061)931-0871 FAX: (061)804-4538

본 책자의 통계자료 및 분석내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정보분석부(061-931-0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자료는 KATI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를 통해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알림】

본지에 기재된 분석내용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견해이며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식적 견해와는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책의 내용이나 각종 자료를 복제 및 전제하거나 웹상에 수집 및
게시하는 행위, 판매 등의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